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CONTENTS

I 기본방향

- 2023 학생생활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3
- 추진 세부 과제 4

II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 1장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9
- 2장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29
- 3장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53

III 학교폭력대책

- 1장 학교폭력 중점 추진내용 63
- 2장 학교폭력 예방교육 64
- 3장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업무 처리 지침 67
- 4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70
- 5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73
- 6장 관계회복과 분쟁조정 97
- 7장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101
- 8장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112

IV 학생위기지원

- 1장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지원 117
- 2장 생명존중 및 생명 살림교육 124
- 3장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125
- 4장 학생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6
- 5장 위기학생 및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 127
- 6장 자살 위기학생 관리 130
- 7장 자살사안 발생 시 대처 131
- 8장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134

V 양성평등교육

- 1장 양성평등교육 142
- 2장 폭력예방교육 143
- 3장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149

- 부 록. 관련서식 161





Ⅱ

CONTENTS

부 록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서식Ⅱ-1 학생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163
서식Ⅱ-2 학생 자기변론서	165
서식Ⅱ-3 목격자 확인서	166
서식Ⅱ-4 사실 확인서	167
서식Ⅱ-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168
서식Ⅱ-6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169
서식Ⅱ-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170
서식Ⅱ-8 서면의견서	171
서식Ⅱ-9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72
서식Ⅱ-10 기피 신청서	179
서식Ⅱ-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180
서식Ⅱ-1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181
서식Ⅱ-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182
서식Ⅱ-1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183
서식Ⅱ-15 조치결정 통지서	184
서식Ⅱ-16 수령 확인서	185
서식Ⅱ-17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186
서식Ⅱ-18 재심 청구서	187
서식Ⅱ-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88
서식Ⅱ-20 사회봉사 의뢰서	189
서식Ⅱ-21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190
서식Ⅱ-22 특별교육 의뢰서	191
서식Ⅱ-23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192
서식Ⅱ-24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193
서식Ⅱ-25 화해중재 신청서	194
서식Ⅱ-26 화해중재 참여 동의서(학생용)	195
서식Ⅱ-27 화해중재 참여 동의서(교사용)	196
서식Ⅱ-28 화해중재 참여 안내문	197
서식Ⅱ-29 화해중재 협의록	198
서식Ⅱ-30 화해중재 합의문	199
서식Ⅱ-31 화해중재단 활동 보고서	200



Ⅲ

CONTENTS

부 록

학교폭력대책

[부록 1]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교육활동	201
서식Ⅲ-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202
서식Ⅲ-2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203
서식Ⅲ-3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204
서식Ⅲ-4 학교폭력 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206
서식Ⅲ-5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207
서식Ⅲ-6 관련학생(피해,가해,목격) 확인서	208
서식Ⅲ-7 보호자 확인서	209
서식Ⅲ-8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10
서식Ⅲ-9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213
서식Ⅲ-10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214
서식Ⅲ-11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215
서식Ⅲ-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보호자)	216
서식Ⅲ-1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보호자)	217
서식Ⅲ-1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219
서식Ⅲ-15 [발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예시)	220
서식Ⅲ-16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221
서식Ⅲ-17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222
서식Ⅲ-18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223
서식Ⅲ-19 분쟁조정 신청서	224
서식Ⅲ-20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공문	225
서식Ⅲ-21 담임교사의견서	226
서식Ⅲ-22 자기의견서	227
서식Ⅲ-23 [내부결재]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개최(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심의) ..	228
서식Ⅲ-24 학생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심의 보고서	229
서식Ⅲ-25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 결과 보고	230
서식Ⅲ-26 학생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 결정서	231
서식Ⅲ-27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232
서식Ⅲ-28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233
[참고자료] 전담기구 시나리오(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234



IV

CONTENTS

부 록

학생위기지원

서식Ⅳ-1-①~④ 위(Wee) 스쿨 의뢰 양식	238
서식Ⅳ-2-①~④ 가정형 위(Wee) 센터 의뢰 양식	242
서식Ⅳ-3-①~⑤ 병원형 위(Wee) 센터 의뢰 양식	246
서식Ⅳ-4-①~② 학생 자살 사안 보고 공문 및 보고서	251
서식Ⅳ-5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 현장지원 일지	260
서식Ⅳ-6-①~②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 공문 및 보고서 양식	261
서식Ⅳ-6-③ 학생 자해 사안 작성 안내 및 사안 보고서	270
서식Ⅳ-7-①~②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	274
서식Ⅳ-7-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276
서식Ⅳ-7-④ 아동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277
서식Ⅳ-8 아동학대(의심) 관련 중대·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278
서식Ⅳ-9-① 아동학대 출결인정,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관련 기안문 및 양식	279
서식Ⅳ-9-②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280
서식Ⅳ-9-③ 등교학습 신청서	281
서식Ⅳ-9-④ 등교학습 의견 제출서	282
서식Ⅳ-9-⑤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283
서식Ⅳ-9-⑥ 비밀전학 요청 관련 공문, 요청서	284
서식Ⅳ-9-⑦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289
서식Ⅳ-10-①~② 학생 실종(유괴) 사안 보고서, 결과 보고서	290
[참고자료] 위(Wee) 프로젝트 연락처 현황	292
[참고자료] 위기학생 지원 외부기관 현황	293
[참고자료] 학생 자살예방 생명존중 교육자료 목록	300
[참고자료] 전국 시도교육청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자료 목록	301
[참고자료] 위기학생 상담 및 심리지원 초기 대응 절차	311
[참고자료] 교사용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안내	312
[참고자료] 자살징후 알리미 스마트폰 앱 ‘스마트안심드림’	314
[참고자료]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 개요	315
[참고자료]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기준	316
[참고자료] 학생 자살 원인 분석 및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한 보완 보고	317
[참고자료] 학생자살 심리부검 결과 및 학생 지도 시 유의 사항	318



CONTENTS

부 록

양성평등교육

서식V-1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예시)	320
서식V-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323
서식V-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보고 양식(예시)	328
서식V-4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양식(예시)	329
서식V-5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보고 양식(예시)	330
서식V-6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331
[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335





G Y E O N G G I D O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일러두기

업무 매뉴얼 제작 배경

-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과 관련한 각종 갈등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생활인권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매뉴얼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생활인성교육과 전체 업무를 따로따로 다루기보다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학생생활인권 관련 업무담당자를 보완해주는 업무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하였음
- 업무별 각종 매뉴얼이 많이 보급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정선, 한권으로 제공하여 신속한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업무 매뉴얼 수립 방향

-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기준으로 (평상시)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 (사건발생시) 학교폭력대책담당 - (위기 발생시) 학생위기지원센터 - (교원·학생·학부모) 양성평등교육담당 순으로 작성함
-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할 활동을 중심으로 집필하되 꼭 필요한 자료를 정선하여 제시함

주요 용어의 간략한 표기

- '경기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전담기구'
-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책임교사'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은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생활기록부'는 '생활기록부'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위원회'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보호위원회'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는 '위기관리위원회'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기본방향

- 2023 학생생활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 추진 세부 과제

2023 학생생활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신뢰와 존중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학교폭력대책

학생위기지원

양성평등교육

중점추진과제(4담당, 22과제)

1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1.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2.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3.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2 학교폭력대책

1. 학교폭력 중점 추진내용
2. 학교폭력 예방교육
3.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업무 처리 지침
4.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5. 학교폭력 사안 처리
6. 관계회복과 분쟁조정
7.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8.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3 학생위기지원

1.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지원
2. 생명존중 및 생명 살림교육
3.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4. 학생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위기학생 및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
6. 자살 위기학생 관리
7. 자살사안 발생 시 대처
8.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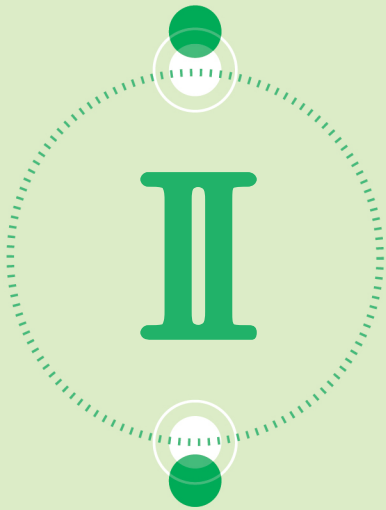
4 양성평등교육

1. 양성평등교육
2. 폭력예방교육
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추진 세부 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세부사업
1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1-1.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1-1-1. 생활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반 조성
		1-1-2. 교육과정 연계 학생생활교육 활성화
		1-1-3.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1-1-4. 학생생활교육 지원 정책 활성화
		1-1-5.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1-1-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1-2.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1-2-1. 학교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자료 보급
		1-2-2.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위한 구제활동 내실화
	1-3.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1-3-1.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조성
		1-3-2.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
		1-3-3.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
2 학교폭력대책	2-1. 학교폭력 중점 추진내용	2-1-1. 학교폭력 중점 추진내용
	2-2. 학교폭력 예방교육	2-2-1.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2-3.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업무 처리 지침	2-3-1. 학교폭력 실태조사
		2-3-2. 후속업무 처리 지침
	2-4.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2-4-1.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2-5-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통보
		2-5-2. 긴급조치
		2-5-3. 학교폭력 사안조사
		2-5-4.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2-5-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2-5-6.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2-5-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6. 관계회복과 분쟁조정	2-6-1. 관계회복
		2-6-2. 분쟁조정
	2-7.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2-7-1.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요령
		2-7-2.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요령
	2-8. 학교폭력 파·가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2-8-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2-8-2. 학교폭력 파·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 피해학생 대 상 일시보호기관
		2-8-3.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2-8-4.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

정책과제	세부과제	세부사업
3 학생위기지원	3-1.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지원	3-1-1. 예방 중심의 위(Wee)프로젝트 학교 지원
		3-1-2. 위(Wee)클래스 : 단위학교 상담실
		3-1-3.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상담기관
		3-1-4. 위(Wee)스쿨 : 경기새울학교
		3-1-5.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3-2. 생명존중 및 생명 살림교육	3-2-1. 생명존중문화 조성
		3-2-2.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교육 강화
	3-3.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3-3-1.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3-3-2.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3-4. 학생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4-1.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5. 위기학생 및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	3-5-1.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3-5-2. 위기학생 발생교 학생 및 교직원 지원
		3-5-3.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3-6. 자살 위기학생 관리	3-6-1. 자살징후 조기발견 강화
4 양성평등교육	3-7. 자살사안 발생 시 대처	3-7-1. 자살사고 발생 시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7-2. 학교 위기개입 지원(단계별 처리방안)
	3-8.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3-8-1.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3-8-2.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3-8-3. 학생 실종·유괴 사안
	4-1. 양성평등교육	4-1-1. 양성평등교육 기반 조성
	4-2. 폭력예방교육	4-2-1.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4-2-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4-2-3. 폭력예방교육 결과 제출
	4-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4-3-1.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화해중재와 생활교육 강화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1장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 1-1. 생활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반 조성
- 1-2. 교육과정 연계 학생생활교육 활성화
- 1-3.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 1-4. 학생생활교육 지원 정책 활성화
- 1-5.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 1-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2장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 2-1. 학교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자료 보급
- 2-2.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위한 구제활동 내실화

3장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 3-1.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 3-2.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
- 3-3.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

기본 방향

-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1장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1-1

생활교육협의회 구성 및 기반 조성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 및 지침 보급

- 목적
 - 학생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 개발
 - 자율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시행령 제31조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 18대(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계획 6-2-1(학교운영 자율화)
- 기간: 2022. 12월 ~ 2023. 2월
- 대상: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 내용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 및 지침 개발 보급(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탑재 및 인쇄물 배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및 컨설팅(교육지원청별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4~11월))
 -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결과 제출(12월)

■ 생활교육 정책실행연구회 운영

- 목적: 현장중심 생활교육 담당 교원을 통한 정책 실행으로 정책과 현장의 연계성 강화
- 근거
 -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3-2-1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1-3-1 교원 연구활동 지원
- 기간: 2023. 3월, 연중
- 대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8명
- 내용
 - 생활교육 우수사례 일반화를 위한 정책실행 연구
 -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있는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
 - 실행연구 결과의 학교 현장 환류를 위한 연구 성과물(사례집, 매뉴얼, 장학자료 등) 도출

●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 목적
 - 생활교육 담당자간 연결망 구축을 통한 생활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 지구별 생활교육 담당자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율과 책임의 생활교육 방법 모색
 - 유관기관, 상인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교육 실시
- 방침
 - 25개 교육지원청을 3권역(남동권, 남서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생활교육협의체 구성(담당장학사 및 유관기관)을 통한 소통과 지원체제 구축
 - 교육지원청별 10개 내외의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생활교육 업무 담당 보직교사 대상)을 통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
 - 유관기관, 상인회, 지역주민 등과 함께하는 합동생활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생활교육 방안 모색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상시 소통, 협력 창구 마련
- 기간
 - 3개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구성(도교육청, 3월)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편성(교육지원청, 4월)
 - 연간 2회 실시(학기별 1회) 예시) 1학기 초(4월), 2학기 초(10월)
 -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연 1회 이상 실시 권장
- 대상
 -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교육지원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도교육청 주관)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지구별 생활교육담당 부장교사(교육지원청 주관) <지역은 25개 교육지원청, 지구는 학교장 지구장학협의회 편성 방식을 준용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 물리적 거리, 배정학군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음>
 - 지구별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시 유관기관 담당자 등을 참여시켜 합동 구성 운영 <유관기관 담당자: 경찰지구대장, 구청 청소년업무담당자, 상담소장, 상인회 임원, 주민대표 등>
- 내용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운영 <도교육청>

- 생활교육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지원청 안내(3월)
- 권역별 생활교육협의체 구성(3개 권역)

지역 \ 권역	1(남동권)	2(남서권)	3(북부권)
교육지원청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김포,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계	8개 지역	9개 지역	8개 지역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회의록 취합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교육지원청, 간사교 및 모든학교>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를 편성하고 자체계획 수립 후 각급학교로 안내(4월)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지원단 구성 및 위촉(운영지원단 소속교를 간사교로 지정, 지구별 1명 교육장 위촉)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회의록 취합 후 도교육청 보고(반기별 1회, 총 2회)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운영비 교육지원청별 자체 예산 수립 및 운영 지원 권장(도교육청 예산 미지원)

<간사교>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개최 관련 업무 추진
- 협의회 장소 선정(장소는 간사교 및 지구별 소속교 중 선정)
- 협의회 회의록 작성 보고(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 생활교육 실천사례 발표 및 논의, 주제 중심 토론 및 협의 진행
- 지구별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추진

<모든학교>

- 간사교의 협의회 참석 알림 공문 확인 후 참석
- 생활교육 관련 방법 및 사례 공유, 공동 및 중대 사안 해결 방안 강구, 정책 제안

지구별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운영<간사교>

-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개최 시 유관기관(경찰서, 지구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쉼터 등), 상인회, 지역주민 대표 등과 연계하여 합동생활교육협의회 개최(23년 연1회 권장, 24년 확대 운영 예정)
- 지구별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일정 및 참여 공문 발송
- 지구별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시 논의 사항

-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교육 방안 모색 및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 ▽ 지역 우범지역 파악 및 정보공유, 학생보호 환경개선 필요사항 파악 및 해결방안 공동 모색
- ▽ 연합교 외 생활지도 시 연계 운영 방법 강구(지역축제, 졸업식 전후, 이벤트 행사 등)
- ▽ 학생 대상 금연·음주예방 캠페인 실시, 담배·주류판매 업소 협조 안내 및 신고 강화 방안 논의

● 생활교육협의회 중장기 계획

구분	연도	2023	2024	2025
		구축	활성화	내실화
권역별 생활교육협의회		연2회	연4회	연4회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		연2회	연4회	연4회
지구별 합동생활교육협의회 (연합교외생활지도)		연1회(권장) -	연2회 (연1회 권장)	연2회 (연2회 권장)

1-2

교육과정 연계 학생생활교육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표창

- 목적: 학생생활교육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사례를 적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하며 생활교육 방법을 일반화하여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 방법 안내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
- 기간: 2023년 12월
- 대상: 교원, 장학사, 학교
- 내용
 - 자율과 존중, 책임 가치를 실천한 균형 잡힌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과정 및 운영 우수사례 발굴
 - 일반 학교에 적용 가능한 실천 사례 발굴 및 정책개발
 - 심사 기준: 사례적합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
 - 교원(30명), 전문직(10명), 기관(25교) 교육감 표창

●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 목적
 - 일상적,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으로 바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인성 덕목 실천의 학교문화 조성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교육 운영을 위한 초·중등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보급
- 기간: 2023년 10월
- 대상: 각급학교(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탑재)
- 내용
 - 교과통합형 인성덕목 실천 교수학습 자료 개발
 - 학생자치, 인성교육 연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 정책실행연구회, 생활교육협의회, 생활교육 우수 방법 및 실천 사례 연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1-3

학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 개발

●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목적: 생활교육 담당자의 생활교육 관련 법령, 조례, 지침의 내용 숙지 및 현행화를 통한 학교 안 생활교육 역량 증진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 2023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3-2-1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 기간: 2023년 3월, 9월
- 대상: 생활교육 담당장학사 및 담당교사
- 내용: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 안내, 생활교육 방법 및 징계 절차 등 연수

● 유형별, 시기별 생활교육 도움 자료 제작

- 목적: 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 관리자의 생활교육 역량증진과 개정된 법률과 지침이 반영된 매뉴얼 제작 보급
- 기간: 2023년 9월
- 대상: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 방법: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 탑재
- 내용: 사안 유형별, 사례별, 시기별 지도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는 도움 자료 제작 보급

1-4

학생생활교육 지원 정책 활성화

● 학생생활교육 학생 주도 실천 프로젝트 UCC공모전 실시

- 목적
 - 학생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실천하는 학생주도 학교규칙 준수 실천 프로젝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기간: 10월
- 대상: 경기도 관내 초·중·고 학생 대상
- 내용
 - 자율과 존중, 책임 가치를 실천한 균형 잡힌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실천 UCC공모전 실시
 - 개인 및 팀별 참가(통합운영)
 - 주제: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자율과 책임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칙준수, 인성덕목을 실천하는 학교생활교육 실천 등
 - 방식 및 방법: 5분 이내 동영상
 - 심사 기준: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 완성도 등
 - 초·중·고 각각 10팀 선발(최우수 2팀, 우수 3팀, 장려팀 5팀) 총 30팀
 - 교육감 표창

● 사회봉사기관 운영 현황 안내 및 발굴 활성화

- 목적: 단위학교의 사회봉사 조치 학생 집행을 위한 사회봉사 기관 현황 안내 및 발굴을 통한 학교 현장 지원
- 근거: 2023 경기도교육 주요업무계획 3-2-1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 기간: 2023년 2월, 9월
- 대상: 각급학교
- 내용
 - 경기도 관내 자원봉사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의 징계 집행을 가능한 기관 정보 안내
 - 사회봉사 기관 의뢰 시 주의사항, 사전 교육해야 할 내용 등 안내를 통한 현장 지원
- 사회봉사기관 발굴 및 지원 계획

구분	내용	목표	비고
년도			
2023	사회봉사기관 현황 파악, 발굴 및 축적	지역별 5개 이상	
2024	사회봉사 운영프로그램의 내용 적합성 및 교육적 효과성 점검	지역별 10개 이상	
2025	사회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15개 이상	

1-5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이해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념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6호, 제10호)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9호)으로 구성되고, 이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고 한다.

●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호)

학 교 규 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점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 개정절차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의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간이 되며,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에게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 학생

-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학교 자치 규범
-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하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규범
- 학교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의 근거

● 학부모(보호자)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 안내서
- 자녀의 생활교육에 대한 학부모(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서
-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범

● 교원

- 학생의 권리 보호와 책임 부과의 기준이 되는 생활교육 규범
- 통제나 징계보다는 참여와 자치, 책임을 우선하는 교육방법으로서의 규범
- 학생·학부모(보호자)의 학교생활 참여를 이끌어 내는 소통의 근거 규범

● 학생생활에 대한 규정 자율성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 중 용모(두발·복장),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세부적 예시 사항 삭제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증대됨

개정 전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개정 후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개정(2020. 2. 25.)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구성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규범으로 법규범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법정사항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의 권리보호와 책임에 관한 사항¹⁾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의 역사와 교육 가치, 문화적, 지역적 특수성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구성(예시)

※ 아래 예시안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삭제, 변경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음

구 분	항 목
총칙	- 규정 명칭 - 학교생활인권규정 적용의 원칙(학생인권의 보장, 차별금지 조항 등 명시) - 학교 구성원의 책무 - 적용근거와 목적
학교생활	- 시설이용과 환경 - 양성평등과 혐오 금지 - 수업태도 - 기타 학교생활 관련 사항 - 타인의 권리 존중 -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휴식시간
학생생활교육	- 학생생활교육의 원칙 - 학생의 학교적응 최우선 지원, 차별금지 등 -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 - 교육목적상 필요한 생활교육의 내용 - 수업 중, 방과 후, 교육상황별 생활교육 방법 등 - 학생징계의 기본 원칙 - 징계사유 사전통지, 소명의 기회 보장 등 적법절차 준수 - 징계 사실의 공표 등 금지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학생 징계의 종류와 조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확정, 통지 - 학교 내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퇴학에 대한 재심청구
학생자치	-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원칙 - 자치활동의 조직, 기능 등 규정 위임조항 - 학생, 학생대표의 의견제출권 보장
규정 제·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규정개정안의 발의와 심의 절차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구분	권장시기	내 용
안내	학년초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안내·연수·홍보 - 학교 홈페이지 탑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탑재 -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담은 소책자, 리플릿 제작·배부 - 가정통신문, 학부모(보호자) 문자 메시지 발송, 설명회 개최 - 학교알리미 탑재 ※ 정보공시항목-교육활동(학교규칙 및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연중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 단계별 교육적 회복중심 생활교육 실시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과정 상시 점검 - 학생 인권동아리 활동 - 학부모 총회 의견 청취 - 학교 홈페이지 및 의견 게시판 - 교직원 회의
평가 제·개정 환류	학년말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평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 개정안 의견 조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발의안 마련, 의견수렴, 심의, 심의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사항 교육지원청 보고 - 제·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알리미 탑재(수시 공시 가능) • 학교생활인권규정 평가 결과 환류

※ 단위학교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절차	참고	근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전문가로 구성(8인~12인 내외로 구성)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 1/3이상 되도록 구성	
↓		
제·개정안 발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안을 발의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 수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제·개정 시안 마련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개정 시안 마련	
↓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1항, 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부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개정안 확정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학교장 결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창으로 공지 - 학교정보공시(수시) -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로 보고(단, 상위법 반영으로 인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보고 생략)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6조 제4항
↓		
제·개정 규정 안내	학교교육공동체 대상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 평가·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분석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방법 및 내용

- 학교생활교육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교원, 학부모(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전문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는 변호사, 교육 및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기**
		구분	구성 방법	세부방법	
위원장 포함 8명~12명	위원 중 호선	교원	선출	- 학생위원의 수 이하로 구성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1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학생	선출	-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 - 위원회의 1/3이상 되도록 구성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불가피한 경우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	
		학부모 (보호자)	위촉 또는 선출*	- (위촉)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 - (선출)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	
		전문가	위촉	- 교원, 학생, 학부모(보호자) 위원들이 추천하여 위촉 -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외부위원으로 인정	

* 위촉 또는 선출의 방식 중 각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 위원의 졸업, 전학,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선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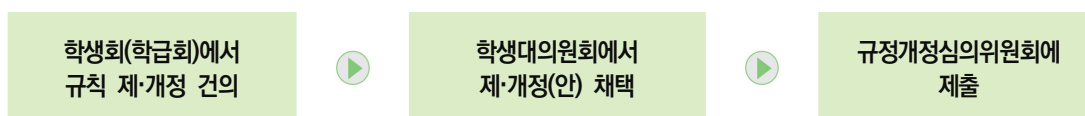
-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운영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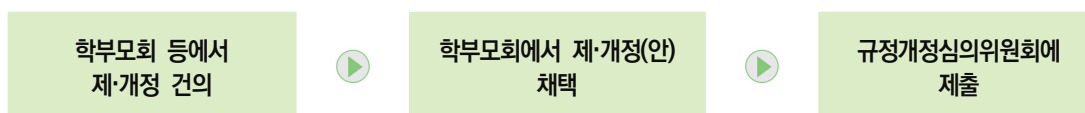
• 방법 및 내용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자치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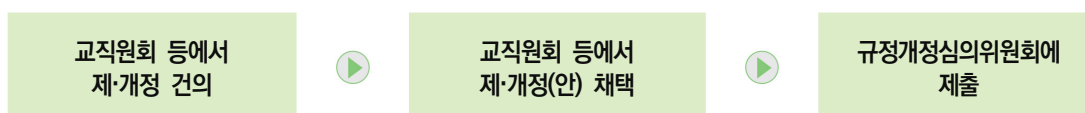
▷ 학생 발의 (학생회를 통한 발의)



▷ 학부모 발의 (학부모회를 통한 발의)



▷ 교원 발의 (교직원회를 통한 발의)



- 관련 법령이나 조례, 교육청 지침이 변경되어 학교생활교육규정 제·개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규정개정심의 위원회에 개정을 요청한다.
- 학년말에 당해 연도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여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 유의사항
 -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발의 시기를 정하도록 한다.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개정안 검토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등 관련 법령 및 학교규칙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학생 내 합리적 문화와 지나친 괴리가 있는 내용, 모호한 표현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규제 등은 삭제·수정한다.
-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 관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한다.

• 의견 수렴

- 대상: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 방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 학생

학급 단위	학년 단위	총학생회	학생(안)
◦ 학급회의 ◦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 토론회	◦ 학년 토론회 ◦ 설문조사 ◦ 스티커 붙이기	◦ 학생회 토론회	

▷ 학부모(보호자)

◦ 학부모회 ◦ 설문조사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의견수렴 등)	학부모(안)

▷ 교원

◦ 부서별, 학년별 협의회	◦ 교직원 회의	교원(안)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별 의견수렴 자료를 토대로 1차 시안을 마련한다.
- 1차 시안은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유의사항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설문지 설문 구성, 방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에 따른 기본권 제한 기준 및 보장 원칙에 반할 경우 이는 형식적 측면의 절차적 정당성만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 정당성은 갖추지 못한 규정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개정 시안 마련

- 방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최종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안을 마련한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 개정안 심의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확정하고 제·개정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교장은 제·개정안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쳐야 함)
 - 학생 생활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의 일부 문구나 기구의 명칭 등을 단순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 상위 법령(조례, 지침 포함)의 제·개정 사항을 규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심의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배경,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장 결재

-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된 제·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확정·공포·시행

-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확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공포한다.
 - 학교 구성원들이 제·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 유의 사항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창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 학교생활인권규정이 개정되면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지원청(생활교육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서류)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 제·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확인 체크리스트

● 제·개정 규정 안내

- 방법 및 내용
 - 제·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학생·교원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한다.
 - 교원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당한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 새학년 시작 전에 개정과정을 완료하여 새학년 시작과 함께 개정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사정을 고려하여 제·개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적용 및 환류
 - 방법 및 내용
 - 학년말 학생·학부모(보호자)·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요구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한다.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평가 검토사항]

-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적합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가?
-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가?
- 평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며 공개하고 있는가?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내용과 구성원의 책무에 대해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안내하고 있는가?
- 학교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1-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기본 방침

- 학생의 징계는 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적응과 심리적 회복,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불복절차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등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부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따라 각 학교의 학교규칙으로써 규정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 경기도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본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 운영한다.

- 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은 각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내에 규정하거나,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위임에 따라 별도의 학교규칙으로 규정한다.
- 학생선도관리는 각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에 따라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임무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교생활인권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기능
 -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운영
 -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서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각 학교 실정에 따라 규정으로써 마련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 징계 조치별 내용 및 유의사항

- 학교 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사회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 퇴학
 - 적법절차에 따라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신중히 결정한다.
 -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가 있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반성 및 행동개선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위 가정학습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 선도 절차

● 사안 발생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에게 인계한다.

● 관찰 면담

-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가 대상 학생을 관찰 및 면담하여,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중 판단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경우 지도·훈계로 종결한다.
 -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위원회 회부가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의 조사

-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에서 정식으로 대상 학생을 조사한다.

- 조사 방법
 - 대상 학생 및 관련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한다.
 -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다.
-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권리 고지
 - 조사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사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는 금지된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 조사 시 2인 이상의 교사가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한다.
 -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반드시 자필로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및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작성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 **위원회 준비**
 - 학교생활인권 담당 부서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 위 내용 보고 시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 사안 발생 개요,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 그 밖에 학생 관련 참고 사항
 - 위원장은 위원회 일시 및 장소를 결정한다.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 **위원회 개최·진행**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의 질의·응답
 -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의 질의·응답
 -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응답
 - 심의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의 결과 확정

-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통지

-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 조치 이행

- 본 지침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 조치 대상자, 조치 내용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 학교단위 불복 절차: 재심의

●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재심의 여부 결정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재심의

-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 학교장 조치

-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

■ 도교육청 재심 청구 및 재심 절차

● 재심청구

-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다.
-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한다.

- 재심 청구 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피청구인
 - 퇴학 조치 일자 및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재

● 재심

-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출석하여 진술해야 하고, 다만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 위원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외된다.
-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후 절차

- 재심결정
-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
- 시행

■ 그 밖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행정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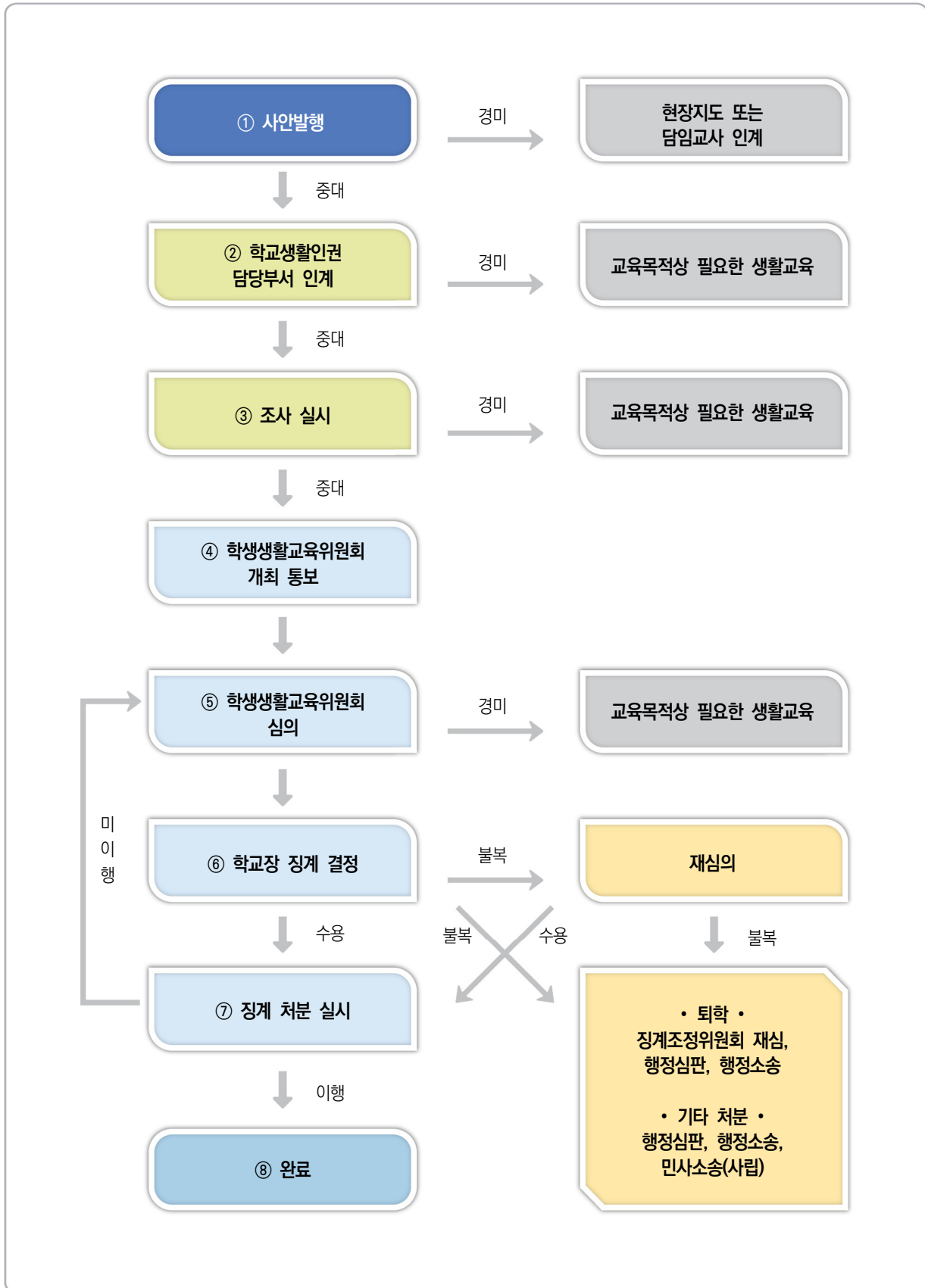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에 대한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031-249-0676~0679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흐름도



2장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조항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 아르바이트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2.〉
-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교직원(「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해당 각급학교의 교원(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규정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2조(보호자 교육)

-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도움말

<교육공동체 대상별 학생인권교육>

구분	횟수	방법
학생	학기당 2시간 이상 (연 2회 이상)	- 교육내용에 연 1회 이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교육 포함 - 학생자치회·인권동아리 등 학생 스스로 행하는 인권학습활동 보장 및 지원
교직원	연 2회 이상	-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 운영 - 교사 개별 원격연수 이수로 대체할 경우 연간계획으로 수립·운영
보호자	연 2회 이상	- 연 2회 이상 보호자 대상 총회,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및 학생인권 보호 방안 설명 또는 안내

☞ 이하, 안내되는 학생인권 교육자료(링크 포함)는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
(<https://more.goe.go.kr/shr>) 자료실에 탑재됨

2-1

학교공동체 학생인권교육 자료 보급

2-1-1 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 원칙 및 권장사항

-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 원칙: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학생자치회·인권동아리 등 학생 스스로 행하는 인권학습활동 보장 및 지원
- 권장사항

- 교육내용에 연 1회 이상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내용 포함
- 사회 등 교과 교육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 운영시수도 인정
 - * 단, 학년별 운영 총합의 평균 시간이 학기별 2차시 이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참고자료: 「교과통합형 인권교육 수업 모델 개발」 연구(경기도교육연구원, 2021) 수록된 수업모델 참고
(탐재: <https://url.kr/gh48ip>)
- 학생자치기구 주도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10월) 행사운영 시 2시간 이상 실시로 인정

●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계기교육 자료

- 「유엔아동권리협약」-「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연계 교육자료(2021년 개발)
- 설명: 협약과 조례의 연관성을 사례와 질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
- 형태: **웹포스터**, 웹포스터 응용 주사위 활동지, 웹포스터 활용 초-중등 수업 PPT
- 탐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166번 게시물
- 자료 이미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초·중등 수업자료(2020년 개발)
 - 설명: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이해를 위한 퀴즈 활동 수업자료
 - 형태: (초등) 십자말퀴즈 (중등) 권리 주장과 조례 연결 퀴즈 및 심화 활동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98번 게시글
 - 자료 이미지



- 학생들이 다시 쓰고 그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집(2020년 개발)
 - 설명: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조례집
 - 형태: 자료집(PDF), 학생들이 그린 삽화와 쉬운 말 규정
 - 활용 예시: 조문 페이지와 삽화 페이지를 분리하여 어울리는 내용 맞춰보기,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10월)에 맘에 드는 페이지를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경기도학생인권조례) 달면 랜덤으로 상품을 주는 이벤트 운영 등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100번 게시글
 - 자료 이미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관련 동영상

- 학교 공동체를 위한 약속, 학생인권조례 10주년(4분42초) <https://youtu.be/iho25yvvzio>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홍보영상(2분5초) <https://youtu.be/ARYRO5aQfC0>
-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홍보영상(2분5초) <https://youtu.be/o-CuW3q7A6w>
-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6분49초) <https://youtu.be/Z8wGoeemfMk>
-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학교생활(4분24초) <https://youtu.be/5xeKVNQIx4A>
- 서로에 대한 존중(5분24초) <https://youtu.be/3dcqp1k0SvY>
-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4분59초) <https://youtu.be/MCB7CG4hyUU>
- 개성실현(6분2초) <https://youtu.be/khCMO9kgWXc>
- 차별금지(6분) <https://youtu.be/xzRpa16Ma3U>
- 프라이버시(5분31초) https://youtu.be/172_Z-4XT8s

● 「교과통합 인권교육 초등학교 수업자료」(2022년 개발) 활용 교과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 설명: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
- 형태: 워크북(PDF), 워크북과 함께 활용 가능한 PPT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탑재 예정
- 특징: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교실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워크북), 학습지별 연관된 시·청각 자료 링크(워크북, PPT) 안내
- 참고: 중등학교 교과 교육과정과 인권교육을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연구한 「교과통합형 인권 교육 수업 모델 개발」(2021년) 참고 (탑재: <https://url.kr/gh48ip>)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2020년 개발) 활용 다회기 교육

- 설명: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지가 수록된 지도서
- 형태: 자료집(PDF), 학습지별 활용 가능한 시·청각 자료 링크 안내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110번 게시글
- 자료 편성표

단원 제목(핵심가치)		학습목표[주요활동]
제1장 초등학교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1. 틀린 것과 다른 것 (평등, 존중)	- 편견과 차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편견과 차별 없는 학급문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역할극, 학급규칙 토의]
	2. 양성평등 (평등, 존중, 양성평등)	- 성차별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다. [역할극]
	3. 평화와 인권 (평화, 인권)	- 평화의 의미와 비폭력대화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조사활동]
	4. 학교공동체의 다양성과 공존 (다양성, 공존)	- 학교공동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다. [핫시팅 활동, 모둠토의]

단원 제목(핵심가치)		학습목표[주요활동]
제2장 중학교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1. 유엔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 (인간 존엄, 아동인권)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모둠토의]
	2. 학생다움과 개성 추구 (개성을 실현할 권리)	-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가상인터뷰]
	3. 다문화 시대, 인권 이야기 (인권감수성, 존중, 다문화)	- 보편 인권의 관점에서 다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차별금지규약 토의]
	4.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 보편적 관점에서, 교사, 학생, 보호자를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할 수 있다. [학교생활인권규정 토의]
제3장 고등학교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 (학생인권)	-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고, 학교 안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선언문 제작]
	2. 영화를 통해 인권 이해하기 (일상 속 인권)	- 영화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영화제작]
	3. 우리 역사 속의 인권 이해하기 (역사와 인권)	-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우리 역사 속에서 알아보고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을 찾고 실천할 수 있다. [실태조사, 편지쓰기, 카드뉴스 제작]
	4. 보다 좋은 학교 만들기 (상호존중,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 인권침해 없는 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사례조사, 공익광고 만들기]

● 지도서 활용 계기교육

월	관련 기념일	지도서 관련 단원
3	3.8. 세계 여성의 날 3.21.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1-2. 양성평등(26쪽) 1-1. 틀린 것과 다른 것(17쪽)
4	4.20. 장애인의 날	1-1. 틀린 것과 다른 것(17쪽)
5	5.20. 세계인의 날 가정의 달	1-1. 틀린 것과 다른 것(17쪽) 2-3. 다문화 시대, 인권 이야기(75쪽) 3-2. 영화를 통해 인권 이해하기(100쪽)
7	7.17. 제헌절	3-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93쪽) ☞ 수업 예. 헌법의 기본권과 학생인권
8-9	8.15. 광복절, 9.21. 국제 평화의 날	1-3. 평화와 인권(36쪽) 3-3. 우리 역사 속의 인권 이해하기(109쪽)
10	【경기도 학생인권의 달】 10.5.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일	1-4. 학교공동체의 다양성과 공존(46쪽) 2-2. 학생다움과 개성 추구(66쪽) 2-4.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82쪽) 3-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93쪽) 3-4. 보다 좋은 학교 만들기(127쪽)
11	11.20. 세계 아동의 날 (198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일)	2-1. 유엔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59쪽) ☞ 수업 예. 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
12	12.10. 세계인권선언일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일)	2-1. 유엔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59쪽) 3-1.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살펴보기(93쪽) ☞ 수업 예. 세계인권선언과 아동(학생)인권

● 타 기관 제작 영상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영상
 - 인권영화 DVD 신청: <https://url.kr/esomzq>
 - '인권문화콘텐츠(DVD)' 유형 선택, 제목란에 '택배' 기재 후 '검색하기'
 - 무료 신청 후 택배 수령(착불), 영화별 학습지도서 첨부
 - 아동, 학교관련 결정례 영상(유튜브)
 - 학교별 판단에 따라 교직원, 보호자 대상 연수 자료로도 활용 가능

연번	제목	링크
1	초대받지 못한 아이 - 노키즈존(3분41초)	https://youtu.be/b4p7WQQUU4Y
2	'학생다움'을 강요받는 청소년(4분14초)	https://youtu.be/x6FnRN-WkCs
3	학교 가는 길 - 난민 장애인 등록 불허(3분39초)	https://youtu.be/bFH9oe6q07w
4	그들의 선택 - 만 18세 선거권 제한(3분34초)	https://youtu.be/aZVPHbloYvU
5	행복은 학교 순이 아니잖아요.(1분36초)	https://youtu.be/VVEb_yYjccU
6	미등록 이주 아동은 중학교 취학 불가?(3분19초)	https://youtu.be/dQdSqomnTeo
7	초등학교 야구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선수 인권침해(43초)	https://youtu.be/m2txQGzAXvo
8	전학 가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8분57초)	https://youtu.be/Hf6egrrVO8Q

- EBS 지식채널e
 - 인권관련 영상 다수 탑재: <https://home.ebs.co.kr/jisike/replayListNew>
 - 다시보기 메뉴> 검색창에서 '인권' 작성 후 검색

●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관련 교육자료

- 관련 규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③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신설 2021.11.02.〉

-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실천 안내서 및 카드뉴스 등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87번 게시글
-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중·고등학교용)
 - 관련 공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혐오차별 대응 교육자료 안내(학생생활인권과-18623, 2021.12.6.)

2-1-2 학생 대상 학생인권교육

● 원칙 및 권장사항

-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 제2항
- 원칙: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
- 권장사항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 강사단 초빙 연수, 회별 2시간 이상 운영 권장
 - 강사단 명단: 2022.4월 안내 공문 참고('인권강사단' 검색)
- 집합연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교사 개별 원격연수 이수로 대체가능 하되, 연간계획으로 수립·운영 권장
 - 예) 교원 전원의 15차시 연수 이수증을 근거로 연 2회 실시를 인정한다 등
 - 교원 원격연수 추천: 경기도교육연수원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분기별 개설/ 15차시)

● 학생인권 관련 교원 연수

-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원격)
- 경기도교육연수원(www.gtie.go.kr) 운영
- 총 15차시(1학점) 분기별 운영

- 강의 주제
 - 학교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 인권의 이해 및 인권감수성
 - 인권 증진의 역사
 - 아동-청소년 인권
 - 학생인권의 쟁점과 과제
 - 학생인권의 보장
 -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문화 만들기
 - 인권친화적 생활교육과 교실살이
 - 인권교육의 이론과 원칙
 - 세부 주제: 노동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장애인권교육, 이주민 인권교육 등
 - 학교 인권교육 운영의 실제

※ 공개페이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점 미인정)

- 학교별 계획에 따라 차시 단위 활용이 가능함
<http://www.kocw.net/home/cview.do?cid=d30c725608976813>
- 공개페이지이므로 **행정직원 포함 교직원** 대상 연수 운영이 가능함
- 차시별 연수 자료 탑재

● 선생님을 위한 인권+(원격)

- 교육사랑연수원(<http://www.edulove.co.kr/main>)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위탁
- 총 15차시(1학점) 상시 운영

• 강의 주제

- 인권이란?
- 인권을 향한 인류의 노력
-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
- 나의 인권 감수성은?
- 오, 자유~ 나는 자유로워라!
- 생각하는 것은 자유!
- 자유권과 민주정치
- 삶의 마지노선에 서서
- 에듀토피아를 꿈꾸며
- 문화와 함께하는 삶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 소외된 우리의 인권 이야기
- 노숙자, 이주노동자 차별을 넘어서
- 작은 권리 알고 지키기
- 인권기관을 찾아서
- 인권 100% 세상을 향하여

- 경기도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직무연수 참여
- 연중 개설 시 학교대상 공문 안내 예정

■ 자료 활용을 통한 자체 연수 운영

-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경기도교육청 등 7개 교육청, 2020년 개발)
 - 설명: 학교 관련 184개 사례, 사례별 판단(결정례 등)·지침 등 수록
 - 형태: 자료집(PDF),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별 사례구성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107번 게시글
 - 활용 예시: 기본권별 관심 사례 유인물 공람, 사례 관련 학생인권 보호방안 토의 등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2020년 개발)
 - 설명: 학교 인권교육 배경, 개념 등(3~7쪽) 수록
 - 형태: 자료집(PDF)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110번 게시글
 - 활용 예시: 교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지도서 수업활용 연수
- 국가인권위원회 제작 자료(2021-2022년 개발)
 - 설명: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안내서, 휴대전화 수거·교무실 청소 등 학교 인권에 관한 영상 등
 - 형태: 자료집(PDF), 동영상(유튜브) 등
 - 자료목록

연번	제목	링크
1	「교사.인권교육.하다」(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 안내서)	https://url.kr/mo8hgz
2	「놀이로 배우는 인권」(6~12세 아동을 위한 인권교육 도구)	
3	「열두 빛깔 인권놀이터」(놀이로 배우는 인권 활용안내서)	
4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놀이로 배우는 인권교육	https://url.kr/isr6a2
5	- 인별다방(인권과 차별을 말하는 다방)	
	- 인별다방에 온 손님들(4분27초)	
	- 휴대폰 수거, 꼭 필요할까?(11분41초)	
	- 모두를 위한 학교 공간, 우리 학교는 어때?(11분13초)	
	- 학교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한가요?(10분30초)	
	- 누구나 마이너함 하나씩은 있잖아요?(8분30초)	
	-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3인3색 꿀팁(6분57초)	

2-1-3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

● 원칙 및 권장사항

-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2조 제1항
- 원칙: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추진
- 권장사항

- 보호자 대상 총회, 간담회 등 운영 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안내
- 가정통신문 안내 통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교육
 - 경기도교육청 발간, '보호자 소식지' 활용

● 학생의 인권에 관한 보호자 소식지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 설명: 경기도교육청 제작 보호자 대상 교육자료(2023년 발간 계획 없음)
- 형태: 소식지(PDF, JPEG)
- 탑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 소속-학생생활교육과) '소식지' 검색
- 발간 리스트

호	발간일	주제	내용
제1호	2020.10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역사, 칼럼, 도서추천 등
제2호	2021.4월	차별과 혐오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학교문화	공동선언, 칼럼, 학교사례 등
제3호	2021.9월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UN 권고 이행 사항, 칼럼 등
제4호	2022.5월	학생은 존엄한 시민입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 정보 등
제5호	2022.11월	세계인권선언, 인류의 보편적 인권 선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 자료 이미지



2-1-4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 운영(10월)

권장사항

- 학교공동체 인권 증진을 위한 운영을 하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8조 근거에 따라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운영
- 학교공동체 인권의 달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학생인권교육 계획으로 수립 가능함

【운영사례 1】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

- 각 학교 사정에 맞게 학생인권 주제를 선정해 토론회 운영
- 주제에 따라 참여구성원 범위 결정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절차 등 학생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운영 가능
- 일반적 토론 절차에 준하여 운영
- 토론주제(예)
 - 학교생활인권규정의 휴대전화 일괄수거 규정 개선방향
 - 화장을 통한 학생의 개성실현, 어디까지 가능한가?
 - 학교에 대자보 등 표현물을 게시할 때 인권적 관점에서 지켜야 할 기준
 - 온라인 수업에서 겪은 어려움과 학습권 보장 방안 등

【운영사례 2】 학생이 주도하는 행사 운영

- 학생회, 인권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 주도 행사 운영
- 학교는 학년 초 안내를 통해 학생회, 인권동아리 등에서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행사(예시)
 - 학생인권 주제 공모전(수필, UCC, 웹툰, 포스터 등)
 - 혐오표현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
 - 학생회 주관 학생대상 학생인권교육
 - 학생인권조례 OX 퀴즈 대회
 - 학생(아동)인권 주제 영화제 등
- 학생 주도 행사 운영 시 '기획~운영' 전반에 담당교사 지도 필요(영화제 운영 시 영화선정 등)



참 고 자 료

- **경기학생인권광장**(<https://more.goe.go.kr/shr/index.do>)
 - 자료실 게시판에 경기도교육청 제작 교안, 동영상 등 탑재
 - 자료실 공지 글에 안내된 참고자료 목록 참고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http://human.gen.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https://studentrights.sen.go.kr>)
-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http://human.jbe.go.kr>)
-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https://www.gne.go.kr/index.gne?menuCd=DOM_0000001840000000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 교재·교육 자료실에 혐오표현 표준교안 등 다수 교육자료 탑재
-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NHRCkr/featured>)
 - 웹드라마, 학생인권 관련 결정례 영상 등 탑재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https://library.humanrights.go.kr/>)
 - 도서관 견학프로그램 신청 등(도서관행사 메뉴> 견학프로그램 페이지)
- **국가인권위원회**(<https://www.humanrights.go.kr/>)
 - 인권(교육) 관련 각종 자료집·단행본·보고서(정책정보 메뉴), 결정례 게시판(메인페이지 중앙 배너) 등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https://unicef.or.kr/news/crc-publications.asp>)
 - 유엔아동권리협약 포스터, 소책자 등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https://amnesty.or.kr/involved/education/>)
 - 기후변화, 빈곤 등을 주제로 한 인권교육 활동안 자료
- **국제아동인권센터**(<http://incrc.org/>)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자료(홈페이지 자료실, 블로그)
- **지식채널e 인권관련 영상**(<https://home.ebs.co.kr/jisike/replayList>)
 - 다시보기 메뉴> 검색창에서 '인권' 작성 후 검색

2-2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위한 구제활동 내실화



도움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실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제정 (2010. 10. 5. 공포)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5장 48개 조문으로 구성. 「헌법」,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의 인권을 선언하고, 학생 인권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함

2-2-1 학생인권의 보장

■ 원칙: 학생인권의 최대 보장 원칙 및 최소 제한 원칙

- 「헌법」, UN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국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교원, 학생 등 모든 국민은 학생 인권을 보호·증진하여야 함
- 학생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로 제한

■ 학생인권의 제한

- 학생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 제2항, 제18조에 의하여 학생이 참여하고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한 교육상 목적으로 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하여 가능



관련 조항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UN 「아동권리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학생인권의 제한의 한계: 학생의 인권을 제한하는 학칙은 위 목적·형식·방법·내용상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

- 목적상의 한계: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2항)
- 형식상의 한계
 - 학생인권은 학생이 참여하고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한 정당한 학칙에 의하여 제한. 학칙에 근거 없는 불이익 처분은 근거 규정 없는 처분으로 위법
 - 학칙은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없는 이상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일반성을 띄어야 하고, 학생이 예측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명확성 준수
-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조 제2항)
 - 목적의 정당성(법령에 적합한 교육적 목적의 학칙인지 심사)
 - 수단의 적합성(학생인권 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심사. 즉,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계)
 - 침해의 최소성(학생인권 제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 중에서 학생인권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했는지 심사)
 - 법익의 균형성(학생인권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심사)
 - 과잉금지의 원칙은 평등권, 양심형성의 자유 등 모든 권리를 제한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교육적인 관점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 할 때 참고적으로 적용
- 내용상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헌법」 제37조 제2항,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제3조 제2항)

● 학생인권제한 사례 발생 시 검토 순서

학생인권침해 여부는 1차적으로 법령상 학생인권을 옹호할 의무가 있는 교사가 판단할 책무가 있음

- 법률유보원칙 위반 검토
 - 학생인권을 제한하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이 존재하는가?
- 학칙의 합목적성 및 일반원칙 준수 검토
 - 해당행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이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학칙인가?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가?
 - 해당 학칙이 일반적이며 최소한의 명확성을 준수하고 있는가?
- 본질적 내용 금지 침해 검토
 - 해당 학칙이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지 않은가?
- 과잉금지의 원칙 준수 검토
 - 해당 학칙이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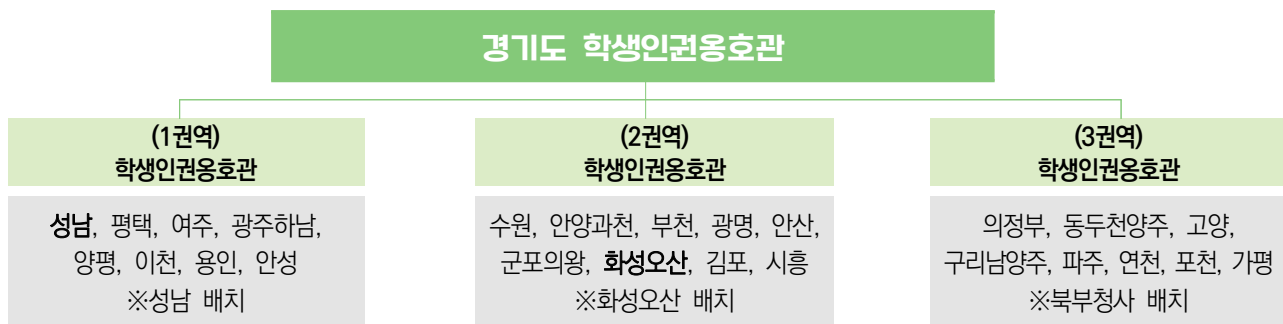
2-2-2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 근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 역할

- 학교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 공동체 내 회복적 치유 지원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 인권상담을 통한 학교 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사안 모니터링

●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현황



도움말

[학생인권 상담]

- 상담대상: 학생, 보호자, 교사 대상 학생인권 침해·예방에 관한 상담 실시
- 온라인상담: 포털사이트 '경기학생인권의과장'검색, 홈페이지(<https://more.goe.go.kr/shr>) 구제·상담

2-2-3 학생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 근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1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제44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 목적

- 학교 공동체 내 교육적 회복·치유 우선 지원을 위한 조사활동 진행
- 학생인권침해 피해학생의 치유와 복귀를 위한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 학교 인권 증진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사항 모니터링 및 시정권고

● 권역별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적 조사 및 구제활동 진행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1조 내지 제45조에 따른 조사 및 구제활동 진행
-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후 학생인권옹호관 협의를 통한 침해 여부 결정

● 추진방향

-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중심의 조사활동 진행
- 인권침해 사안의 당사자 간 갈등조정과 화해 지원 활동

2-2-4 학생인권침해 사례

사례 1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 사례(혐오표현)

※ 설명출처: 「학교 안 혐오 현상과 교육의 과제」(경기도교육연구원, 2018년) 발췌

혐오표현 사례

- 소수자 혐오: 다문화, 차이나, 장애, 병신, 게이 등 소수자 계층과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호칭하거나 빗댄 말
- 외모 비하: (큰 덩치) 돼지새끼·큰형님, (생얼) 시궁창·멧돼지 같다.
(못 생긴 외모) 얼굴 뽕았냐, (마른 몸) 멸치·해골·젓가락 등
- 성차별 발언: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돼, 페미년, 남자는 다 늑대 등

판단 및 조치

혐오표현은 특정집단을 차별하는 표현으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현상으로서 ‘혐오’는 어떤 대상을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혐오를 언어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혐오표현(hate speech)’라고 합니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그 대상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반복 수행되는 언어로서 사회 현실을 구성하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공간인 학교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학교 안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차별의 양상이 혐오 현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느낌마, 걸레, 게이/레즈 등의 부모비하발언과 성적 비하 표현이 만연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학생들에게 일종의 또래 놀이문화로 일상화되어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안의 혐오현상은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습하고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그들에게 차별적 환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아두기

참조 법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제3항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적 말이나 행동,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신설 2021.11.02.)

학교 안 혐오현상에 대한 교육의 과제

- 성별 이분법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출석번호 부여, 젠더리스 교복착용 등)
- 교육과정에 평등교육, 차별금지교육 통한 젠더감수성 및 인권감수성 함양 위한 시수 편성
- 혐오표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교내 시스템 마련 및 교육청 제도(학생인권옹호관 등) 홍보
- 학생들이 스스로 공론화 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동아리 운영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사례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사례(언어폭력)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욕을 해요.”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때마다 문제 정답을 틀리거나 떠드는 친구가 있으면 새끼야, 씨X놈, 병X새끼, X따구 새끼야, 찌따, 개X끼, 또X이 새끼 등의 욕설을 자주 하셔서 수업시간마다 무섭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판단 및 조치

미성년의 학생은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6조 제1항에서는 학생이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 교장, 교사 등이 이러한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인권 보장과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폭언, 비하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 피해학생을 모욕하고 자존감을 훼손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3. 10. 결정 참고 작성)

최근 학생에 대한 막말, 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법원 등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서학대로도 판단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는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생교육 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알아두기

☞ 학생 대상 언어폭력 관련 2021년 언론보도

- “거지나 흘리고 먹는다” 막말·폭력 일삼은 돌봄전담사 벌금형(연합뉴스, 2021.2.21.)
 - 간식을 먹다 흘린 B군(8세)을 친구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며 조롱
 -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 300만원 선고(청주지법, 2021.2.21. 선고)
- 10살 제자에게 “최고 나쁜 어린이”..정서 학대한 교사, 검찰 송치(MBC 뉴스, 2021.9.17.)
 - 10살 B군을 같은 반 학생들 앞에서 ‘최고 나쁜 어린이’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 관련교사의 발언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서적 학대라 판단, 경찰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
- 수업 늦었다고...“가난 대물림할래” 교사 폭언, 학생은 병원행(중앙일보, 2021.12.10.)
 - 수업에 늦은 학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냐’ 등의 발언
 - OO교육청은 학교에 관련교사 수업 배제 및 관련학생과 분리 조치 권고, 학교는 경찰에 신고

사례 3 휴식을 취할 권리 침해 사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3일 동안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우리 반 학생들이 수업 중에 많이 떠들었어요. 담임선생님께서 화가 많이 나서서 우리 반 모든 학생에게 3일 동안 쉬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판단 및 조치

반복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휴식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0조에서는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발달을 위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제31조에서 아동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쉬는 시간을 일부 줄이거나 인정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제한이 아닌 반복적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모든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휴식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원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보장된 쉬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화장실 사용 등 꼭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 아동 휴식권의 중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7호(2013년)에서 휴식과 여가는 아동의 성장에 있어 영양, 주거, 건강관리, 교육의 기초와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 아동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학습이나 참여에 대한 에너지와 동기 부여가 부족하게 되고, 육체적·정신적인 능력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습니다.

♣ [생각해보기] 코로나19 방역과 쉬는 시간의 제한

- 00시의 한 중학교는 2020년 5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등교수업 중 아침 8시40분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4시간40분 동안 1~7교시를 연달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연속으로 수업을 들으니 엉덩이가 너무 아프고 지친다고 호소하였고 교사 중 한 명은 학생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 2020.6.3. 보도 참고)
- 쉬는 시간 전체를 박탈하는 것은 휴식권 뿐 아니라 건강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 쉬는 시간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쉬는 시간 박탈이 아닌 최소화, 자율적 화장실 이용, 이동할 수 있는 최대인원 제한 등 침해를 최소화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사례 4 건강에 관한 권리 침해 사례(생리공결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

“생리통으로 공결을 신청할 때 학교에서 진단서를 갖고 오라는데 맞나요?”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에요. 저는 ‘그날’이 오면 걱정이 돼요. 생리통이 심한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남녀공학이라 남학생들이 아는 게 싫어서 결석해서 티내고 싶지 않은데, 며칠 전엔 너무 아파서 용기를 내 학교에 공결을 신청하려 했더니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비용도 든다는데 매번 이렇게 진단서를 내야 하는 게 맞나요?

판단 및 조치

학생의 생리공결 신청 시 병원 진료기록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4조 제2항에서는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교장 등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공결제는 생리통으로 인한 여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여학생 생리 시 결석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결정, 2005. 12. 26.)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출석확인을 위해 과도한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생리용품 등)를 요구하여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통증을 참으며 생활하는 학생사례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학교에서 생리공결을 신청하는 학생에게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59

-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별표 8 '2조 나목'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로 보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시(지각, 조퇴, 결과 포함)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 출석 인정 시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사례 5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침해 사례(장애학생 현장학습)

“장애학생도 현장학습을 하고 싶어요.”

A학교는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보호자가 현장 학습 보조 인력으로 동행이 어려운 장애학생은 학교 도움반에 남는다’는 내용에 동의해달라는 취지의 가정통신문을 보냈으며, A학교는 교내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학생 보호자에게 자원봉사 형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판단 및 조치

학교는 장애학생이 현장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은 교육책임자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교육 활동 참여를 제한, 배제하는 등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상 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장애학생의 현장학습 보조 인력은 교직원뿐 아니라 지역의 장애인복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격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교가 설명한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의 이유는 장애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교는 장애학생이 현장학습 등 교외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따른 보조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2020년) pp.86~87

참조 법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7조(소수학생의 권리보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례 6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휴대전화 수거)

“학교에서 아침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제출하고 있어요.”

우리학교는 학급 아침조회 시간에 일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요.

판단 및 조치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사실상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어, 통신의 자유 침해 소지가 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제4항에서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관리에 있어 학생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기본권(학습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중 사용, 소지 제한의 방법과 내용은 학생·보호자·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않도록 결정한 사례(2020. 4. 7. 결정 외)

☞ 관계 법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4항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 ①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사례 7 사생활·개성을 실현할 자유 침해 사례(교문지도)

“선생님들이 매일 아침 교문에서 용의복장 검사를 해요.”

학교에서 매일 아침 등교시간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문에서 용의복장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생활인권규정에는 규정이 없었고, 학교에서 생활교육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다고 했어요.

판단 및 조치

학교는 등교 시 일괄적·강압적 교문지도를 지양하고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이 학교생활 중 용모 및 복장에 대한 규칙을 위반할 경우 개별적으로 생활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중·고등학생들의 설문 결과, 학교에서 아침 등교 시 용모에 대해 지도를 한다는 응답이 86.1%였습니다(2020 경기도학생인권실태조사).

일괄적 교문지도는 「헌법」,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하는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검사 대상이 되고 자기검열을 수반하게 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구속하는 방식이므로 인격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아닌 학교공동체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내부계획만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전교생이 지나가는 교문이나 현관 앞에서 용모와 복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세워두거나 벌을 주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 사례 관련 교육청 문서 안내

-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학생생활인권과-7176, 2021. 5. 11.)

☞ 참조 법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 제12조
- 「헌법」 제10조, 제12조

사례 8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례(수학여행에서 일괄적 소지품 검사)

“수학여행 가서 일부학생들이 음주를 한 이유로 전체학생의 소지품을 검사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입학한 후 친구들과 첫 여행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첫날 밤 일부학생들이 음주를 하다 적발된 이유로 전체학생의 가방, 숙소 등을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저는 담배나 술을 소지하지 않아 억울했을 뿐 아니라 가방에는 속옷, 복용 약 등 들키고 싶지 않은 소지품도 있었던지라 너무 불쾌했고 고등학교 첫 여행의 들뜬 기분을 망쳤습니다.

판단 및 조치

사생활 자유를 제한하는 소지품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소지품 검사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 목적 상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해서는 아니 되고 동의 없이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음란물, 담배 및 흉기와 같이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수업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학생들이 휴대할 때에는 안전 및 교육목적 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생활 안에서 소지품 검사와 같이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전체 대상 일괄검사와 동의 없는 검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하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검사목적에 충분히 설명하고 비공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인권 친화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알아두기

☞ 교육부(2014년),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54쪽(소지품 검사 규정 예시)

-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함

☞ 경기도교육청(2020년),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소지품 검사 관련)

- 정당한 이유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을 한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019년에 비해 감소(중학교 9.3%→8% 고등학교 10%→7.8%)하였으나, 학교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

사례 9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참정권)

“우리 학교 규칙은 학생자치회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해요.”

저는 어제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된 학생회장입니다. 제가 알기로 만 16세 이상인 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학교의 규칙으로는 학생자치회 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고민됩니다.

판단 및 조치

학교는 만 16세 이상인 학생의 정당가입을 금지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정당에 가입할 권리 역시 만 16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의2(선거권 등)를 통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 18세 이상 학생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법률에 저촉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학생 참정권의 행사를 장려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함에 유의하면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을 교육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례의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학생자치회의 임원은 연령 불문하고 정당가입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만 18세 이상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법률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알아두기

참조 법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의2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정당법」 제22조 제1항

사례 10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침해 사례(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자 수소문)

“학생인권 침해 사건으로 교육청에 구제신청 하였더니, 선생님이 수소문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성적을 순서대로 게시했어요. 그래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을 하였더니, 학교에서 신청(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습니다.

판단 및 조치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청구권과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학교는 불이익한 처우를 행하면 안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6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구제를 요청 학생을 찾는 행위는 비밀보장 측면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비밀보장이란 소극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외부에 이러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조사대상이 된 학교가 민원인을 찾기 위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는 민원인(학생)을 찾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이 권리구제(민원)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 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행하면 안됩니다.



알아두기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2020년) pp.149

참조 법령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6조, 제4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장

학교 내 갈등의 화해중재 기능 강화

3-1

교육적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조성

● 학교 현장의 중재를 통한 화해의 과정 필요성 증대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심화로 학교의 교육력 약화
- 화해·관계 회복 보다 처벌 중심의 사안 처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건수가 증가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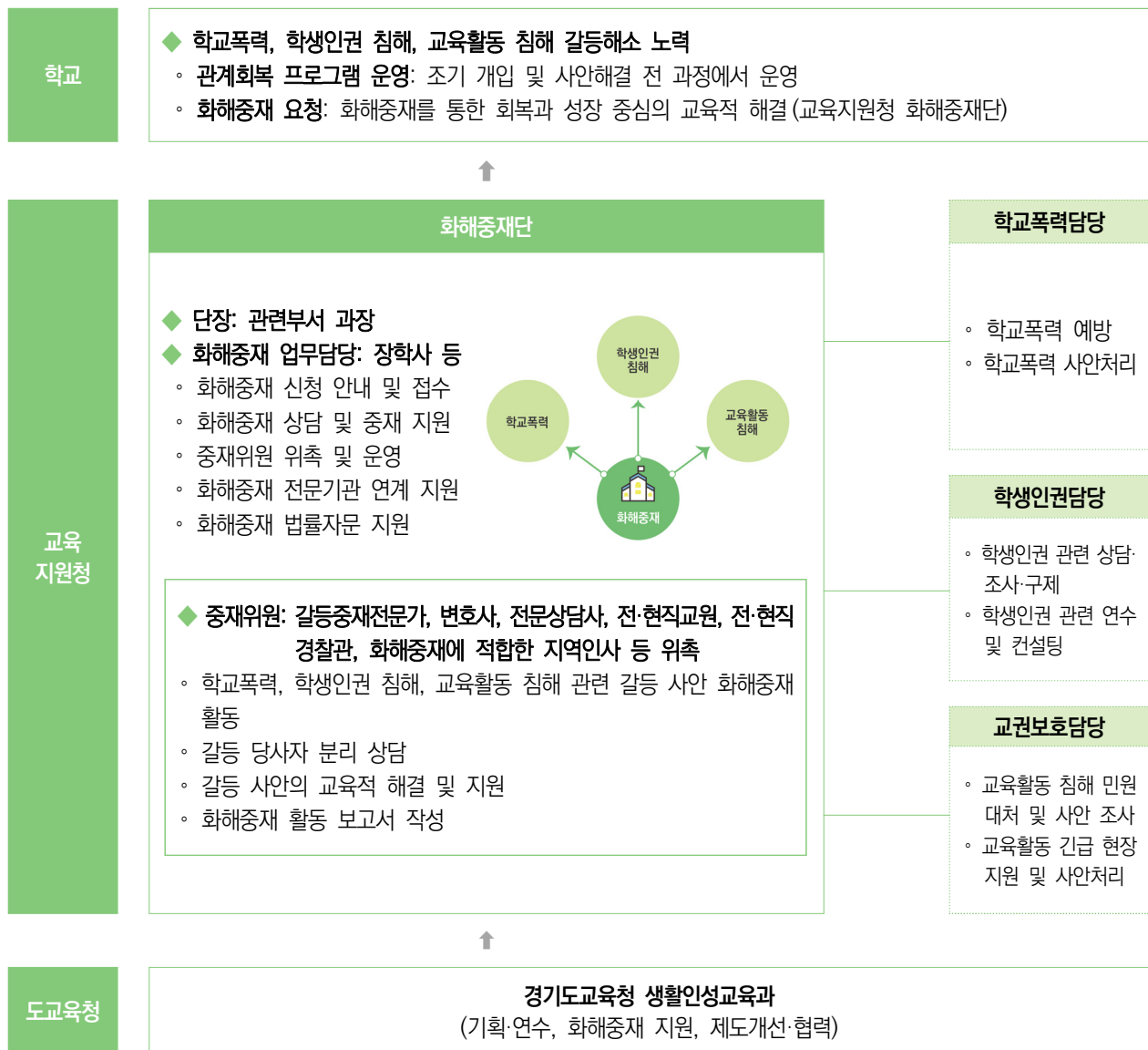
● 교육지원청의 화해 중재 기능 강화

-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합리적·전문적 해결 지원
- 갈등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효율적인 사안 처리
-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해 중재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신뢰도 제고
- 학교 내 갈등에 조기 개입하여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3-2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

- (화해중재단 운영) 25개 교육지원청 내 화해중재단 구성·운영
※ 3국 단위 6개 교육지원청(수원, 성남, 화성오산,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내 화해중재 전담인력 배치 시범 운영
-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 기능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체계적 중재 지원
- (조기 개입 및 맞춤형 지원)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하여 갈등 심화를 방지하고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중재위원 구성)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위촉하여 학교 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위한 기구 운영
- (역량 강화)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교원 대상 화해중재 연수 확대로 역량 강화 지원
- (화해중재단 업무 체계)



3-3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

■ 기능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의 전문적·체계적 지원

■ 시범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구성

- (단장) 관련부서 과장
- (실무) 장학사(1명),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1명), 주무관(1명)
(북부청사, 성남,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씩 배치(총 3명))
- (중재위원)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교원, 전·현직 경찰관,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인사 등
교육지원청의 여건에 따라 30명 내외 위촉
 -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학생인권옹호관, 장학사, 주무관 등 화해중재 실무자는 당연직 중재위원에 포함됨
 - 중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육장 명의로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으로 중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화해중재단 전담인력 업무분장)
 - 성남,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총 4명(학생인권옹호관 배치)
 - 수원, 용인, 고양,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총 3명(학생인권옹호관 미배치)
- 화해중재단 전담인력 주요업무(예시)

인 원	화해중재단 주요업무
장학사 1명	◦ 화해중재 업무 총괄 ◦ 화해중재 상담 및 조기 개입 현장 지원(필요시, 화해중재 전문기관 연계) ◦ 화해중재 역량강화 교원 연수 운영 ◦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위촉 및 운영(역량강화 연수 포함) ◦ 화해중재 추후 모니터링
변호사 1명 (일반임기제 6급)	◦ 화해중재 관련 법률 자문 ◦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법률 자문 및 법률 대응(6개 권역별 지원)
주무관 1명	◦ 화해중재 사안 접수 및 통계 ◦ 화해중재 전문기관 위탁 업무 ◦ 화해중재단 운영 지원 ◦ 화해중재 역량강화 교원 연수 지원 ◦ 화해중재 예산 등 행정 업무
학생인권옹호관 1명	◦ 학교폭력·학생인권 침해·교육활동 침해 사안 화해중재 지원 ◦ 학생인권 관련 상담·조사·구제·제도개선(권역별 지원) ◦ 학생인권 관련 유관기관 협력 ◦ 학생인권에 관한 연수 및 컨설팅 지원 ◦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연구 ◦ 북부청사, 성남,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학생인권 옹호 지원

● 학생인권옹호관 배치 및 학생인권 보호 관할 지역

권역	배치	관할 지역
1권역	성남	성남, 평택,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2권역	화성오산	수원,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군포의왕, 화성오산 , 김포, 시흥
3권역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 변호사 배치 및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 관할 지역

권역	배치	관할 지역	권역	배치	관할 지역
1권역	고양	고양, 김포, 부천, 파주	4권역	수원	수원, 군포의왕, 광명
2권역	구리남양주	구리남양주, 포천, 의정부, 가평, 연천, 동두천양주	5권역	용인	용인, 안성, 여주, 이천, 평택
3권역	성남	성남,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6권역	화성오산	화성오산, 시흥, 안산

※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는 도교육청에서 채용절차를 거쳐 4~5월 중에 시범교육지원청에 배치될 예정이며, 배치 전에는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변호사가 법률 자문

● 시범교육지원청 외 19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구성 및 운영

* 안양과천, 부천, 광명, 안산, 평택, 군포의왕, 여주, 광주하남, 양평, 이천, 안성, 김포, 시흥, 의정부, 동두천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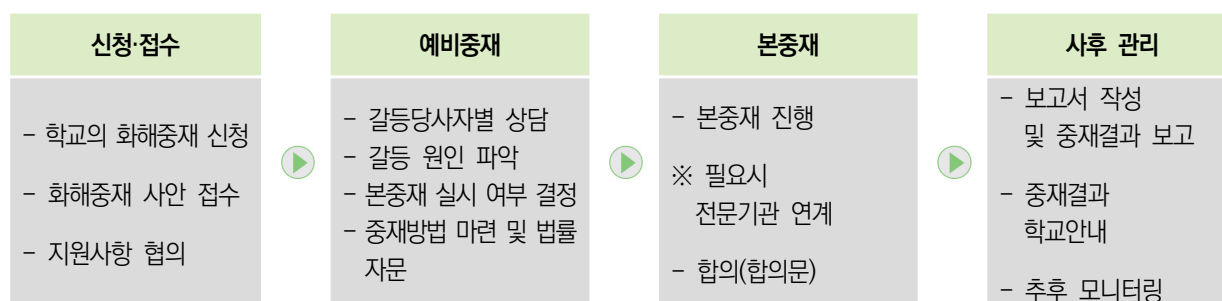
- (단장) 관련부서 과장
- (실무)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 교육지원청별 상황에 맞게 생활인권전문상담사 또는 주무관이 행정업무 지원
- (중재위원)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현직 교원, 전·현직 경찰관,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인사 등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 20명 내외 위촉
 -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학생인권옹호관, 장학사, 주무관 등 화해중재 실무자는 당연직 중재위원에 포함됨
 - 중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육장 명의로 위촉장 수여
 -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으로 중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화해중재단 담당인력 업무분장(예시)

인 원	화해중재단 주요업무
장학사 1명	◦ 화해중재 업무 총괄 ◦ 화해중재 상담 및 조기 개입 현장 지원 ◦ 화해중재 역량강화 교원 연수 운영 ◦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위촉 및 운영 ◦ 화해중재 추후 모니터링
상담사 또는 주무관 1명	◦ 화해중재 사안 접수 및 통계 ◦ 화해중재단 운영 지원 ◦ 화해중재 예산 등 행정 업무

● 주요 추진 내용

- **(화해중재)** 사안 조기 개입으로 갈등 심화 방지 및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당사자(보호자 포함)에 대한 직접 상담을 통한 중재 및 교육적 해결 지원
- **(법률 지원)** 학교 내 갈등 사안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 **(중재위원 역할)**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을 통한 학교 내 갈등 상황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전문적 밀착 지원
- **(전문기관 연계 지원)** 갈등의 심각성 및 유형에 따라 필요시 화해중재 전문기관과 연계
- **(교육적 해결 공감대 형성)** 화해중재를 통한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화해중재 역량 강화)**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교원 대상 연수 운영으로 화해중재 역량 강화 지원

● 화해중재단 화해중재 절차(예시)



※ 위 화해중재 절차는 예시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

● (신청·접수)

- 학교의 화해중재 신청: 학교가 갈등당사자의 요구 또는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신청
- 화해중재 사안 접수: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화해중재 사안 접수
- 지원사항 협의: 화해중재단이 사안 발생교의 관리자, 담당자, 교육지원청 사안처리 담당자와 지원사항 협의

● (예비중재)

- 갈등당사자별 상담: 화해중재단이 갈등당사자 분리 상담을 통해 의견 청취
- 갈등 원인 파악: 갈등 발생 원인 분석 및 정리
-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분리 상담 내용 및 갈등당사자의 참여 의사를 반영하여 본중재 실시 여부 결정
- 중재방법 마련 및 법률 자문: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따른 맞춤형(갈등 정도, 학교급별, 성별, 중재위원 전문성 등) 중재 방법 마련 및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를 통한 갈등 사안 관련 법률 자문

● (본중재)

- 본중재 진행: 갈등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이 화해중재 진행
- 합의(합의문): 갈등당사자 간 화해중재 성립 여부 확인 및 관련 문서(합의문 등) 작성

● (사후 관리)

- 보고서 작성 및 중재결과 보고: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은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중재결과 보고
- 중재결과 학교안내: 교육지원청은 중재결과를 학교에 안내
- 추후 모니터링: 화해중재단이 갈등당사자 간 갈등 지속 여부 및 학생의 심리상태 확인 등 진행사항 확인 및 지원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배치 계획(안)	2023. 1월	보고
↓		
◆ 화해중재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계획 수립 ◆ 화해중재단 운영 계획 수립 ◆ 시범교육지원청 대상 정책 안내 및 컨설팅 ◆ 화해중재 관련 업무 홍보 ◆ 화해중재 전문기관 발굴 및 용역계약	~ 2023. 2월	
↓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관련 업무 운영 계획 수립(지원청) ◆ 화해중재단 구성 및 위촉(지원청) ◆ 교육지원청 화해중재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 및 워크숍	2023. 3월	
↓		
◆ 화해중재 모델개발 정책 연구 착수 ◆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강화 연수(지원청) ◆ 화해중재 업무 및 화해중재 관련 학생, 학부모, 교원 인식 개선 홍보 ◆ 화해중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화해중재 역량강화 교원 연수(지원청)	2023. 4월	
↓		
◆ 화해중재 지원 변호사 배치 예정 ◆ 추경을 통한 중재위원 수당 예산 교부 예정	2023. 5월	
↓		
◆ 화해중재 모델 개발 ◆ 화해중재 역량강화 교원 연수	~ 2023. 9월	
↓		
◆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성과 평가회 ◆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역량강화 연수	~ 2023. 10월	
↓		
◆ 화해중재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2023. 12월	
↓		
◆ 화해중재 운영 계획 수립	2024. 1월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학교폭력대책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1장 학교폭력 중점 추진내용

2장 학교폭력 예방교육

- 2-1.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3장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업무 처리 지침

- 3-1. 학교폭력 실태조사
- 3-2. 후속업무 처리 지침

4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4-1.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5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 5-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통보
- 5-2. 긴급조치
- 5-3. 학교폭력 사안조사
- 5-4.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5-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5-6.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 5-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6장 관계회복과 분쟁조정

- 6-1. 관계회복
- 6-2. 분쟁조정

7장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 7-1.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요령
- 7-2.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요령

8장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 8-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 8-2.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연 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 8-3.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 8-4.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

정책 목표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적 해결로 서로 신뢰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갈등과 다툼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평화로운 학교
-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보호와 대응으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생

1장

학교폭력 중점 추진내용

월	추진내용	비고
연중	□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별별프로그램 활용: 동영상,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관리 □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운영(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 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긴급조치, 안전 확보 및 지원 등)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 • 입학 학년도별 관리(비공개 문서) - 조치사항 관리대장 졸업 후 2년 보존 폐기 - 조치사항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졸업과 동시 폐기 □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해학생의 부가되는 특별교육 및 가해학생 학부모(보호자) 특별교육	
1	□ 졸업식 전·후 생활교육 실시	
2	□ 학교폭력예방교육 계획수립(교육과정 반영) • 대상: 학생, 보호자, 교직원 각 연 2회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수업 실시 (11차시 이상 권장) □ 졸업생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 사항 삭제 • 1,2,3,7호 졸업과 동시 • 4,5,6,8호 졸업 2년 후 삭제(단,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동시 삭제 가능)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서면 통보 (내부결재 협조)
3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 학교폭력예방교육 (별별프로그램 활용: 동영상,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학기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주간	구성 시 학부모 1/3 이상
4	□ 학교폭력전담기구 연수 □ 학교정보공시 수시 및 1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학교폭력실태조사 1차 • 대상: 초4~고3 재학생 전체 •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승진가산점 부여 계획수립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5	□ 학교폭력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 •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수립	
6	□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 운영(6월 3주)	
9	□ 학교폭력예방교육 (별별프로그램 활용: 동영상,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학교폭력실태조사 2차 • 대상: 초4~고2 재학생 전체 • 방법: 표집교-온라인 설문조사(미표집교-자체설문조사) □ 학교정보공시 3차입력 •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10	□ 학교폭력예방유공 표창 추천(학교 및 교원) □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11	□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승진가산점 부여 명단제출	

2장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조 항

-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법률 제15조제1항)
-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법률 제15조제2항)

구분	횟수	방 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간 2시간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 제2호)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 제4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 제5호)
학부모 (보호자)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시행령 제17조 제6호)

● 예방교육 운영방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
-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 가능
-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별별 프로그램** 등을 학기별 2회 이상 운영
* 어울림 프로그램: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 별 별 프로그램: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개발한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사례별(학기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다룬 프로그램

•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탐재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 학교마다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음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https://doran.edunet.net>)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별별’(초·중등용) 자료탐재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소속-생활인성교육과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시수 인정 관련

-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부와 반드시 협의하여 창체시간 및 정규교과시간에 예방교육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협조 필요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타 수업 내용*과 연계 운영 시 해당 영역의 수업시수를 모두 인정 가능
* 예 : 인성교육, 안전교육, 다문화 교육, 장애이해교육,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정보윤리교육,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등
- 학기 초 예방교육, 사이버폭력예방, 언어문화개선교육 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별별’ 프로그램 활용

2-1

교육과정 연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 학교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

- 모든 학급에서 교과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연간 11차시 이상 편성·운영 권장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폭력 예방' 영역에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영역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 '주제선택활동' 시간에 '교과연계형' 및 '주제선택형' 어울림 프로그램 등 연계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 정보 윤리 시간에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 학교 언어순화운동 교내 행사 실시

- (근거)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경기도조례 제6850호, 2021.1.4.)
- (대상)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 (운영) 학교 언어순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교내 행사 실시(연 1회 이상)
(예시) · 학생이 주도가 되는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4주-10월2주 중) 운영 실시
· 어울림·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과 다양한 어깨동무활동을 병행하여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별별' 지도안을 활용하여 언어순화운동 실시
· 학생자치회와 연계하여 '언어순화' 관련 캠페인 실시

- 학생 참여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 특별교육주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수업·활동·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하는 단위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특별교육주간: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간(3월, 9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9월 4주~10월 2주)

- **어울림 프로그램:** '공감·의사소통·갈등해결·자기존중감·감정조절·학교폭력 인식과 대처' 6개 핵심역량을 키워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구분	학생용 프로그램		자유학기(학년) 프로그램	학부모용 프로그램
내용	어울림 프로그램	기본	주제선택 프로그램 교과연계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학부모 원격 콘텐츠
		심층		
		교과연계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기본		
		심층		
		교과연계		

- 어울림 프로그램 제공 사이트 및 홈페이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https://www.stopbullying.re.kr>)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https://doran.edunet.net>)
- 학교별 담당자가 사이트 접속 후, 관련 교육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교육과정부와 연계 운영)

- **어깨동무 활동:**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 활동
학생 포래상담 동아리, 집단따돌림·언어폭력·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별 특색활동 등으로 운영
- **별별프로그램:**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부모), 사례별(학기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로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다룬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도움말

• 별별프로그램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용, 학부모용으로 제작. 경기도교육청 TV에 탑재
- 교직원용: 학교 현장의 교직원을 위한 자료이며, 학교폭력 사안을 접했을 때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학부모용: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 학교폭력 유형과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피·가해학생 조치 안내, 가정에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법과 대처법 등에 대하여 제시

• 별별프로그램 사례별 프로젝트 수업 지도안

- 학기 초 학교폭력예방, 언어문화개선, 사이버폭력예방을 주제로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학생이 스스로 느끼고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 별별프로그램 다운로드(지도안, 활동지, PPT)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제2부교육감소속-생활인성교육과 참조

3장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후속업무 처리 지침

3-1

학교폭력 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수조사 개요

- 관련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홈페이지: <http://survey.eduro.go.kr>

구 분	1차	2차	비고
시 기	매년 4월경	매년 9월경	
대 상	초등학교4~6학년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전체(표집교)	설문조사 참여 안내 철저
방 법	전수조사-온라인 설문조사	· 표집교-온라인 설문조사 · 미표집교-학교자체 설문조사	비밀 보호 유의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학생의 솔직한 응답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개별 참여 우선
- 가정에서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조사기간 중 학교 시설 이용 가능

학교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개인위생 및 방역관리(감염병예방 관리)철저
- 학생의 개별 참여가 보장되도록 독립 공간 마련
- 조사 시작 전 응답 비밀 보장을 위한 조사화면 투명도 조절 기능 안내
- 학생 간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간 일치
- 서술형 문항 응답을 고려한 충분한 조사 참여 시간 제공

- 온라인 실태조사 참여 방법



도움말

- 학교폭력 실태조사 홈페이지 접속 후 조사 참여
 - 홈페이지(<https://survey.eduro.go.kr>) 접속
 -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인증번호 확인 후 조사 참여(학교명, 학년·성명·인증번호 입력으로 본인 확인)
-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시청
 -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시 학교급별(초등용, 중·고등용) 동영상 자동 재생
 - ※ 7개 다국어 자막(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제공
-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활용 가능
 - 나이스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또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센터(www.stopbullying.re.kr)에서 재생하여 활용 가능
-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를 통한 실태조사 참여 가능

●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적현행화 작업

1. 학적입력

학교담당자 - 학적입력(교육청 공문발송 후 기일 내)

2. 담당교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권한 받기

✓나이스 시스템관리-권한관리-사용자권한관리-개인별권한등록에서
 {사용자그룹등록} 시스템: 학교행정, 서브시스템: 장학, 등록조직: 공통
 업무담당자는 학교폭력실태조사(학교)
 담임선생님은 학교폭력실태조사(담임)를 부여받음
 {서브시스템별자료권한} 시스템: 학교행정, 서브시스템: 장학에 대한
 {조직} 권한 부여(등록→조회→학교명 체크→저장)

3. 학생 인증번호 발급 받기

[나이스-장학-학교폭력실태조사(학교)-자료관리-인증번호관리] 일괄발급 및 선택발급
 [나이스-장학-학교폭력실태조사(담임)-자료관리-인증번호관리] 해당반 학생 중 선택발급

4. 설문조사 대상학생 생성 기준일 이후 학적변동자 실시 관련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학교)-자료관리-설문대상자현행화관리] 메뉴에서 학적현행화 작업을 실시하면 설문조사 대상학생 생성 기준일 이후 학적 변경된 학생을 조회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설문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학적현행화 작업을 실시하면
 - 유예,퇴학,면제,휴학,제적,자퇴 학생의 경우 설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학적 현행화함
 - 전입·전출생은 학적현행화 작업 실시일 기준의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대상으로 현행화하며, 현재 학교에서 인증번호 발급 후 실시
 (이전 학교에서 설문에 참여하였다면 현재학교에서 참여 못함)

5. 학적현행화 작업관련(학적담당자 협조)

전출·입교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으로 전출학교 또는 전입학교 중 어느 한쪽에서 실행할 경우 양쪽 모두 현행화 됩니다.

6. 전입학생인데 학적현행화처리 관련(학적담당자 협조)

전출입의 경우 두 학교의 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만 학적현행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전출입 학적반영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7. 반정보 현행화 관련

반, 번호, 성명 변동이 있는 경우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학교 or 담임)-자료관리-인증번호관리] 메뉴의 반정보 현행화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3-2

후속업무 처리 지침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활용

-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활용
- 유형별·학기별·학년별 변화 추이, 학교폭력 발생 장소·시간 및 주요 유형 등 파악

●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용

-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목격 시 행동, 학교폭력 신고 또는 도움 요청 방법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따라 미흡한 부분 적극 지도
- 학교별 발생 빈도가 높은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담임시간 등에 집중 예방교육

● 탐지된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 심층조사 및 후속조치

- 필터링 결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을 파악하여 조치
- 실태조사 결과로 새로 파악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여 관리

●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보고 예시(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							
00교육지원청	00중		담당자 : 교사 *** (☎ 000-0000)				
20**년 1차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설문 참여율, 응답률						
	대상 학생 참여율(%)			학년별 참여율(%)			
	대상학생수	참여학생수	참여율	1	2	3	
20**년 1차 실태조사 결과 요약	구분	피해응답		가해응답		목격응답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0**년 1차	1(0.4%)	276(99.6%)	0(0%)	277(100%)	2(0.7%)	275(99.3%)
	20**년 1차 실태조사 결과 요약	○ 학교폭력의 유형, 장소 등 특징					
○ 그 외 설문 응답의 특이사항(예시)							
○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요약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사례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자체 실태조사 실시 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파악 및 조치(20**.*월.**일) ○ 사안조사·처리, 계획수립과 관련된 컨설팅 요청(필요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에서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대책 요지 기술 ◆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예방교육 연수(20**.*월.**.) ◆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실시(20**.*월.**.) ◆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20**.*월.** ~ **)						

4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사안처리 흐름도



4-1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전담기구 구성권자: 학교의 장
- 전담기구 구성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구성
 -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 없음 [매년 구성(권장)]
 - ※ 결원으로 새로 구성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 구성원의 잔여 기간으로 하는 것을 권장함
 - ※ 2월말 구성하여 3월 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임명·위촉방법

교원 구성원	• 학교장 임명
학부모 구성원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를 추천하였다는 내용의 관련자료(회의록 등) 보관 필수

- 학부모 구성원 수: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하여야 함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 (교원+학부모)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이상	2명이상	3명이상	3명이상	3명이상	4명이상	4명이상



알아두기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방법, 업무분장, 구성원의 임기,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학교장이 정함
 - <0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계획> 내부결재 권장 **서식Ⅲ-20 / 225쪽**
 - ‘구성원’, ‘구성원별 역할(업무분장)’, ‘심의방법’, ‘임기’, ‘학생조사 권한’, ‘학부모 위촉방법 및 임기’ 등 포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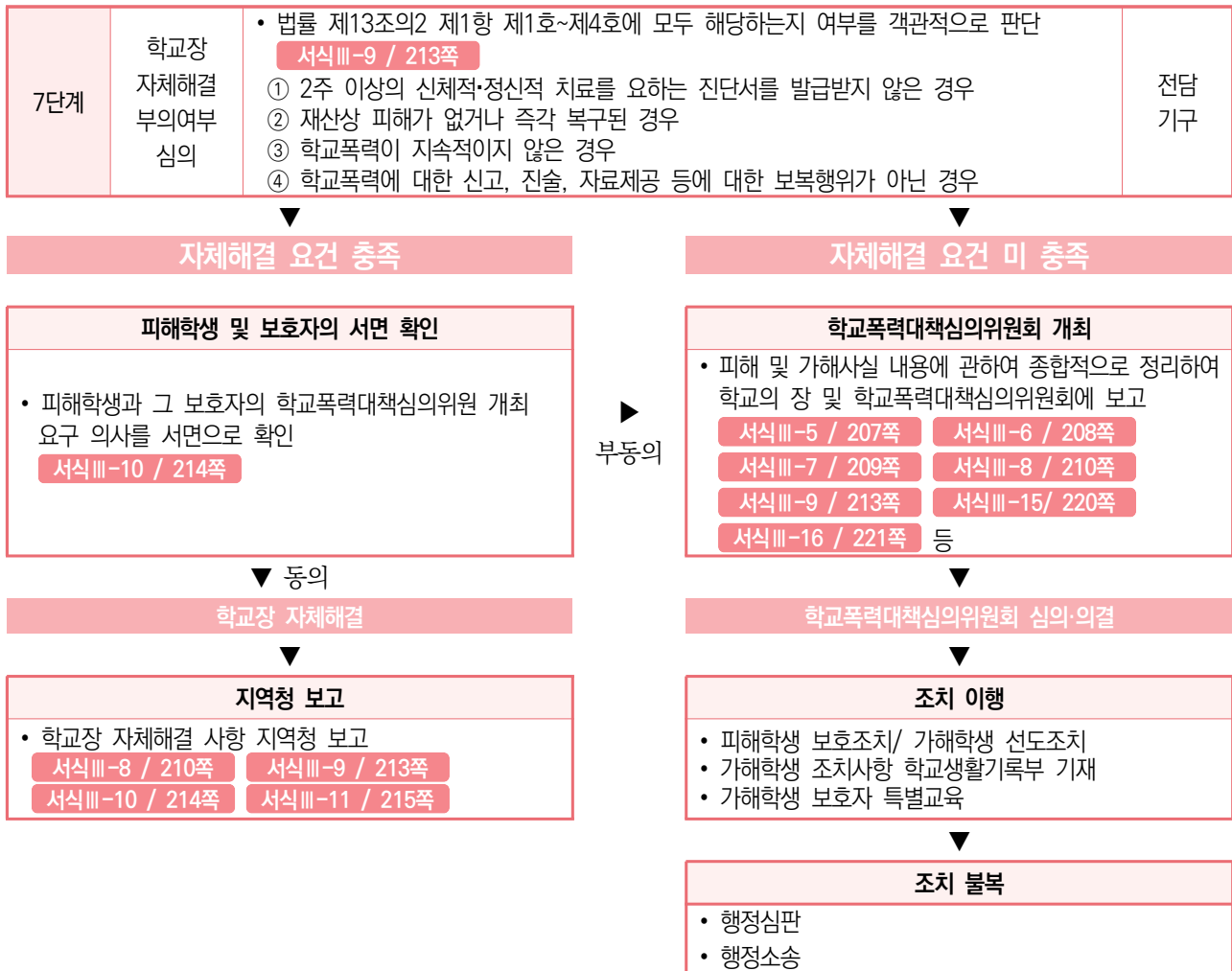
연번	역할	내용
1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함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함 -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 통보사실 등을 기록함
2	교육지원청 보고	-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을 보고함 (해당 시간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일 경우(성폭력 사안 등) 유선 보고 병행 - 성폭력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및 담당 장학사에게 보고
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피해학생에게 반대의사 확인 24시간 내에 분리방법 결정(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음
4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 -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교사는 적극 협조 * 인지 및 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5	사안조사 결과보고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 보고함
6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정함. 단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전담기구 심의 연기 가능(공휴일 포함) - 연기 시 내부결재 필요 - 내부 결재 내용에 <뚜렷한 이유> 명시 (예)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의사를 확인
7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련 대장 관리	-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 관리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관리
8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심의 -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2023.3.1.이전에 신고된 사안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8호는 졸업 전 삭제 심의가 가능함.
9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함
10	학교폭력 실태조사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학교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

5장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단계	사안처리	처리내용	비고
1단계	학교폭력 사안 발생인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누구나
2단계	학교폭력 신고접수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접수대장에 기록 서식Ⅲ-1 / 202쪽	전담 기구
3단계	사안알림	- 접수사안 학교장 보고, 담임교사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서식Ⅲ-2 / 203쪽 ※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 - 성범죄의 경우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 신고 - 관련학생 학부모에 알림	전담 기구
4단계	공문보고	-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48시간 이내) 서식Ⅲ-3 / 204쪽 - 또는 서식Ⅲ-4 / 206쪽	전담 기구
5단계	즉시조치 (필요시 별도의 긴급조치 실시)	<즉시조치> - 필요 시 피해 및 가해학생 즉시 격리. 가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 관련학생 안전조치 * 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원 진료 등 *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인 경우 도교육청에서 안내한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통해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필요시 긴급조치> -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할 경우,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 시행(1,2,6호 조치) -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할 경우, 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1,2,3,5,6,5+6호) ※ 학교장 긴급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서식Ⅲ-5 / 207쪽	학교장/ 담임/ 전담 기구
6단계	사안조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서식Ⅲ-6 / 208쪽, 서식Ⅲ-7 / 209쪽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조사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 - 성폭력 사안의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유지에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진술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원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서식Ⅲ-8 / 210쪽	담임/ 전담 기구



참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건(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처리
 - 학교장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p.214 추가서식>,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참고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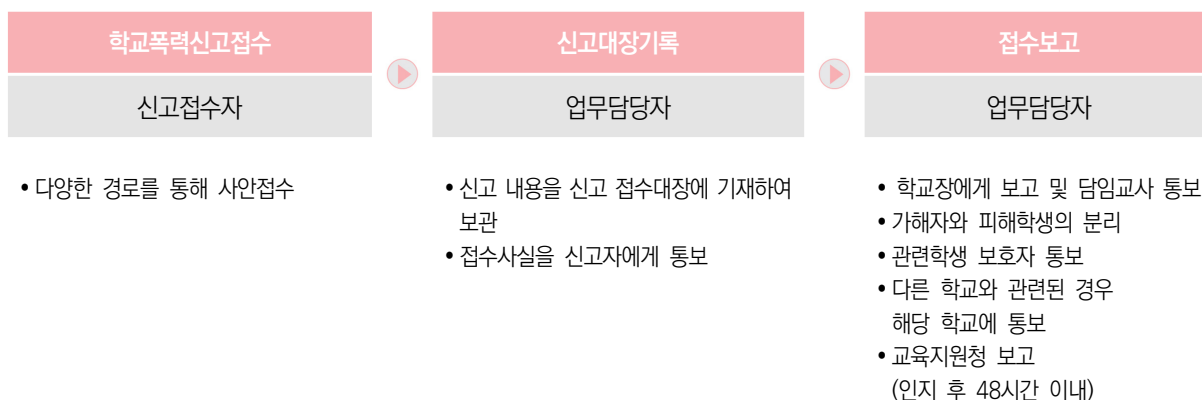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서식Ⅲ-14 / 219쪽**

-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 사안 처리과정에서 지역교육청 현장지원단 및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5-1

학교폭력 신고 접수 및 통보

● 신고 및 접수



알아두기

▶ 접수 내용이 아동학대인 경우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한 아동의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신고내용 통보

- 관련학생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신고내용을 즉시 통보
- 보호자 통보(발생 사실 통보)
 - 내교 또는 유선으로 신고접수한 사항과 향후 진행 절차 안내
 - (필요시) 관련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안내(요구 및 의견 청취)
 - 통보 시 피·가해로 표현하지 않고 관련학생으로 표현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학교 책임교사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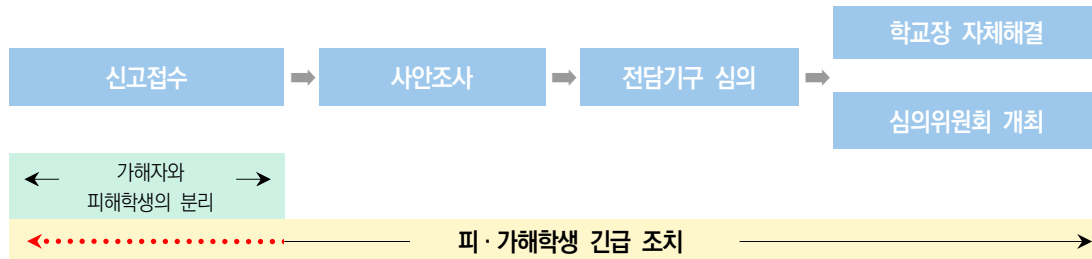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의미: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신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분리 보호해야 함.
 -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란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된 날을 의미함
 -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에게 제도의 취지(피해학생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등 안내, 기간(최대3일), 출결(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종료 사유,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 안내



알아두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와 '긴급조치'흐름



※ 점선부분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와 파·가해학생 '긴급 조치'가 실시될 수 있음을 의미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응급조치(행위)로서 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출석정지 등)와는 그 성격이 다름

- 기간: 최대 3일(인지 한 당일 포함) 범위 내에서 분리, 다만 인지 시점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토요일·공휴일 포함)에는 교육활동 시작일로부터 3일을 기산함
 - 예1) 화요일 수업시간에 인지(목요일이 공휴일): 화, 수, 목
 - 예2) 금요일 교육활동 후 인지: 월, 화, 수
 - 예3) 토요일에 인지: 월, 화, 수
- 절차
 - ① 학교폭력사건의 인지 → ② 신고접수대장 기재 → ③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④ 분리방법 결정(24시간 이내 처리: 분리대상, 기간, 공간 등을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 ⑤ (시행령 제17조의2 각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해학생 즉시 분리(최대 3일) → ⑥ 필요 시 학교장 긴급조치 검토
- 방법: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동 기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의 방안을 마련함. 다만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 가정 또는 학교외의 장소(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 가능
 -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하는 것이 원칙임
- 출결처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사유
 - ①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작성)
 - ②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③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 최초 피해학생이 분리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분리 가능 기간인 3일 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분리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분리 반대의사 철회), 학교장에는 분리 의무가 발생
 - 예) 월요일에 인지하여, 즉시 분리하지 않았으나 수요일에 분리의사를 표명하면 수요일 당일만 분리 가능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종료 사유
 - 피해학생에게 제16조제1항 또는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즉시분리 불응하는 경우: 분리 보호제도의 취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행을 독려함. 다만 충분한 독려에도 불응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알아두기

① 학년·학급이 다른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유의사항: 학급, 학년이 다를 때에 분리 시행 대상 예외인 것이 아님.

- 관련학생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적용 대상이 아님(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불필요) 다만, 학교의 소속이 다르지만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등으로 동일한 수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알아두기

① ‘교육활동’정의와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5-2

긴급조치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다만,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조치결정 유보 등)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연(1호)
 - 일시 보호(2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 ※ 제6호 예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분리가 가능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함 (단, 추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님)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긴급조치 결정권자: 학교의 장
- 긴급조치 사유: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 ※ 다만,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전(조치결정 유보 등)이라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 부과가 가능한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

- 긴급조치 범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6호)를 할 수 있는 사안(시행령 제21조)

- ①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②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③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①, ②, ③에 해당되지 않아도 ④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행령 제21조제2항)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음
 - ※ 긴급조치 시행 후 심의위원회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석 처리

심의위 개최 전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
학교장 자체 해결인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가능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은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한(내부 결재 시행)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



알아두기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유의사항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함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주어야 함
- 출석정지 기간 중 위(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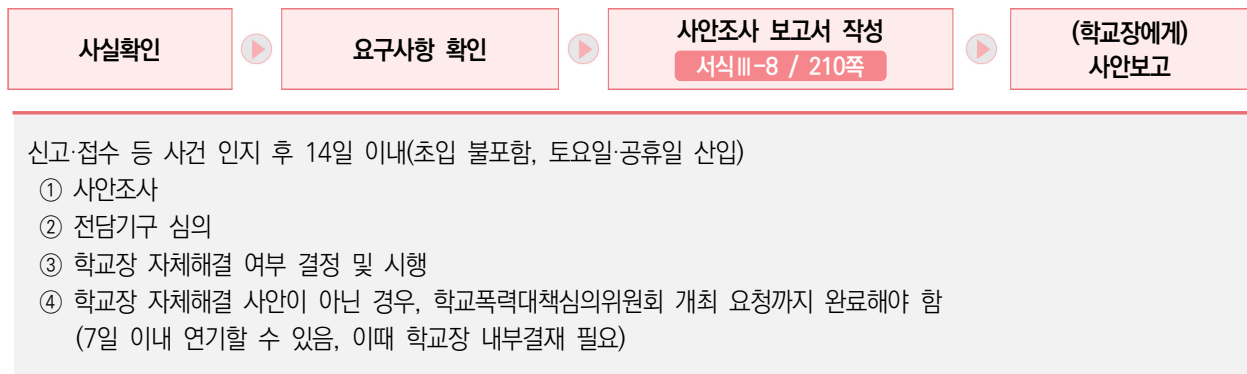
5-3

학교폭력 사안조사

●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 조사 책임자: 학교장
- 조사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학교폭력 사안조사 흐름



● 사실확인

- (확인서) 피해·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설문조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정황파악) 피해·가해학생의 현재 상태 및 대응능력, 힘의 불균형 등 파악
- (중점파악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요소
•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구속), 성폭력 여부 •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손괴, 협박여부 • 정서적 폭력: 피해의 지속성, 협박, 강요, 성희롱 여부 •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파악 • 피해,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인지 여부 •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화해)의 정도, 선도가능성 • 집단폭력, 흉기사용, 폭력서클, 행위의 주도성 등

●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설문조사) 등을 확인

●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번호: 학교의 사안번호
- 사안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비고란에 피해·가해 관련, 장애학생 여부 등 기재

- 사안개요 및 경위
 - 신고접수 후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 신고접수, 조사, 전담기구 심의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치 사항 기재
 - ※ 양측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심의 안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 접수되어 전담기구 조사와 심의를 마친 사안이 심의 안전이 됨
- 쟁점사안
 - '주요쟁점사안'란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상반된 주장 등 중요하게 심의해야 하는 내용을 기재
 - '주장내용 및 근거자료'란에는 관련학생 별로 주장내용과 입증할 자료(ex. O. O.자 B병원의 상해진단서, O. O.자 C목격학생의 확인서 등)를 기재
- 판단요소 관련 확인사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사항	확인 내용(관련 자료 등)
1. 심각성 판단 요소	성폭력 여부, 진단서 제출여부, 집단폭력 여부 등
2. 지속성 판단 요소	전담기구 심의결과, 학교폭력 지속된 기간(횟수)
3. 고의성 판단 요소	피·가해학생 확인서 참고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가해학생 면담조사 등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고소, 고발 및 합의서 여부, 학부모 갈등 상황 등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판단 요소	학교폭력 재발 여부, 사안접수 후 태도변화 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특수교사의 의견 청취

※ 학교에서 생각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관련 사안 여부, 피해학생이 다문화·탈북학생인지 여부
 - 치료비 분쟁,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한 요구사항
 -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 언론보도가 되었는지 여부
 -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 시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 (ex. 시험 등 학사일정, 학급수 등)
- 사안보고
 -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방법

- 관련학생(피해, 가해, 목격)상담
- 면담조사
 - 되도록 피해, 가해, 목격 학생 면담 조사를 모두 실시
 - 목격 학생 면담 조사가 많을수록 좋음(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의 방안)
 - 면담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 등 강요가 있으면 안됨(자유롭게 기술)
 -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피해, 가해, 목격 학생 면담조사 실시
 -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면담일지 기록(교무수첩 등 활용)
- 담임교사를 통한 사안조사 방법
 - 기본적인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책임교사가 하되 학교장은 학생 및 학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학년부장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음(학년부장, 담임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사안 내용과 관련하여 담임교사가 관여되었거나 학부모와의 감정이 부정적일 경우는 책임교사가 직접 조사
 - 담임교사에게 사안조사 역할을 줄 경우는 반드시 사안조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조사하도록 함

●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면담시 유의사항
 - 피해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면담을 할 때 우선 보호 요청 여부 확인
 - 교육적 선도를 위하여 사안을 처리하고 학생들을 지도할 것을 알림
 - ‘피해학생’·‘가해학생’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관련학생’으로만 표현하여 대화함
 - 관련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음
- 보호자가 면담을 응하지 않을 경우(개인 사정 또는 불응 등)
 - 가정으로 보호자 확인서를 보내어 요구사항을 확인

▣ 경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함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알아두기

▶ 면담조사시 유의사항

- 면담조사시 녹취는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 면담일지와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나 학교나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면담일지 기록하는 것이 필요

5-4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전담기구 개최

- 학부모 구성원에게 유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최 희망일을 확인한 후 개최(내부결재 공문 작성)
- 심의방법: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나 전담기구 운영계획에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권장

●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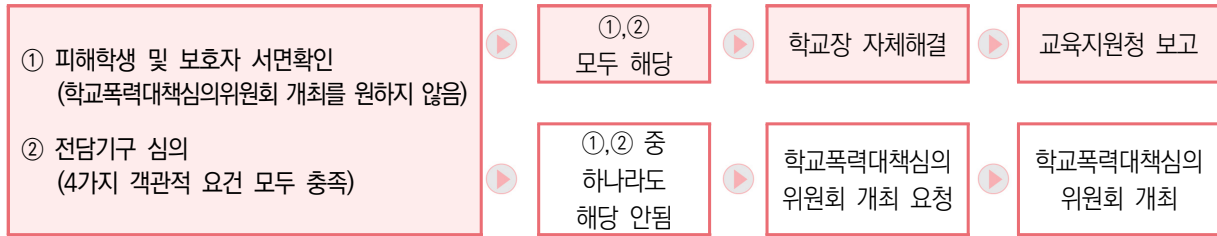
- 학교장이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p.214 추가서식>,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후 종결 처리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

- ①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②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③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인 경우 처리 흐름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도움말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
-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서면 **서식Ⅲ-12 / 216쪽**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학교장은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서식Ⅲ-15 / 220쪽**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서식Ⅲ-14 / 219쪽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단계	절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1	전담기구 사안조사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2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단, 피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판단한다.
3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음
4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보고	교육지원청에 보고(k-에듀파인) 서식Ⅲ-8 / 210쪽 서식Ⅲ-9 / 213쪽 서식Ⅲ-10 / 214쪽 서식Ⅲ-11 / 215쪽
6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서면, 유선, 문자 등을 통해 결과 통보

※ (유의사항)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교가 다를 경우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라 전담기구에서 심의 - 피해학생 소속교는 가해학생 소속교에 심의결과보고서 송부(공문) - 가해학생 소속교는 정확한 사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
학교장 자체해결시	- 피해학생 소속교에서 가해학생 소속교로 심의결과보고서 및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송부 - 각 소속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장자체해결 보고
학교장자체해결 처리 불가 시	- 피해학생 소속교에서 가해학생 소속교로 심의결과보고서를 송부 - 각 소속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였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사안 조사 시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동하는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방법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서식Ⅲ-15 / 220쪽**
 -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 K-에듀파인(업무관리시스템)으로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

첨부서류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서식Ⅲ-9 / 213쪽**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서식Ⅲ-8 / 210쪽**
- 학생 확인서 **서식Ⅲ-6 / 208쪽**
- 보호자 확인서 **서식Ⅲ-7 / 209쪽**
-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서식Ⅲ-5 / 207쪽**
-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서식Ⅲ-16 / 221쪽**
-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지 이상)
 -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822(2022.8.3.) 참조, 학생선수가 아닐 경우 필요하지 않음
- 기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알아두기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서식Ⅲ-13 / 217쪽**)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음

5-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와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6조제3항)

- 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내외 심리 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함
 - ※ 경기도교육감 지정 심리상담(치료) 및 조언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 생활인성교육과)에서 확인 가능
- 제2호 : 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 ※ 경기도교육감 지정 일시보호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 생활인성교육과)에서 확인 가능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음

- 제4호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5호(삭제) : 기존 전학권고 조치는 삭제됨
 -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제73조제6항, 제89조제5항) 경기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름
 -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학요청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배정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때 배정된 학교장은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음



도움말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및 상환청구권>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 전공제회 또는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범위(시행령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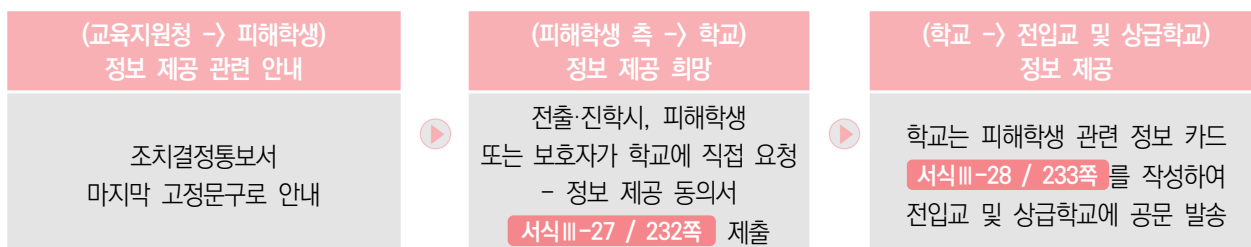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하여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피해학생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지원

- 출석일수 포함
 -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출석 처리(「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 불이익 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해야 함.



● 장애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보호지원

- 장애학생의 보호
 -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구성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범위 ▣

- 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지체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도움말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구성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함

●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 필요
- 학생의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 참여 가능
-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 담당자 등) 참여 가능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6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 ①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제6항)



알아두기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조치시 유의사항

- 가해학생 조치 이행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8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원칙적으로 학적변동을 제한함. 단, 학교의 장이 관련학생 간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가 미이행 되었더라도 내부결재를 거쳐 학적변동을 수반하는 전학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완료 기간 명시)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조치결정을 하여야 함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 접촉의 범위: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하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음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완료 기간 명시, 시간단위 조치)
 -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예시: 학교 내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특별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
 -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제4호: 사회봉사 (시간단위 조치)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봉사
(예시1: 지역 행정기관에서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예시2: 공공기관에서의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 사회봉사를 이수하는 기간은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사회봉사를 이수하는 시간은 봉사활동 실적(시간)으로 불인정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시간단위 조치)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하며, 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함
 - 경기도교육감 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 학생생활인권과)에서 확인 가능

- 제6호 : 출석정지 (일 단위 조치)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포함하지 않음(미인정결석)
 -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제7호 : 학급교체 (해당학교 학급수 확인 필요_ 1학급인 소규모의 경우 7호 조치 불가)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 제8호 :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도움말

①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함(시행령 제20조제4항)

- 제9호 : 퇴학처분
 -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처분하는 조치.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함



도움말

① 퇴학 처분 시 학교의 장의 조치사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함(시행령 제23조제2항)

● 교육장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법률 제17조제11항)

▶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조치 후	⇒ 14일 이내	교육장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학교장 → 가해학생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조치 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3개월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보고) 학교장 → 교육장(심의위원회)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보고	⇒ 21일 이내	(안내) 교육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1개월 이내 이행 서면 안내

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7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퇴학처분

● 가해학생 부가된 특별교육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으로 구분
 - [제5호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기관에서 운영
 - [제2호~제4호, 제6호~제8호 조치로 인해 부가된 특별교육] 단위학교에서 이수

-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함(법률 제17조제3항)
-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3항)을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9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알아두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따른 부가되는 특별교육 이수 시간

교육처분 대상	부가되는 특별교육	
	대상	이수시간
보복행위금지(2호), 학교봉사(3호)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학부모(보호자)	4시간 이내
사회봉사(4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학부모(보호자)	5시간 이상
(조치로써) 특별교육(5호)	학생	없음
	학부모	5시간 이상

※ 부가되는 특별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며,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이수도 가능 (학생동반가능)

※ 학부모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도움말

학부모(보호자) 특별교육 조치 절차 및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조치시일 및 이수 기간

-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후	⇒ 14일 이내	교육장 → 보호자	학교장 → 보호자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이수하도록 시간 및 장소 안내

조치 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보호자 조치불응/미이수	⇒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학교장 → 교육감	⇒ 14일 이내	교육감 → 보호자
		해당 보호자 명단 통보		1개월 이내 참여 서면 안내

과태료 부과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교육감에게 제출
 - ▶ 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함
 -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5-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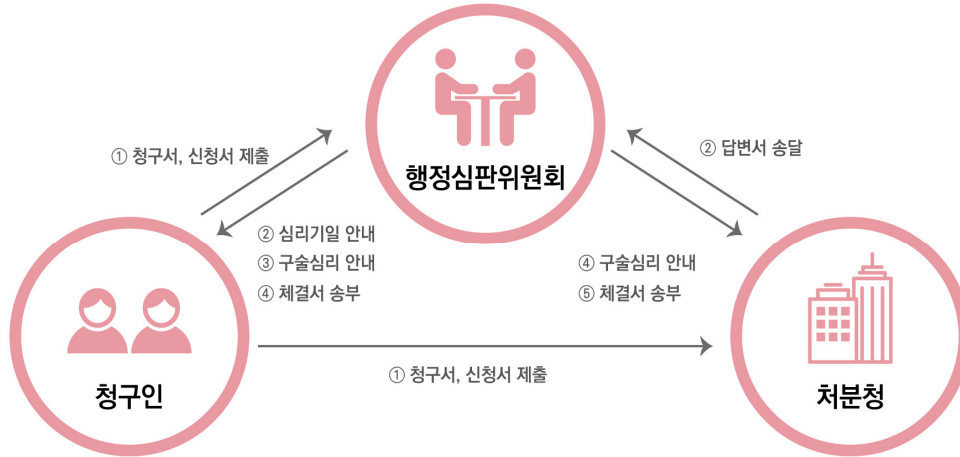
- 행정심판의 대상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교육지원청은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학교의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때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음(행정심판법 제27조)
 -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
 - ※ 교육장 명의로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로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함
- 행정심판 기관
 -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031-249-0676~0679)
 - www.simpan.go.kr(온라인행정심판)로 청구 가능
-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함

● 행정심판의 절차



도움말

-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



●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함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됨

● 집행정지 결정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함(행정소송법 제23조)

6장

관계회복과 분쟁조정

6-1

관계회복

● 관계회복의 개념

- 관계회복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함

● 관계회복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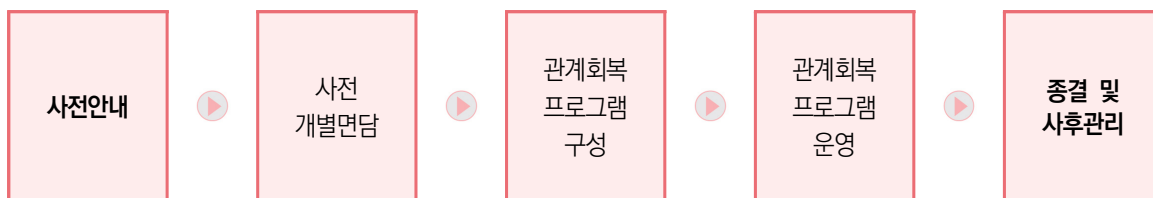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개입하여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화해)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회복을 조력
- ※ 학교폭력 관계회복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함

● 운영대상 및 방법

- 시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운영 가능
- 요건 :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필수
- 주체 : 학교폭력 전담기구
- 내용
 -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을 통해 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활용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 외부기관(강사) 섭외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초등편/중등편)
경기도 교육청 - 통합자료실 - 북부청사 - 생활인성교육과

● 운영모형(예시)



- 참여 : 파·가해학생 및 보호자, 전담기구 및 소속교원, 외부전문가 등

〈참고1〉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시 역할 예시 안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

● 운영 시 유의 사항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 가능
- 학교 및 교사는 가급적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한 명이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 가능
- 피해학생에 대하여 모든 단계 시작 시 현재 마음과 생각, 2차 피해(재발 및 보복),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함으로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 처리를 갈음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대신 진행하여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도움말

▶ 경기도교육청 '경기형관계회복프로그램 워크북' 운영

-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역량 강화를 통해 학교생활 중 사소한 다툼과 갈등이 관계회복 중심의 소통과 화해로 해결되도록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교육적 해결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 제작 보급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통합자료실 - 제2부교육감 소속 - 생활인성교육과

6-2

분쟁조정



관련 조항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9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구성원이, 교육감이 조정할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자는 분쟁조정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분쟁조정 개념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함

■ 분쟁조정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법률 제18조제4항)
 -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 학교 각 3주체의 동의를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음

■ 분쟁조정 대상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법률 제18조제3항)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분쟁조정 신청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측)가 신청할 수 있음
-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 **서식Ⅲ-19 / 224쪽**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함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함

● 분쟁조정 기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함(법률 제18조제2항)

● 분쟁조정의 관할권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함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함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음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합의서 작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구성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 날인(시행령 제29조제2항)

●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제1호)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분쟁조정을 종료해야 함(시행령 제28조제2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시행령 제28조제3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진행자는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시행령 제29조제3항)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7장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



관련조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3. 출결사항: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적어야 한다.
- ② 제1항제6호 후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④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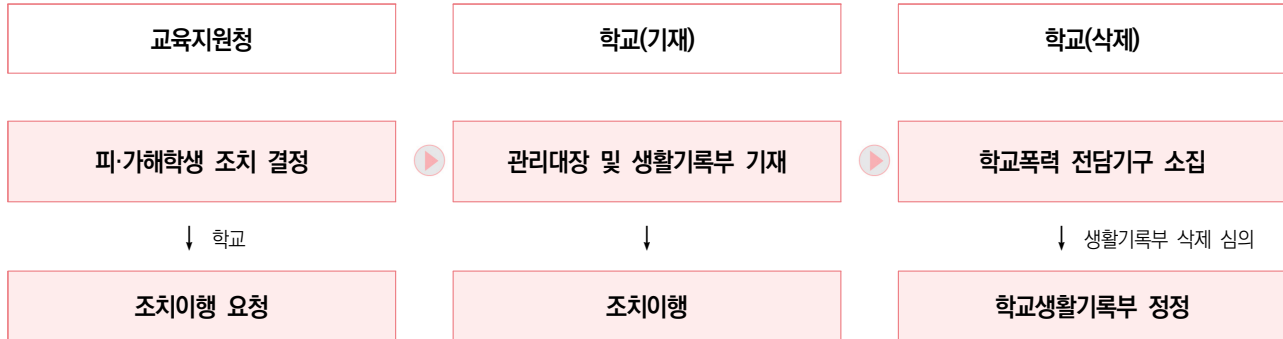
-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7-1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요령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입력 시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에 따라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지원청 내부결재일)
- 입력 사항: 조치별 입력란에 조치내용과 조치결정일자를 입력
- 입력 절차



- ※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결정 통보 공문 접수한 즉시 생활기록부 기재(피해학생은 미기재)
- ※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가되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생활기록부에 미기재
- ※ 제17조제1항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조치에 따른 출결처리

출결처리	해당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 학교봉사(3호) 또는 사회봉사(4호)를 하는 경우 -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경우(5호)
미인정결석	- 출석정지의 경우(6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기록·관리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 서식Ⅲ-17 / 222쪽 에 입학 학년도별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관리(비공개 문서)하며 보존기간(졸업 후 2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함
 - 가해학생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서식Ⅲ-18 / 223쪽 에 입학 학년도별로 기재유보 사항(제1호, 제2호, 제3호)을 기록하여 관리(비공개 문서)하며 졸업과 동시에 즉시 폐기함
 - 가해학생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함.



알아두기

④ 학교폭력 가해학생(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2021.3.1.부터 시행)

- 가해학생이 2021.3.1. 이후 신고된 최초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제1호, 제2호, 제3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입력을 유보함
-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 제2호, 제3호)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음
- 조건부 기재유보 사항(제1호, 제2호, 제3호)을 적어야 하는 경우
 -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
 - 해당 학생이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미기재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기재
-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함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함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영역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법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2023.00.00.).
	2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2023.00.00.).
	3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조치(2023.00.00.).
	7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급교체 조치(2023.00.00.).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20시간 조치(2023.00.00.).
	5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12시간 조치(2023.00.00.).
	6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5일 조치(2023.00.00.).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	2023.00.0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9호	2023.00.00.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 조치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시 유의사항

- 학적변동(전출, 퇴학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처리함
-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일 경우,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 (낙인 예방)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최초 조치결정일자에는 변경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 (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 학적이 정지된 자(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휴학 포함)가 조치를 받은 경우
 -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조치사항 입력
 -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입력
 -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한 경우: 이전에 입력된 가해조치 사항 유지

7-2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요령



관련 조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생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3. 11.]

부칙 <교육부령 제281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고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 '서면 보고·통보'라 함은 K-에듀파인의 내부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

※ 삭제할 자료가 이전년도 자료일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시 정정대장 작성도 언급함

※ 삭제 대상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를 의미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별 기재 영역 삭제 시기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 시기
제1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졸업과 동시에 삭제처리(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		
제3호		
제4호	출결상황 특기사항	• 원칙: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다음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졸업 직전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를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5호		
제6호		
제7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필수확인자료: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서식Ⅲ-21 / 226쪽,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서식Ⅲ-22 / 227쪽,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등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제8호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9호		• 계속 보존(삭제 대상 아님)

※ 2023.2.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의 삭제 시기 및 방법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 제9호(퇴학처분)는 고등학교만 해당됨



알아두기

▶ 심의 대상자 조건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가해학생 조치사항은 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심의 대상자가 된다.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 졸업학년도 9월 1일 이후 조치를 받은 경우 심의 대상이 아님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가된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한 경우
-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 필수 확인자료: (현) 담임교사 의견서 **서식Ⅲ-21 / 226쪽**,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서식Ⅲ-22 / 227쪽**,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부가교육 포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등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

※ 2023.2.28.까지 신고된 사안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2022년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82~83쪽에 따라 처리, 2023.3.1.이후 신고된 사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제1호, 제2호, 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전반영 이전)
- 전담기구 심의 없이 삭제 대상 명단 및 자료를 정리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
-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에 삭제함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 제2호, 제3호의 관련된 모든 내용까지 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함

※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결정된 삭제 대상 명단 및 자료를 정리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하지 않고 졸업 2년 후 삭제하며 삭제 대상 명단을 작성하지 않음
-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지 않고 2년 경과 동시에 삭제하며 삭제 대상 명단 및 자료를 정리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 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삭제

● 제8호 : 해당 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함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와 제1호, 제2호, 제3호 동시 부과시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조치를 동시 부과 받은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제8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한다.



알아두기

▶ 2023.3.1.기준 가해학생 제7호, 제8호 조치의 처리

- 2023년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 제7호, 제8호를 학생생활기록부상 삭제 방법이 변경되었음. 단, 2023.2.28.까지 신고된 사안의 경우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됨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2022년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82~83쪽에 따라 처리함)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예시

● 상황별 삭제 심의 여부 상황 예시(초등)

학생	학교폭력 건수	조치 사항	심의 여부	삭제 시기
A	1학년 1건	제2호	심의대상 아님	제2호, 제3호: 졸업과 동시 삭제
	5학년 1건	제3호		
B	3학년 1건	제1호	2건 이상이므로 심의 불가	제1호: 졸업과 동시 삭제 제4호, 제7호: 졸업 2년 후 삭제
	4학년 1건	제4호, 제7호		
C	6학년 1건 (졸업일기준 6개월 미경과)	제6호	6개월 미경과로 심의 불가	제6호: 졸업 2년 후 삭제
D	4학년 1건	제4호	2건 이상이므로 심의 불가	제4호, 제5호: 졸업 2년 후 삭제
	5학년 1건	제5호		
E	3학년 1건	제1호	심의대상 아님	제1호: 졸업과 동시 삭제
	6학년 1건	제3호(기재유보)		
F	3학년 1건	제4호	2건 이상이므로 심의 불가	제4호 : 졸업 2년 후 삭제
	6학년 1건	제3호(기재유보)		

● 상황별 삭제 심의 여부 상황 예시(중등)

학생	학교폭력 건수	조치 사항	심의 여부	삭제 시기
A	1학년 1건	제2호	심의대상 아님	제2호, 제3호 : 졸업과 동시 삭제
	2학년 1건	제3호		
B	1학년 1건	제1호	2건 이상이므로 심의 불가	제1호: 졸업과 동시 삭제 제4호, 제7호: 졸업 2년 후 삭제
	2학년 1건	제4호, 제7호		
C	3학년 1건 (졸업일기준 6개월 미경과)	제6호	6개월 미경과로 심의 불가	제6호: 졸업 2년 후 삭제
D	1학년 1건	제4호	2건 이상이므로 심의 불가	제4호, 제5호: 졸업 2년 후 삭제
	2학년 1건	제5호		
E	1학년 1건	제1호	심의대상 아님	제1호: 졸업과 동시 삭제
	3학년 1건	제3호(기재유보)		
F	2학년 1건	제4호	2건 이상이므로 심의 불가	제4호 : 졸업 2년 후 삭제
	3학년 1건	제3호(기재유보)		

- 졸업 시 심의 대상은 2024.03.01. 전까지 포함하여 2건 이상이면 졸업 시 삭제를 위한 심의대상이 아님

※ [참고1], [참고2] 모두 2023.2.28.까지 신고된 사안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2022년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82~83쪽에 따라 처리, 2023.3.1.이후 신고된 사안은 아래와 같이 처리함

[참고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작성 및 관리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서식Ⅲ-17 / 222쪽** 을 입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관리하며, 보존기간(졸업 후 2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이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관리함

〈관리대장 서식〉(예시)

〈2000학년도 입학생〉

인적사항				조치 일자	졸업 예정일 (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유보 조치 포함)	졸업 2년 후 삭제 사항	
학년	반	번호	성명				전담기구 심의 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삭제 시기(월)
6	1		A	2023.3 .12	2024. 2	제3호		

나. 학년 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명단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 통보함

※ 통보대상 : ① 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예정자, ②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제4·5·6·7호)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참고 2]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방법

가. 심의 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생활기록부 '출결상향'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4호, 제5호, 제6호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7호 내용 삭제 여부 심의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기존 졸업자는 제외**)
- 해당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심의

나. 심의 제외 대상자

-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제1호·제2호·제3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대해 심의 대상자로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임**, 제1호·제2호·제3호는 졸업과 동시 삭제임)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당해학교 학적보유일(2월 말)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 제8호 조치를 받은 경우

다. 심의 절차(104쪽)

심의 대상 선정 (주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졸업 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 선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5·6·7호)이 기재된 모든 졸업예정 학생(학부모)에게 삭제대상임을 안내 (서면 통보) → 기재 삭제를 신청한 학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학교장에게 보고 (내부결재))



심의 자료 수집 (주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심의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
- 필수자료: (현) 담임교사 의견서 **서식Ⅲ-21 / 226쪽**,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가해학생 자기의견서 **서식Ⅲ-22 / 227쪽**,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부가교육 포함),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등
- 참고자료(선택): 기타교사 및 상담인력 의견서(전 담임, 생활부장,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심층 상담카드, 추수지도 모니터링 카드,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등
- 가해학생 자기의견서를 제외한 의견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직접 수집함(가해학생을 거치지 않고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제출)
- 의견서에는 객관적 사례 및 구체적 변화 내용을 기재할 것



심의 보고서 작성 (주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서식Ⅲ-24 / 229쪽**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조사 및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의보고서 작성
- 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심의보고서 작성



심의 (주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서식Ⅲ-23 / 228쪽**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시기 : 매 학년말(1월~2월)
- 심의보고서 및 관련 입증자료를 토대로 심의
- 전담기구 구성원이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여 **삭제 의결**(‘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등 의결 방법은 학교장이 정함)
- 필요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학급담임교사, 관련교사, 파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보고 및 통보 (주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학교장에게 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해당 학부모에게 통보

라. 심의 기준(예시)

구분 항목	배점	관점 및 기준	점수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40점)	20점	◦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2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부가된 특별교육 포함)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학교생활의 성실성(20점)	5점	◦ 충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5점	◦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5점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30점)	15점	◦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15점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는 회복되었는가?	
기타 고려사항(10점)	5점	◦ 가해학생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5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합계			

- 심의 기준 및 배점 조정, 삭제 찬성 기준 점수 등은 심의 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결정

※ [예시] 점수 합계 60점 이상인 위원은 삭제 찬성에 해당됨 /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50점, 학교생활의 성실성 10점으로 조정 등

-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8장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일러두기

- 2023년도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맞춤형 지원기관 지정 현황 확인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_부서별_자료실_생활인성교육과 게시판

8-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경기도교육청 시군별 1기관씩(총 31개) 공모를 통해 지정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우려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무료 상담·심리치료·일시보호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
- 전국단위 해맑음센터(대전), 우리아이행복프로젝트(서울): 전국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에게 무료로 맞춤형 상담·치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8-2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연 기관,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심리상담(치료) 및 조연 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1호 심리상담 및 조연,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치유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비용 발생하에 제공함
- 피해학생 대상 일시보호기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해학생 조치(2호 일시보호)를 받은 학생에게 수요자의 비용 발생하에 일시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함

8-3

단위학교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부가되는 특별교육을 단위학교에서 자체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제공함

8-4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

-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한 학교 적응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학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제공함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학생위기지원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1장 위(Wee) 프로젝트 학생상담 지원

- 1-1. 예방 중심의 위(Wee)프로젝트 학교 지원
- 1-2. 위(Wee)클래스 : 단위학교 상담실
- 1-3.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상담기관
- 1-4. 위(Wee)스쿨 : 경기새울학교
- 1-5.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2장 생명존중 및 생명 살림교육

- 2-1. 생명존중문화 조성
- 2-2.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교육 강화

3장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3-1.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3-2.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4장 학생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1.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장 위기학생 및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

- 5-1.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5-2. 위기학생 발생교 학생 및 교직원 지원
- 5-3.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사업

6장 자살 위기학생 관리

- 6-1. 자살징후 조기발견 강화

7장 자살사안 발생 시 대처

- 7-1. 자살사고 발생 시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2. 학교 위기개입 지원(단계별 처리방안)

8장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 8-1.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 8-2.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 8-3. 학생 실종·유괴 사안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위(Wee) 프로젝트 학교상담 지원
-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교육
- 위기학생 예방 대응 역량 강화

1장 위(Wee) 프로젝트 학교상담 지원

1-1 예방 중심의 위(Wee)프로젝트 학교 지원

● 「위(Wee) 프로젝트」의 개념

-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
-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도록 지원
- 정서불안, 폭력, 학교부적응, 일탈행동 등 위기학생에 대한 3단계 안전망 구축 사업

● 위(Wee) 프로젝트 상담 연계 절차

1차 안전망(학교)	2차 안전망(교육지원청)	3차 안전망(경기도교육청)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경기새울학교) 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
잠재적 위기학생의 조기진단 및 대처	위기학생의 진단·상담·치유 One-Stop 서비스 지원 및 개별화된 전문 서비스 지원	고위기 학생의 위탁 교육

● 위(Wee) 프로젝트 역할 및 기능

위(Wee) 클래스 (1차)	• 단위학교 내 위(Wee) 클래스 설치 및 운영 • 개인상담/집단상담/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위기학생에 대한 조기진단 및 대처 • 위(Wee)센터(혹은 지역사회 관련기관) 의뢰 및 연계
위(Wee) 센터 (2차)	• 교육(지원)청 설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료 One-Stop 서비스 지원 •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위기 지원 •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위(Wee) 스쿨 (3차)	• 고위기 학생의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 대안교육 (위탁)기관 • 교과 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 교과 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 후 활동, 상담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가정형 위(Wee) 센터	•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교육·보호 기능의 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 •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 기관 운영 • 교과활동, 직업진로교육, 방과후 활동, 상담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병원형 위(Wee) 센터	• 심리·정서적 고위기 학생 대상의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 우울 및 불안 등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학교폭력 피·가해 및 위기 학생, 자살 시도 및 자해 등의 중·고등학생 대상 • 고위기 학생의 전문적 상담 및 치료와 대안교육을 지원

1-2

위(Wee)클래스 : 단위학교 상담실

위(Wee) 클래스 역할

역할	내용
발굴	담임교사, 교과교사, 학부모 등 상담 의뢰, 상담 및 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조기 발굴
평가	학생의 특성 및 상담내용에 알맞는 심리검사 실시
상담	자발·의뢰 학생 및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실시
자문	학생지도와 상담에 대한 자문
프로그램운영	학생 맞춤형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위(Wee) 클래스 이용 안내 홍보
연수	학생교육,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지원
연계	위(Wee) 센터 및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를 통한 다차원적 지원

위(Wee) 클래스 학생 의뢰 및 상담 과정

상담과정	내용
의뢰접수	학생, 학부모, 교사 상담 의뢰 ※ 상담 의뢰서, 상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접수면접	사례개념화, 상담전략 수립을 위한 접수상담
▽	
심리평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심리검사 실시
▽	
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담임 및 교과교사 협조
▽	
사후평가/종결	담임교사 및 학부모 협의
▽	
추후관리	계속적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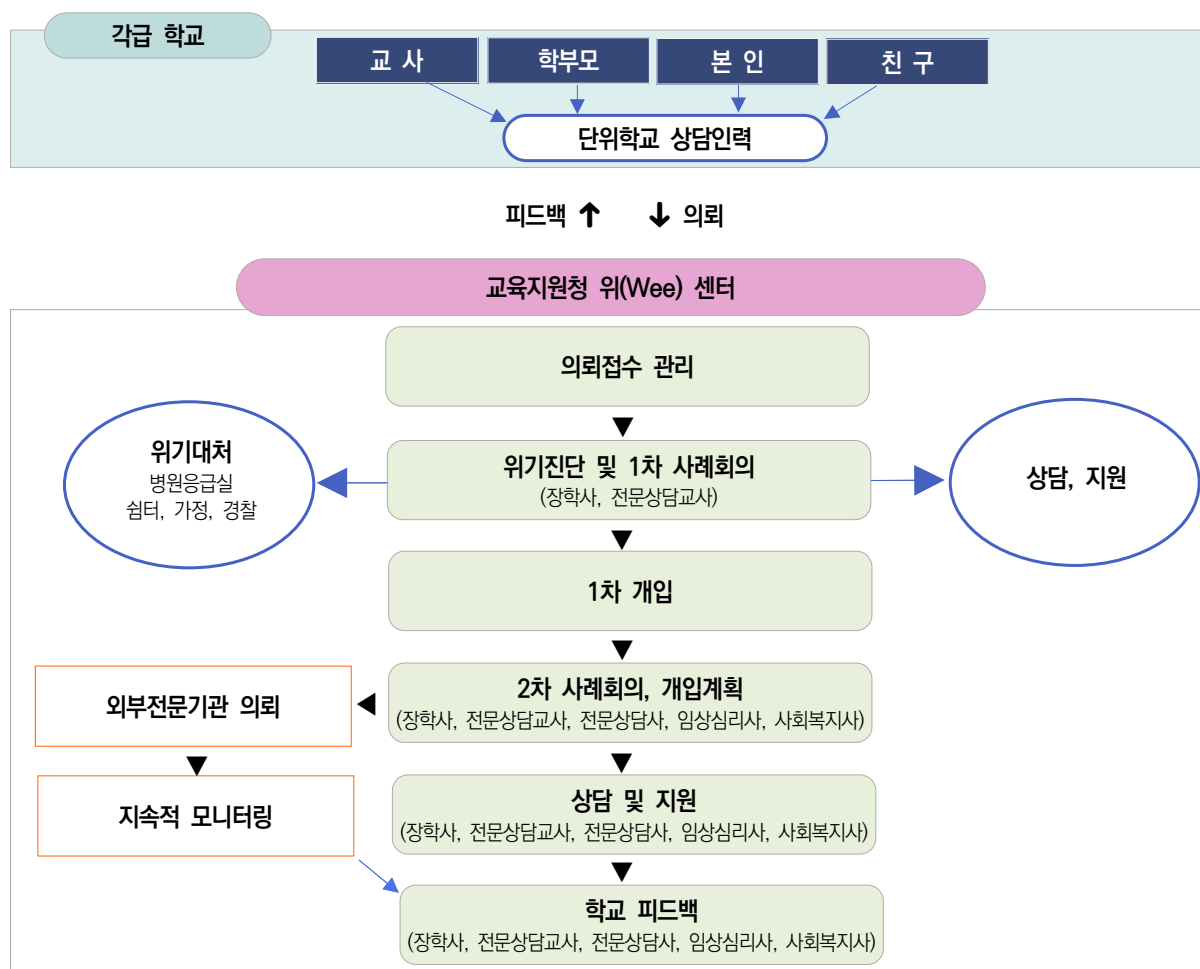
1-3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상담기관

위(Wee) 센터 역할

역할	내용
의뢰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학생 지원 요청
진단 및 평가	심리검사를 통한 학생 문제 진단·평가
상담 및 치료개입	효율적인 진단, 상담, 지원, 치료(One-Stop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
자문	상담, 치료지원 관련 자문, 관련기관 연계 지원
연수	- 교사대상: 학생상담 역량강화 교육 - 학부모대상: 자녀이해 교육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위(Wee) 센터 지원 체계



1-4

위(Wee)스쿨 : 경기새울학교

● 위(Wee) 스쿨 운영 개요

- 학교명: 경기새울학교
- 과정: 중학교
- 학교형태: 대안학교 장기 위탁기관(기숙형)
- 위치: 경기도 이천시 울면 금울로 862번길 231-20(오성리 550-5, ☎ 031-639-9910)
<https://saeul.goec.kr/>
- 어울림실(노래방, 당구장, 헬스장, PC방)/미술/음악/모래놀이치료실, 목공체험실, 노작체험, 아띠방(가사실습실), 스포츠클라이밍장, 체육관, 기숙사, 야외공연장 등

● 위(Wee) 스쿨 운영 개요 및 프로그램

구분	내 용
대상	제13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본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경기도 관내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가정, 학교 등에서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적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장기적인 치유 · 상담 · 돌봄 교육이 필요한 학생 2. 체험과 인성중심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필요한 학생 3. 원적교의 학교장 또는 위(Wee) 센터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특이사항〉 ※ 중대한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성 위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본인의 의지 등)에는 경기새울학교의 특별 심사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수탁을 허용할 수 있음. ※ 특수교육 대상자, 전문병원 치료 대상자, 성문제 유발 위기로인 발생자는 수탁심사 시 배제 됨.
내용	공동교육과정 교과 + 대안교육 특성화 교과
정원	남·여 중학생 60명(1,2,3 학년별 20명)
기간	1년으로 하고 학기별 위탁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1학기 : 2023. 3. ~ 8. - 2학기 : 2023. 9. ~ 12.
의뢰 방법	학교·학생·학부모(보호자)간의 충분한 협의 후 학교장 추천 서식Ⅳ-1 ①~④ / 238쪽

영역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대안 교과	미라클모닝/연극의세계/안전과건강/ 챌린지스쿨/목공/텃밭가꾸기/ 공동체놀이/스포츠클라이밍/공간디자인/ 베이커리/진로탐색프로젝트/상담	기본 교과	국어/사회/역사/과학/영어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동아리/봉사/진로

1-5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 운영방법: 대안교육 민간 위탁기관
- 운영형태: 기숙형(재적교 출석 인정), 치유(중·고 통합)형, 치료와 회복, 성장 중심의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가정형 위(Wee) 센터 운영 개요

구분	명칭	위치	운영 프로그램	연락처
수원-여 가정형 위(Wee) 센터	봄날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71번길 26	• 상담 : 개인·집단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	☎ 031-548-1232 Fax) 070-8228-8232 https://경기여가정형.wee.go.kr
고양-남 가정형 위(Wee) 센터	숨겨진 보물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 62번길 79 가동	• 교육 : 보통교과, 심리, 진로, 자치, 특별과목 운영	☎ 031-976-0179 Fax) 031-976-0505 https://경기남가정형.wee.go.kr

지역	대상	내 용	
수원 (여)	대상	가정위기	가정폭력 피해 중·고등학생 가정위기로 인한 보호 필요 중·고등학생
		학교적응위기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중·고등학생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중·고등학생
		개인위기	임신 또는 출산 예정 - 관리 및 연계 - 출산 전 최대 90일 위탁기간 동안 출석 처리 - 기초기본관련 학교교육, 성교육, 부모교육, 상담, 의료지원
		심리적 고위기	- 심리적 고위기(불안, 우울, 무기력, 충동조절 등)
	정 원	각 영역 모두 포함 하여 총 20명 이내	
	안 내	https://경기여가정형.wee.go.kr	
고양 (남)	대상	가정위기	가정 내 갈등, 폭력, 학대, 방임 등의 위기로 보호 필요 중·고등학생
		학교적응위기	학교폭력 파·가해, 교우관계 갈등, 학업 부진, 무단결석 위기 중·고등학생
		개인위기	ADHD, 불안, 우울, 무기력, 충동 조절, 과몰입, 등 위기 중·고등학생
	정 원	각 영역 모두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	
	안 내	https://경기남가정형.wee.go.kr	

● 병원형 위(Wee) 센터 운영 개요

지역	센터명	위탁기관 (위치)	운영 프로그램	문의처
성남	도담도담 위(Wee) 센터 학교방문 지원사업	성남사랑의병원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62)	• 낮병원형 운영 • 공통과목(국어, 한국사) 및 선택과목 • 치료 프로그램(개인·집단 치료, 심리사회극, 동작치료, 예술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 창의적 체험활동(도담 놀이터, 체육교실, 자치활동, 우리 환경 가꾸기 등) • 양육자 상담, 가족치료 및 교육	☎ 031) 698-3320 Fax: 070) 7500-9803 www.dodamwee.com
의정부	룰루랄라 위(Wee) 센터 학교방문 지원사업	한서중앙병원 (의정부시 평화로447)	• 낮병원형·입원형 운영 • 공통과목(국어, 한국사) 및 선택과목 • 치료프로그램 (주치의 심층면담, 심리치료, 정서관리훈련, 미술치료, 음악치료, 증상약물교육, 심리극, 자해예방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 창의적 체험활동(자치회의, 바리스타, 원예활동, 신체 활동, 요리) • 방과후 동아리활동(바리스타 자격증반, 댄스 동아리, 미술 동아리, 방과후 학습지원 등) • 양육자 상담, 가족치료 및 교육	☎ 031) 928-0911 Fax: 031) 928-0910 www.lulawee.kr
용인	이음 위(Wee) 센터 학교방문 지원사업	이음병원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97)	• 낮병원형·입원형 운영 • 공통과목(국어, 한국사) 및 선택과목 • 치료 프로그램(센터장 심층면담, 개인상담, 집단치료, 독서로 마음읽기,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화치료, 체육, 학교기반 인지행동치료, 사회기술훈련, 소시오드라마 등) • 창의적 체험활동(성장회의, 진로 프로그램, 주간계획 세우기,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 양육자 상담, 가족치료 및 교육 • 사후관리 복교적응 집단프로그램	☎ 031) 812-1500 Fax: 031) 812-1533 www.weeeum.com
부천	피노키오 위(Wee) 센터 학교방문 지원사업	루카스병원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88)	• 낮병원형·입원형 운영 • 공통과목(국어, 한국사) 및 선택과목 • 치료 프로그램(전문의 교육, 인지행동치료, 심리극, 요가, 창의논리, 동화심리극, 개별상담, 주간계획 및 평가 등) • 창의적 체험활동(자원봉사활동, 사회적응훈련, 작품 전시회, 홈케미데이 등) • 양육자 상담, 가족치료 및 교육	☎ 032) 310-0171 Fax: 032) 310-0173 www.lucas-hosp.com

대상	경기도교육청 관내 중·고 재학생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위탁 형태	- 치유형 위탁교육기관 (재적 학교로부터 위탁) - 위탁학생 학적은 재적 학교에서 관리하며 진급 및 졸업 처리 -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평가는 재적 학교에서 관리 (위탁학생 성적처리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함) - 개인별 출결 통지서 월별 발송 (병원형 위(Wee) 센터→ 재적 학교) - 학기별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발송 (병원형 위(Wee) 센터→ 재적 학교)
위탁 기간	3개월 (필요시 병원형 위(Wee) 센터 사례회의 후 최대 3개월 연장 여부 가능)
정원	25명 내외
수탁 해제	- 학생, 보호자가 모두 수탁해제를 동의하는 경우 - 학생이 병원형 위(Wee) 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 학생이 병원형 위(Wee) 센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시 운영위원회 및 사례판정위원회 회부 - 기타 특별한 사유로 지속적으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 학생 위탁 및 이용 절차 서식Ⅳ-2 ①~④ / 242쪽 서식Ⅳ-3 ①~⑤ / 246쪽

과정	내용
위탁문의	▶ 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등
▽	
대상자 의뢰	▶ 대상자 의뢰서 접수 (재적 학교→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
▽	
초기상담 및 평가	▶ 접수면접, 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면담 등
▽	
사례회의	▶ 사례회의를 통해 입소 가능여부 결정
▽	
결과알림	▶ 의뢰결과 알림 (입소 가능여부 및 연계지원 안내)
▽	
위탁신청	▶ 대안교육 위탁 관련 서류 제출 (재적 학교→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
▽	
수탁결정	▶ 수탁통지서 발송 (가정형/병원형 위(Wee) 센터→재적 학교)
▽	
위탁교육	▶ 상담, 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위탁종료	▶ 재적 학교 복교 (위탁종료 통지)

- 초기상담 및 평가 시 학부모가 병원형 위(Wee)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 대상자 의뢰서 및 위탁교육 신청서 등 위탁관련 업무는 반드시 공문으로 처리

2장 생명존중 및 생명 살림교육

2-1 생명존중문화 조성

-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 생활화
- 생명사랑 및 친구사랑의 날 운영(학생 또래문화 활용 생명존중 문화 확산)
- 학생 생명경시풍조 예방을 위한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

2-2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교육 강화

●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 (교육과정 연계)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생명존중 및 생명 살림 교육
연간 6시간 이상 운영하되, 동물학대 예방 교육 포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뉴스레터 매월 초중고교 발송
- 신학기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교육 집중 실시
- 담임교사의 조-종례시간을 활용한 생명존중 교육 연중 실시

● 보호자 대상 학생 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

●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 교육 자료 안내

● 생명존중 교육주간 집중 운영

- (운영 시기) 학생 자살 발생 비율이 높은 학기 초(3월, 9월) 및 필요 시
- 비정기: 수능전후 및 필요시(지필평가 전후,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
- (운영 내용)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교육 활동 집중 실시
- 적응 및 지원 강화: 신학기 적응 지원을 위한 학교 내 지지체계 강화, 상담활동
- 상담 및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관심군 학생 지원, 고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치료 연계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생명존중동아리 운영(교육부 공문에 의거 추후 안내 예정)

● 자살위기학생 문자상담서비스 운영(교육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업)



알아두기

- 위기학생: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학교부적응, 가정적 문제 등으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으로 자살(시도), 자해 등을 시도하는 학생
- 생명사랑 캠페인 및 교육주간
 - 시기: 자살예방의 날(9.10.) 전후 1주간
 - 단위학교 주요 프로그램 :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율 프로그램 참고

3장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3-1 위기학생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 각급학교 교원을 위한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교육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 가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및 생명살림 교육 실천
-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교사용 위기학생지원 가이드북」 매뉴얼 활용
※ 자료출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통합자료실(북부청사-생활인성교육과) 탑재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자료 활용 학교급별 맞춤형 생명존중교육 강화
※ 자료출처: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3-2 위기학생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 교육 실시

- 학부모전문가, 관련기관과 연계한 학부모교육 실시
- 신학기 학부모 대상 생명존중교육 집중 기간 운영(상담주간, 학부모참여수업 개최 시)
- (도교육청) 연수 강사, 프로그램 안내 / (교육지원청) 지역별 상황, 여건에 맞게 실시

● 학부모 교육 및 안내 뉴스레터

- 학부모의 자녀고민에 대한 이해, 상담방법, 학교 및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학부모 교육
- 학부모 대상 미디어 활용 온라인 연수(유튜브 등 활용) 정례화
-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교육부, 경기교육복지종합센터 및 지역사회 연계)
- 뉴스레터 가정통신문 발송(매월 1회 교육부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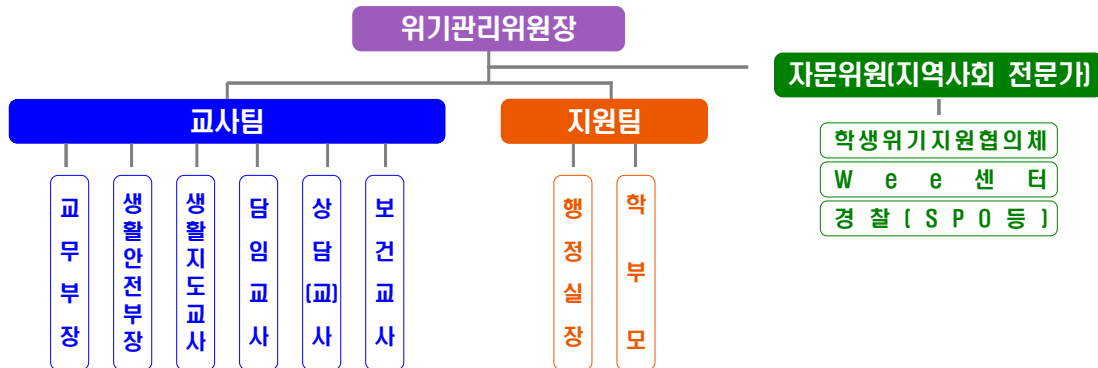
4장 학생위기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위기학생 지원 체제 구축 및 지원 방침

- 위기학생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위기학생 및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
- 자살위기학생 관리 및 사안 발생 시 대처
-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대처

4-1 위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교 내 업무담당자를 기본 구성원으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필요 시 지역사회 전문가 및 관련 학부모를 포함 가능)
- 구성 시기 : **권장** 매년 3월 이내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조직(예시)
(아래 조직표는 예시이며 각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역할

-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학교위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운영에 협력
- 자살, 자살시도, 자해 사안 확인 및 사안 관련자(해당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안정 지원
- 위기관리위원회 긴급회의 개최 및 세부적인 대응 방안 수립(회의록 작성)
- 교육지원청 보고 및 위기관리 지원 요청
- 자살 사안의 경우 유가족, 심리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학급에 대한 안정화 지원
- 정신건강·가정·학교부적응 고위기 학생 지원
- 학교 차원에서 대처할 사안의 경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 학생 지원
- 전문기관 연계 등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에 지원을 요청하여 해당 위기별 전문가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에 참여·지원
- 사안별로 관련기관 전문가 참석 가능(※ 외부 협력기관 **참고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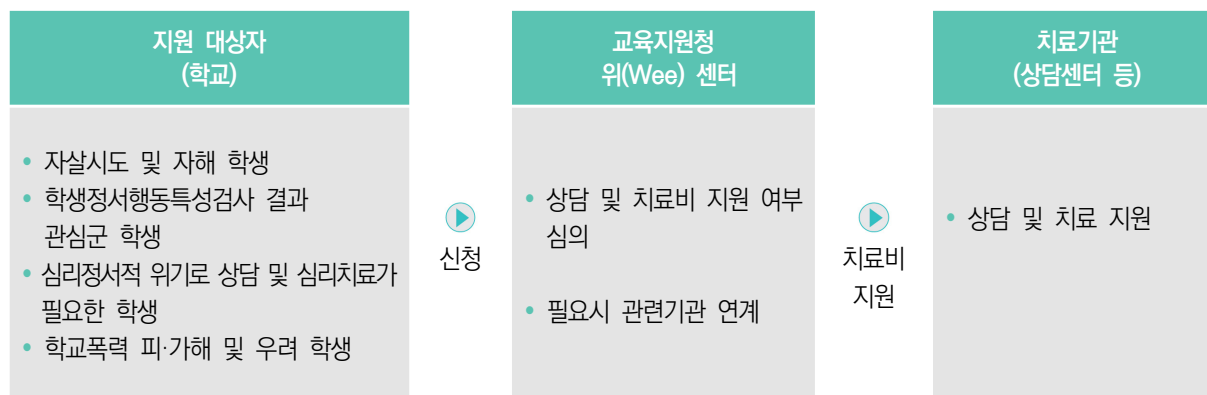
5장

위기학생 및 위기학생 발생교 지원

5-1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지원 방침:**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관련기관의 실질적인 연계망 구축을 통해 학생위기 예방 및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 대상:**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자살시도 및 자해 학생,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등 심리·정서적 위기로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위기학생의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치료비(신체치료비 해당되지 않음)
 - 심리검사비 및 심리치료비(미술치료 등) 지원, 사설기관(센터) 상담 포함, 정신의학 약제비(기관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상이함)
 - 지원 방법: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에서 상담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하지 않음)하며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원 절차



● 행정사항

- 학교
 -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신청서, 동의서 공문 제출(매년 초 공문 참조)
- 교육지원청
 - 치료기관(병원 및 상담 센터) 확인 서류 취합 및 치료비 송부
 - 진료비 또는 상담비 계산서, 심리평가 결과보고서, 상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관에 따라 상이함)

5-2

위기학생 발생교 학생 및 교직원 지원

■ 지원 대상

- 자살시도(자해) 학생
- 자살시도(자해) 이력이 없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주변인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학생
- 자살 및 자살시도(자해) 학생의 영향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재직 중인 교직원

■ 지원 내용

- 위기학생 발생교 위기 개입: 방문 및 유선 자문·상담 지원
- 개인상담·집단상담·치료비·관련기관 연계 지원



도움말

▶ 교육부 상담·치료비 지원 내용과 범위

- 신체 상해 치료비: 투신으로 인한 골절 치료비, 음독 치료비, 응급실 처치 등 포함
- 정신과 치료비: 사설 기관(센터)의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중 진단 등의 목적을 위한 각종 검사비(MRI 등) 지원 가능, 약제비 포함
- 위(Wee) 센터 및 관련기관 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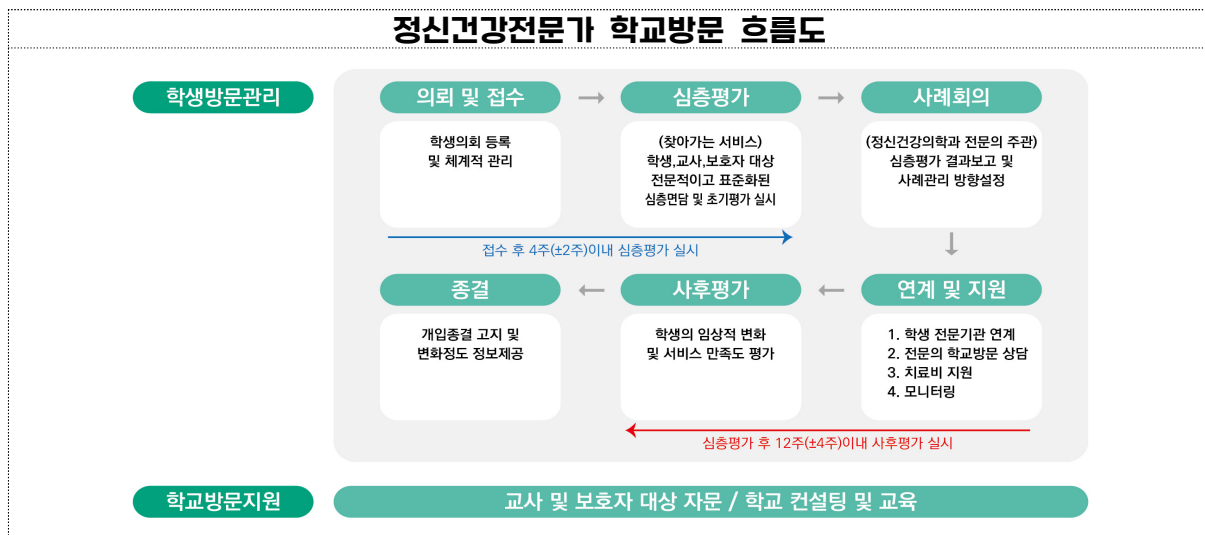
학 교 (지원대상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전문기관 (병의원 등)
① 위기발생교 학생 • 자살시도(자해) 학생 • 자살(자해)시도력이 없었으나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주변인 자살로 인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 ② 위기발생교 재직 교직원 • 자살 및 자살시도(자해포함) 발생교에 재직 중인 치료가 필요한 교직원	지원 요청 ⇄ 위기 개입 • 위기발생교 위기 개입 (자문 및 상담 지원) • 치료비 지원 • 필요시 관련기관 연계	치료비 지급 ⇄ 지급 요청 • 치료지원 • 심리검사 • 정신과 진단에 필요한 MRI검사 등 • 상담 및 심리치료 • 입원 및 통원 치료 • 상해치료 포함

■ 행정사항

- 학교
 - 위기발생교 학생·교직원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신청서 제출(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 도교육청
 - 학교 제출 서류 공문 발송(교육부 및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신청 기관 → 교육지원청
 - 위기학생 발생교 학생·교직원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신청 기관 → 도교육청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개요

- **(목적)**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 지원,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체계적 치료 지원
- **(운영)** 병원형 위(Wee) 센터(이음 위센터, 피노키오 위센터, 룰루랄라 위센터, 도담도담 위 센터) 협약을 통한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 **(신청 대상)** 치료거부 심리·정서 고위기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정신건강 이해가 필요한 교사나 학부모(초·중·고등학생)
- **(신청 절차)** 단위 학교 →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사업 사례관리 시스템 신청(<http://svs.smhrc.kr>) →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 → 학생 심리검사 및 상담, 담임교사 및 학부모 교육 및 자문 → 추수상담 및 지도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 참여 기관

연계기관	운영 형태	지원 교육지원청	비고
도담도담 병원형위센터 (성남 사랑의병원)	초등	광명, 김포, 부천, 안산, 안양과천	5
	초·중등	광주하남, 성남, 양평, 여주	4
룰루랄라 병원형위센터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초등	고양	1
	초·중등	가평,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7
이음 병원형위센터 (용인 이음병원)	초등	군포의왕, 시흥, 화성오산	3
	초·중등	수원, 안성, 용인, 이천, 평택	5
피노키오 병원형위센터 (부천 루카스병원)	중등	고양, 김포, 광명, 군포의왕, 부천, 시흥,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9



알아두기

- **학교방문지원사업**
 -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 재학생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학교방문을 통한 학생 심층평가
- **학교방문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의 사례회의를 통한 학생 개별 방향 제시**
 - 전문기관 연계 및 지원
- **치료 및 서비스 참여 유지를 위한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
 - 교사, 학부모 대상 자문 및 교육
- **학생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 학교의 위기 대응력 강화**

6장 자살 위기학생 관리

6-1 자살징후 조기발견 강화

- **운영 방침:** 학년 초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 발견 노력
- **운영 대상:** 초 1, 4학년 학부모, 중·고 1학년 학생으로 검사 실시 후 관심군 학생
- **운영 시기:** 매년 4월
- **운영 내용**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담임교사의 학생 관찰을 통한 사전징후 발견 및 자살관련면담기록지,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평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의뢰 **참고자료**
 - 자살관련면담기록지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 교사용(교육부, 경기도교육청)
 -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자살고민 상담을 통한 자살징후 조기감지 및 치료 개입
 - 학교폭력 신고전화(☎117), 청소년상담전화(☎1388),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보건복지상담전화(☎129)
 - SNS 자살징후 알리미 서비스 활용 홍보



도움말

- **SNS 자살징후 알리미 서비스 활용 방안**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SNS에 표출된 자살징후 사전 감지 및 부모 알리미 서비스 적극 활용 홍보
 - 학부모와 학생들이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 안내문 및 학교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한 적극 홍보
 - 학생과 학부모가 앱 설치, 운용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안내 등 필요사항 조치
- **학생 관찰을 통한 사전징후 포착**
 - **언어적 신호:** 자살, 죽음, 자기비하적인 말이나 신체적 불편감 호소 또는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
(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라져 줄게', '내가 없어진다면 모두가 편안해지겠지?'
 - **상황적 신호:** 갑작스러운 문제가 발생되거나 어떤 문제가 지속될 때 자살위험이 높아짐
(예) 가족 및 친구와의 갈등, 학업고민, 이성문제, 주변 지인의 죽음, 학대 등의 외상적 사건
 - **행동적 신호:**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나 자해를 한 흔적 또는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함
(예) 약물을 모아서 감추거나 날카롭고 위험한 물건을 준비함, 식사와 수면·체중의 변화, 성적 하락·지각·조퇴·결석 등 평소와 다른 행동, 자살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심취함, SNS에 자살·죽음에 대한 표현,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는 감정기복의 변화

행정 사항	학교	교육지원청
	● 매년 4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 학생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고위험군 심층평가 및 상담

7장

자살사안 발생 시 대처

7-1

자살사고 발생 시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자살사고 발생 시 위기개입 절차

순	세부 처리 내용
학생 자살사고 발생	- 최초발견자는 112, 119신고 및 사고현장 보존 - 보호자에게 연락 및 담임교사 또는 위기관리위원회 교원에게 연락 - 교육지원청 유선보고, 경위보고(사안인지 후, 24시간 이내 보고) 및 7일 이내 공문보고 서식Ⅳ-4 / 251쪽 ※ 자살시도 및 자해 보고 서식Ⅳ-6 / 261쪽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 구체적 상황파악(사고경위, 목격자 파악 등) - 구체적 대응책 마련 및 역할 분담 -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 지원요청 및 전문기관 협조 요청
유가족 조문 및 공식 입장 결정	- 유가족 조문을 통한 깊은 애도 표현(가족들의 정서 상태 파악) - 학생 / 학부모 / 언론보도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 사실적 정보만을 제공함) - 학생들에게 자살소식 공지에 있어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함
전문기관 협력 -학교 및 교사 지원 (특별상담실 운영)	-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 경기도교육청 위지원단을 통한 협력 (사안 관련 사례회의를 통한 해당교 컨설팅 지원) - 교내 특별상담실 요청(단위학교), 운영(교육지원청, 전문기관) (자살목격 학생 및 심리적 충격이 큰 취약 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심리상담 지원 또는 관련기관 연계, 약 1~2주간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함)
위기극복을 위한 교내 지원	-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추모 방법과 일정 결정 - 학교 안정화 정책 운영('잘 가 친구야' 활용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 특별상담실 운영
사후 계획 수립 및 조치	- 학교 여건 및 상황에 맞게 계획 수립 안내(교육지원청) - 학교 내부 협의 및 상황에 맞게 사후 조치 계획 수립 및 지도(단위학교)
위기관리위원회 평가 및 결과보고	-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리 - 교육지원청 결과보고

7-2

학교 위기개입 지원(단계별 처리방안)

1단계: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긴급 소집
- 자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파악
- 우선적으로 유가족에게 애도 표현
-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자살 사건이 미칠 파급효과를 파악하고 사후개입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2단계: 자살사건과 관련된 학교의 공식입장 결정

- 교내·외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학교의 공식 입장을 결정
- 공개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 대상 결정

공개 대상	세부 처리 내용
언론보도	• 자살한 학생의 실명, 자살 수단 및 정황, 추정원인 등을 비밀로 함 • 언론대응을 일원화하며 언론대응 담당자만이 언론과 접촉함 • 언론매체가 다른 교사나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차단 • 자살사건 자체보다 학생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 •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의 사전 차단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중점으로 기사화해 줄 것을 요청
학생 공지	• 교사 간 관련 사실 공유, 사후 개입 및 정보 제공에 대한 지침 안내 • 자살사안 공지는 단체가 아닌 학급단위로 사실만 전달 • 애도를 표현하는 동시에 자살은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며 남겨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임을 강조 • 자살 사건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특별 상담실 운영 안내
학부모 공지	• 자살에 대한 추측, 짐작한 내용을 주고받지 않도록 당부 • 자녀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에 도움 요청 안내



알아두기

▶ 학생 자살 사안 발생 시 유의사항

- SNS, 휴대폰 어플, 메신저 등을 통해 자살 관련 소문과 유언비어가 퍼지지 않도록 적극 개입
- 학생들이 외부 소문에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시킴

3단계: 2차 위기관리위원회(긴급심리지원 협의)

-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 위(Wee) 센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 참석
- 특별상담실 운영 및 학교 안정화 정책 지원
- 우선관리군 학생 의뢰 및 관리
- 학생 사안보고 및 공유
- 학생 보호를 위한 개입
- 자살 학생의 형제, 자매, 친구, 이성 친구에 대한 파악
- 필요 시, 사안과 관련된 타 학교 관리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 협조 요청(비밀유지 필수), 우선관리군 학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공유

4단계: 위기 개입

- 위(Wee) 센터(필요시 외부기관)에서 학생들의 충격 완화 및 극복을 위한 학급(학년) 단위 안정화 및 위기관리 프로그램 진행
- 자살 위기 학생을 선별, 평가, 상담 및 의뢰
- 특별상담실 운영 (약 1~2주간)

5단계: 위기관리위원회 활동 평가(필요시)

- 교내 응급 위기지원팀을 주축으로 2개월 후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교원 등에 대한 추수 관리 논의
- 우선관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논의

8장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8-1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및 내용

- 단위학교
- 학생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반드시**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성폭력 예방 4시간, 아동학대 예방 4시간) 이상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반드시** 매년 1시간 이상(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 학부모 대상: 입학 설명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 학부모 행사 시 연간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 및 내용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별표1], [별표 2] 참조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알아두기

▶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http://www.korea1391.go.kr>)/자료실/교육·홍보자료
-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http://www.hr.go.kr>)/인권자료실/여성·아동인권

8-2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

●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 평상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대한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 징후발견: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상담, 보건교사 협조 의뢰
- 응급상황시: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 확보 및 보호,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진행
-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 현장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학교 내 독립된 장소, 관련자료 제공,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 조치결정: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방안 마련(등교학습지원 등)
- 사후관리: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상황 발생 시 112 신고,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

- 단위학교: 아동학대 피해학생 현황 파악, 피해학생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아동학대 신고

- 수사기관(☎112)에 신고,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 **반드시** 교직원은 법령상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해야 함



도움말

-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었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
-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 아동학대 사안 보고

- 각급 학교: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
-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 양식 활용 **서식Ⅳ-7 / 274쪽**
- 아동학대(의심) 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양식 활용 **서식Ⅳ-8 / 278쪽**
※ 사안보고서 제출 시 피해아동,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



알아두기

▶ 개인정보 보호

- 사안보고서 제출 시 피해아동, 신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및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

▶ 참고 자료

-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2023)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북부청사/생활인성교육과(PDF 탑재)
 - 내용: 아동학대의 이해, 발견 및 초기 대응, 신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예방 및 근절 등

● 학대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등교학습 지원 방안

- (목적)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 결손을 해소·완화하여 일상으로의 복귀 및 전인적 성장 지원
- (개요)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방안

■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 관련: 「아동복지법」 제29조 등

☞ 해당 학생 등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 시설 등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학적을 기준으로 피해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로서, 당초 재학하던 학교 또는 등교학습 지원 중 전학한 학교

** 본 방안은 긴급한 학습 지원을 위함이며, 안정적인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 신청권자 / 피신청권자	지자체의 장 / 교육감(교육장)
■ 피신청권자의 역할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 지정
■ 지정된 학교의 역할	해당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

● (절차) **서식Ⅳ-9 / 279쪽**

① 지자체 장의 교육감(교육장)에 대한 등교학습 지원 요청

* ① 학대 피해 당사자 등의 신청 ② 원소속 학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등의 의견 제출 ③ 그 밖에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단, ①~③ 중 어떤 경우에도 학대 피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 해야 함

② 교육감(교육장)의 학습지원 학교 지정

* 지리적 여건, 원적교의 특성, 인적·물적 자원, 당사자 등의 의사 등을 포함한 교육 환경을 두루 고려함

③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

* 해당 학생은 학적 변동이 없는 지자체 위탁 학생이므로 출결은 원적교에서 처리하며 지자체는 위탁기간 중 학생에 대한 관리를 함

④ 등교학습 지원 종료 후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작성하여 원적교에 송부

⑤ 원적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대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세심히 지원

8-3

학생 실종·유괴 사건

● 학생 실종·유괴 사건 보고

- 유·초·중·고교 학생 대상 생활안전교육 시 실시(학기별 2회 이상)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계 운영(교육부고시 제2016-90호 제3조 의거)
- 학생 실종·유괴 사건 발생 시 발생 피해, 언론 보도, 경찰 조사 내용 등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처리 절차>
 - 학교는 보호자의 실종신고 여부를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
 - 보호자 연락두절 등으로 실종신고가 안 된 경우 학교(담당교사)에서 실종신고 처리(신고전화: ☎112)
 -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 및 사안보고(유아 또는 특수학생인 경우 유아교육과 또는 특수교육과에 동시 보고) **서식Ⅳ-10 / 290쪽**
 - 실종(유괴)학생 사안 종결(학생 찾음, 사망 등) 시 즉시 유선보고 및 결과보고서 공문 보고 **서식Ⅳ-10 / 2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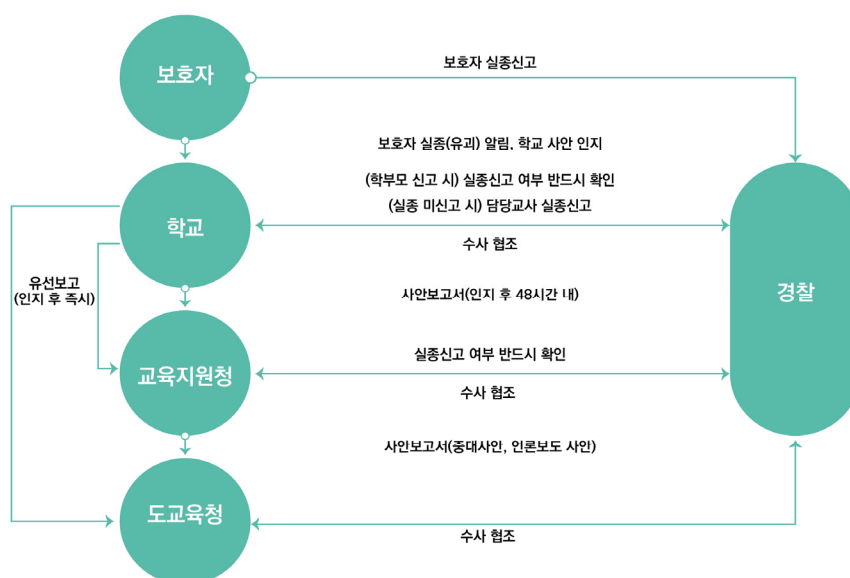


도움말

◆ 실종 아동(학생)

-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학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안 보고 절차 흐름도 >



알아두기

- 경찰에서 학교 측에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에서 실종아동 친구 및 그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경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양성평등교육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1장 양성평등교육

1-1. 양성평등교육 기반 조성

2장 폭력예방교육

2-1.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2-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2-3. 폭력예방교육 결과 제출

3장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3-1.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양성평등교육의 기본 방향

- 교원·학생·학부모 등 대상별 양성평등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양성평등 실천역량을 갖춘 선도 교원을 현장지원단으로 양성하여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와 문화 확산 도모
-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합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대상별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수립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연간 필수 업무 사항

구분	내용	시기
4-1. 양성평등교육		
4-1. 양성평등교육 기반 조성	• 총괄자 지정 및 역할 분담, 교육과정 내 양성평등 교육 시간 확보	3월
	• 양성평등교육 운영 방법·대상·양성평등 실천주간(1주) 지정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양성평등교육 업무담당자 지정	10월
4-2. 폭력예방교육		
4-2-1.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 학생 대상, 전교직원 대상, 고위직(기관장 포함 교감·행정실장 등) 대상 교육 계획 수립	3월
	• 대상별 교육시간 및 횟수 상이	
4-2-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신규교직원 발령 후 2개월 이내 교육 실시	3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2차피해방지 포함)을 참조하여 단위 학교 예방지침 수립	
	• 성희롱·성폭력 고충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	3월
	• 고충상담원 교육 운영 - 신규 고충상담원 6개월 이내 교육의무 - 그 외 3년 내 교육 이수 의무	연중
4-2-3. 폭력예방교육 결과 제출	• 단위학교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2인 포함하여 6인 이상 구성)	4월까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에 결과 입력 - 연수명단,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증빙자료 등	다음 해 2월 말까지
4-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4-3-1.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 사안발생보고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고(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생략 가능)	인지 즉시
	• 사안처리 및 결과보고(교육지원청 보고)	종결 즉시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고 의무	발생보고 후 3개월 이내

1장

양성평등교육

1-1

양성평등교육 기반 조성

■ 양성평등교육 추진 배경

- “미투 운동” 및 “스쿨미투”에 따른 학교 성인권 교육의 필요성 증대
- 학교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제고, 양성평등 교육, 양성평등 문화 조성 필요

■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목적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 해소 및 학생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 학교의 양성평등 문화 개선을 통해 행복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학교환경 마련

■ 학교의 추진 내용(요약)

구분	시기	내용	비고
1. 학교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3월	2023 양성평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¹⁾
	연중	(학생) 교과 및 창·체 등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교육 실시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²⁾ 활용 교육공동체 대상 양성평등교육 지원 ³⁾
		(교직원) 양성평등교육 영상, 원격직무연수 등 콘텐츠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학부모) 상담주간, 학부모 총회 등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2. 학교 양성평등 실천주간 운영	자율 지정	학교 자율적으로 ‘양성평등 실천주간(1주)’을 지정하여 양성평등 교육 및 홍보 실시	여성가족부 지정 양성평등주간 : 매년 9.1. ~ 9.7.
3. 학교 양성평등 자체점검	10월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서식V-1 / 318쪽

- 양성평등교육의 활성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업무담당자 지정을 통해 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
- 양성평등 현장지원단
 - 교육지원청별 초·중·고 교원(관리자 포함)을 현장지원단으로 양성하여 단위학교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위한 학교 현장 자문·컨설팅 활동
- 교육공동체 대상 양성평등교육 지원
 - 학교 현장 양성평등 문화조성 지원 사업 및 전문기관 연계형 양성평등교육 실시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행정사항

- 우리 학교 ‘양성평등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전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희망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 진단검사(가칭)’ 참여 적극 권장 **필요시**
- ※ ‘양성평등 진단검사(가칭)’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공문 발송 예정



알아두기

-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 특정 성(性)에게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것. 즉, 성별 역할과 지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별 차이를 반영하거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

2장

폭력예방교육

2-1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운영

폭력예방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계획서를 반드시 수립
- 계획서의 내용에는 필수 예방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예산 / 각종 서식, 점검표 등의 내용 포함

●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

● 관련 지침

- 2023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2023.1. 여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 개요

- (교육시간 및 분야) 각 기관장의 책임 하에 성희롱 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대상) 기관장을 포함한 전 직원(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 및 학생

- 대상별 교육내용 및 시간(횟수)

※ 2022년부터 기관장 포함 고위직 별도 교육 실시 의무화 신설

교직원 전체	기관장 포함 고위직(교감, 행정실장 등) 별도 교육
• 내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 횟수: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 내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 횟수: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 단, 성매매 예방교육은 교직원 교육으로 갈음 가능
유·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내용: 성폭력(디지털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 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	• 내용: 성매매, 성폭력(디지털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 횟수: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기간) 당해 연도 1.1. ~ 12.31 (2023.1.1.~12.31)
-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하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 교육 권장
- 학년 초 학사 일정 협의 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실적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2024.2.29.)까지 **반드시**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http://shp.mogef.go.kr>)을 통해 제출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학교용 배점표	학생참여율 50% 미만(5)	학생참여율50%미만(5), 0% (0)
각급학교(초·중·고)의 종사자·고위직 참여율 기준강화	(종사자)75%미만(부진기관) (고위직)70%미만(부진기관)	(종사자)75%미만(부진기관) (고위직) 75%미만 (부진기관)
콘텐츠 Q&A(9) (P48)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 센터에서 사이버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각급 학교(초·중·고) 종사자 대상 사이버 교육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화원 가입 후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고충상담원 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이 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이수자로 인정 ** ('21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2년 상반기 교육이수, ('22년 상반기 신규지정) '22년 하반기 교육 이수, ('22년 하반기 신규지정) '23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 기관 고충상담원 1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해당 항목 인정 * 교육수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1~'23년 교육 이수)를 이수자로 인정 ** ('22년 신규지정 미이수자) '23년 상반기 교육 이수, ('23년 상반기 신규지정) '23년 하반기 교육 이수, ('23년 하반기 신규지정) '24년 상반기 교육 이수 ※ 신규 고충상담원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정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신규기관 제외)
성희롱·성폭력 사건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시점 설명	(신규)	- 고충상담이나 피해 신고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또는 대리인)에게 여성가족부에 사건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이 경우 통보 및 신고 의무는 피해자(또는 대리인)가 조사를 원할 경우, 사건(통보, 신고)동의 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에 발생함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담당자 지정	고충상담원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	조사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나 별도 조사자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한 고충상담원이 조사를 할 수 있음

2-2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서식V-2 / 321쪽

- 폭력예방교육 연간 계획서 작성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작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표준안은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에서 확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 제1조 목적	• 제10조 통보 및 신고의무
• 제2조 적용범위	• 제11조 조사
• 제3조 성희롱·성폭력의 정의	• 제12조 조사결과와 보고
• 제4조 기관장의 책무	• 제13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제5조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제14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6조 고충상담창구	• 제15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7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제16조 조사 등 결과 통지
• 제8조 예방교육	• 제17조 징계
• 제 9조 고충상담	• 제18조 재발방지조치 등

● 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있는 고충상담창구의 개설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은 필수

고충상담창구 지정 운영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업무망·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기관 특성에 맞도록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기관은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님)
- 고충접수 처리 대상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신청서를 비치하도록 함

고충상담원 지정

- 총 2인 이상 (남·여 각 1인 이상 포함)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 교직원 중, 어느 한 성(性)이 5인 미만일 경우 동일 성(性)으로 2인 이상 지정 가능
- 상시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상의 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6개월 이내, 기존은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의무

단위학교 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
-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
- 위원장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한 성(性)의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함

교육지원청 상급심의위원회

- 가해자가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인 사안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
- 교육지원청에서 구성 및 운영하며 단위학교에서 사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

2-3

폭력예방교육 결과 제출

제출 항목

- 폭력예방교육 운영 결과물,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수립 자료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관련 교육 또는 연수 관련 자료
- 교육 자료 / 활동사진 / 연수 등록부 / 내부결재 자료 / 강사 정보 등
- 교육대상과 분야가 많으므로 꾸준히 자료 정리

제출 방법

-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hp.mogef.go.kr>) 접속 후 자료 입력 및 등록
- 자세한 사항은 11~12월 관련 공문 내용 참조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표

유형	평가항목		2023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 부진기관 (0)					
		고위직	15	90% 이상 (15) 70~90% 미만 * 75% 미만 부진기관 (10) 50~70% 미만 * 부진기관 (5) 50% 미만 * 부진기관 (0)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 75% 미만 부진기관 (14) 60~70% 미만 * 부진기관 (11) 50~60% 미만 * 부진기관 (8) 50% 미만 * 부진기관 (5)			
						학생	20	90% 이상 (20) 80~90% 미만 (17) 70~80% 미만 (14) 60~70% 미만 (11) 50~60% 미만 (8) 50% 미만(대학만 해당) * 부진기관 (5) 0%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교육방법(20)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3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3)				
			(초중고)학교자치기구를 통한 예방교육모니터링 실시	5	모니터링 증빙자료 제출 (5) 시스템 입력 실적으로 확인 (5)				
	대상별 추가 교육 실시				2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2)			
	합계	합계		100점 (가점 시 120점)					

3장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의 기본 방향

-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안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증가 및 피해자 치유·회복 체계 구축
- 징계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조치 강화
- 예비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예방 교육 강화

3-1 사안 발생 시 대응 절차

3-1-1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바로 알기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개념

-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
-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강간, 추행, 성희롱 등 성(性)을 매개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건전한 성적(性的)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함(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관련 판례에 근거)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근거

- 학생 :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교직원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징계령」
- 형사법적으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 상, 학생의 경우 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 상 성희롱·성폭력(성 비위)에 해당할 수 있음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유형

- 대상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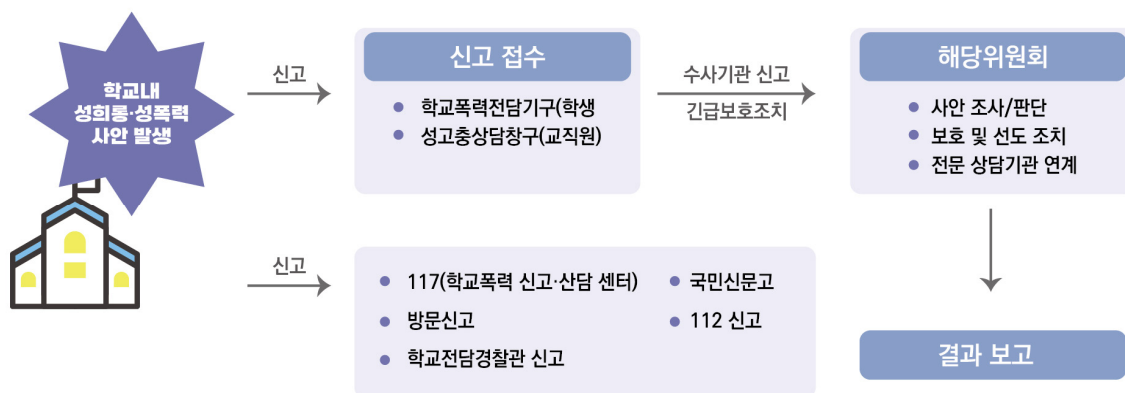
아동 성폭력	•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청소년 성폭력과의 차이점: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됨
청소년 성폭력	• 13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장애인 성폭력	•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 행위유형별 분류

강간,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적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의 심신상실(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없음) 또는 항거불능(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 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스토킹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연락 등을 하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3-1-2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유의사항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조치의 흐름도



● 학교장 유의 사항

- 학교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 해결의 총지휘자
-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구성원 소집, 업무지시, 수시 모니터링
- 법에 정한 신고 의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한 학생이나 교사를 격려하고 보호하며 필요한 지원 실시

● 교사의 유의 사항

- 교사는 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사건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임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함
-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에 문의 및 상담
- 학교의 잘못된 대처로 수사와 피해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주위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피해 저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교사의 역할〉

책임교사	사안 조사를 총괄하고 조사 방향을 정하며 조사한 결과를 학교장에 보고함
담임교사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서적 지지와 초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와 협력체계를 갖추
보건교사	피해·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응급의료조치를 취하되 가급적 법의학적 증거 채취가 가능한 전문기관 연계
전문상담(교)사	피해·가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확인하고, 심리상담 등 응급조치를 취함

● 학생 지도 시 유의 사항

- 피해자의 신원이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경우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교사는 침착하게 대응함
- 성희롱·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폭력 범죄이고 관련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등 2차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육함
- 학교와 교사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지원해주며 공감해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관련 사실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알려줌

● 학부모 유의사항

- 성희롱·성폭력 징후를 인지하면 바로 학교와 수사기관에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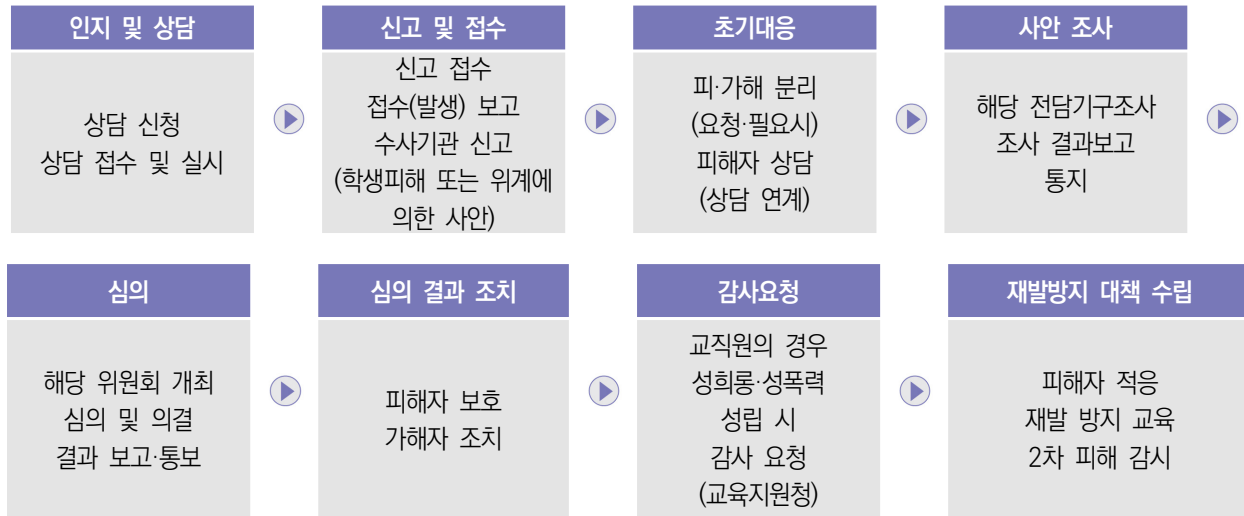
● 대상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주관위원회

가해 피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학생) 성고충심의위원회(가해교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피해학생) 성고충심의위원회(가해직원)
교원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교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해학생) or 교권보호위원회(피·가해)	성고충심의위원회(피·가해) + (피해교원 요청시)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의 피해보호만 가능)	성고충심의위원회(피·가해) + (피해교원 요청시) 교권보호위원회 (피해교원의 피해보호만 가능)
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직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해학생)	성고충심의위원회(피·가해)	성고충심의위원회(피·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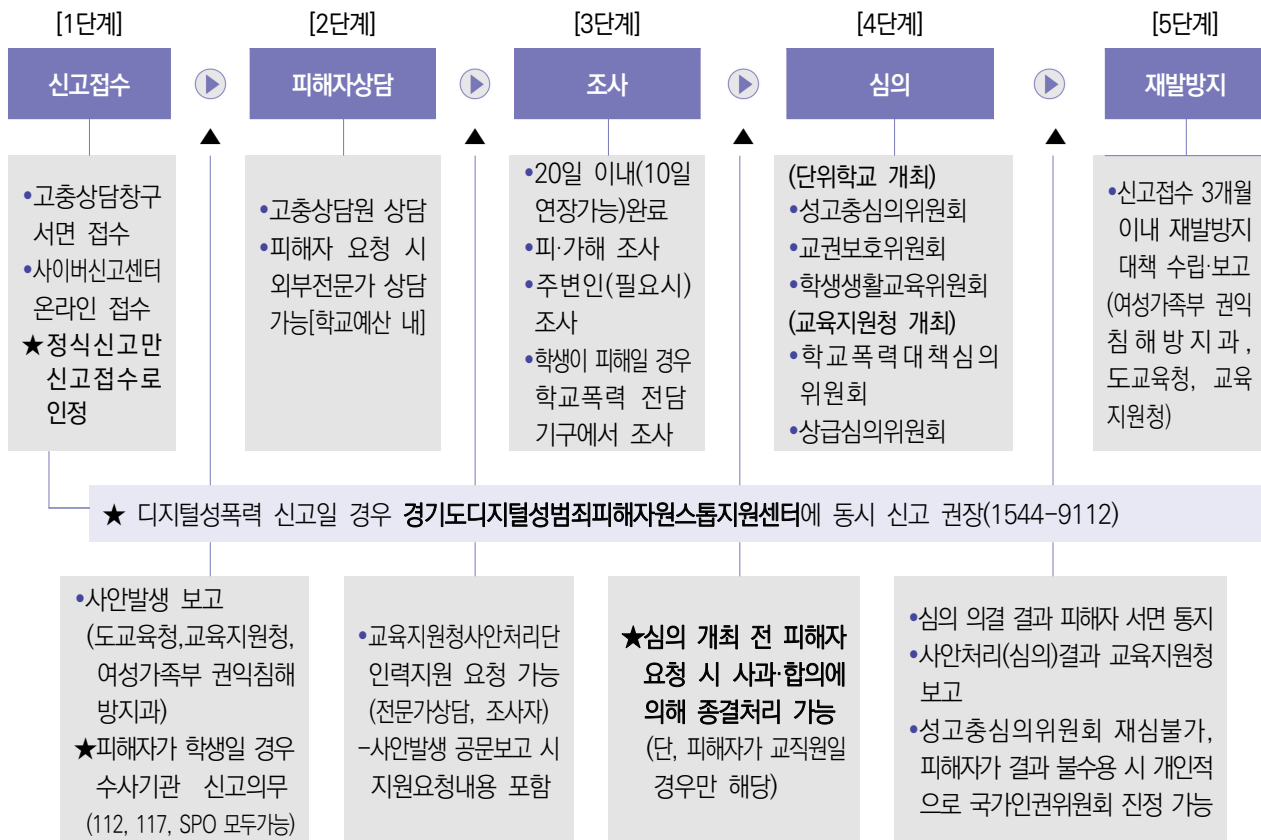
3-1-3 대상 유형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흐름도

●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공통)



● 성고충심의위원회 사건처리 일반 흐름도



● 기관별 사안처리 보고 체계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 기관 즉시 신고 • 사안 발생 보고 서식V-3 / 326쪽 ☞ 학교 → 여성가족부(권익침해방지과), 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 교육지원청(단, 중대·긴급 사항 우선 유선 보고) ☞ (가)교직원-(피)학생의 경우 48시간 이내 보고 ☞ 피해자가 발생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지 않음 • 사안 처리 보고 서식V-5 / 328쪽 ☞ 학교 → 교육지원청 • 재발방지대책 보고 서식V-6 / 329쪽 ☞ 학교 → 여성가족부(권익침해방지과), 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 교육지원청	• 학교 사안 보고 접수 및 컨설팅 장학 등 사안처리 지원 (교육지원청별 사안처리지원단 연계 지원) • 사안 결과 보고서 제출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사안결과에 따라 감사관, 교원정책과(총무과) 제출 •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안으로 인정된 사안의 경우: 지원청 감사관(센터)에 감사 요청	• 사안보고, 사안결과 보고서, 재발방지대책 등 접수 및 관리 • 경기도교육청 사안처리지원단 연계 지원 • 교육지원청 및 관계 부서, 유관기관 등 필요시 협조지원

●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절차

● 학생(피해자)-학생(가해자)

절차	유형	유형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인지 및 상담		- 상담, 실태조사, 타 기관 통보 등으로 사안 파악
신고 및 접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 접수 -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이내) -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사안발생 보고 서식V-3 / 326쪽 • 피해학생이 발생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발생보고는 하지 않음 ※ 사건(통보, 신고)동의 확인서 작성(2023 폭력예방 운영 안내 p.136 양식 참고) • 발생보고 서식은 성사안 발생보고 서식 외 학교폭력발생보고 양식 사용 가능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사항) • 즉시 출동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 그 외 사안은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함 • 거주지 해바라기아동(통합)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요청 • 수사기관 신고는 급한 경우 우선 구두나 유선으로 하되 가급적 공문으로 신고 • 피해 학생, 보호자가 신고를 원치 않아도 교육기관 종사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먼저 신고를 했더라도, 학교는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음 •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가 알려져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함 - 보호자 통보 • 가족, 친구 관계 등 지지 자원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함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함

절차	유형	
	학생(피해자) - 학생(가해자)	
초기 대응	- 피해-가해 분리 - 가해자 즉시 분리(최대 3일) - 피해자 긴급조치 가능(학교폭력예방법 16조), 가해자 긴급조치 가능(학교폭력예방법 17조) - 2차 피해 방지	
	- 피해 학생 응급조치 • 응급처치 필요시 전문 의료기관의 지원 • 응급이송은 동일한 성(性)의 교직원동행을 통해 피해 학생 심리적 안정 도모 • 상처 확인 및 치료를 위한 보건실 치료 및 치료기록을 관리 • 사안 발생 현장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수사 기관 의뢰 • 사안 발생 현장에 CCTV가 있으면 화면 확보	- 관련 학생 분리 및 안전 조치 • 피해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보호조치 • 피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파악 • 피해자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 • 피해학생 부득이한 결석, 조퇴를 허용함 • 피해 사실을 떠올리도록 종용,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반복하지 않음 • 피해 학생의 평상시 품행이나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음
사안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 사실 여부 조사: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 관련 학생 조사 및 피해 확인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최초 사안을 인지한 교직원의 접수 내용을 확인 • 피해 학생 조사 시 가급적 외부 성폭력 전문가를 동석시켜 조사 권장 • 피해 학생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지원 받도록 함 • 피해자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 • 피해자에게서 나온 모든 정보는 기록(녹음 등) • 학교장은 필요하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해 추가 피해자 확인	
	▶ 증거 확보 • 수사기관 신고와 동시에 증거 수집 등 수사가 이루어짐 •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수사를 위해 현장을 보존, 훼손하지 않음 •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법적 증거물을 채취해 두도록 권함(마음이 바뀔 수 있음)	
	- 조사 결과 보고	
심의	▶ 조사 결과 보고 • 최초면담 일지 및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학교장에 보고함 • 학교장은 성폭력 사안의 조사 결과를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보고함	
	▶ 보호자 통보 • 사안조사 결과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함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조치 이행	
사후 처리	- 결과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필요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서식V-6 / 329쪽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에 모두 보고 의무 • 피가해 학생 소속교가 다를 경우 피가해 소속 학교 모두 수립 보고 • 서식은 학교 상황에 따라 가감 변경 가능	

● 학생(피해자)-교직원(가해자)

절차	유형	유형													
		학생(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인지 및 상담		- 상담, 실태조사, 타 기관 통보 등으로 사안 파악													
신고 및 접수		- 학교폭력 전담기구 / 고충상담창구 접수 -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이내) - 수사기관 연계 (신고 의무가 있음) -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사안발생 보고 서식V-3 / 326쪽 • 피해학생이 발생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발생보고는 하지 않음 ※ 사건(통보, 신고)동의 확인서 작성(2023 폭력예방 운영 안내 p.136 양식 참고) - 보호자 통보 • 가족, 친구 관계 등 지지 자원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함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함													
초기대응		- 피해-가해 분리보호를 위해 가해교직원 즉시 분리, 수업배제 및 업무배제(최대 3일) - 피해자 긴급조치 가능(학교폭력예방법 16조) - 2차 피해 방지													
사안조사 (대면 조사가 원칙)		<table><tr><th>대상</th><th>주체</th><th>조사 내용</th></tr><tr><td>피해 학생</td><td>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td><td>•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말 등을 조사, 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同性)의 상담자와 상담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사과, 징계 등)</td></tr><tr><td>행위 교직원</td><td>성고충 상담창구 /상담원</td><td>•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td></tr><tr><td>목격자 등 제3자</td><td>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원 /성고충상담창구·상담원</td><td>•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td></tr></table>		대상	주체	조사 내용	피해 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말 등을 조사, 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同性)의 상담자와 상담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사과, 징계 등)	행위 교직원	성고충 상담창구 /상담원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	목격자 등 제3자	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원 /성고충상담창구·상담원	•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대상	주체	조사 내용												
	피해 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원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 말 등을 조사, 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기간, 피해 횟수, 피해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동성(同性)의 상담자와 상담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사과, 징계 등)												
	행위 교직원	성고충 상담창구 /상담원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 • 일회성 사안이 아닌 경우 발생 장소와 지속기간, 행위 횟수, 행위 정도를 모두 조사, 기록 •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												
목격자 등 제3자	학교폭력전담기구·소속교원 /성고충상담창구·상담원	• 당사자 간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 당사자로부터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필요함													
심의		<table><tr><th>대상</th><th>주체</th><th colspan="2">조치 내용</th></tr><tr><td>피해 학생</td><td>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td><td colspan="2">• 피해학생 보호조치 • 피해학생이 심의 원하지 않을 때 미개최동의서 받아 미개최 가능</td></tr><tr><td>행위 교직원</td><td>성고충심의위원회</td><td>• 성희롱·성폭력 여부 심의 • 가해 교직원 조치 결정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td><td>- 교육지원청에 심의 결과 보고 서식V-5 / 328쪽</td></tr></table>		대상	주체	조치 내용		피해 학생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보호조치 • 피해학생이 심의 원하지 않을 때 미개최동의서 받아 미개최 가능		행위 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여부 심의 • 가해 교직원 조치 결정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	- 교육지원청에 심의 결과 보고 서식V-5 / 328쪽
	대상	주체	조치 내용												
	피해 학생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 피해학생 보호조치 • 피해학생이 심의 원하지 않을 때 미개최동의서 받아 미개최 가능												
행위 교직원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여부 심의 • 가해 교직원 조치 결정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	- 교육지원청에 심의 결과 보고 서식V-5 / 328쪽												
결과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학생 조치 이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자 조치 사항 이행 조치 이행													
사후처리		- 결과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필요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서식V-6 / 329쪽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에 모두 보고 의무													

● 교직원(피해자)-교직원(가해자)

절차	유형	유형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인지 및 상담	- 상담, 실태조사, 타 기관 통보 등으로 사안 파악	
신고 및 접수	- 고충상담창구 정식 신고 접수 • 피해교직원 또는 대리인은 전화, 통신, 서면, 방문으로 성고충 상담창구 신청 •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피가해 소속교가 다른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인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상담·신고 가능 • 외부 성폭력상담 전문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구제절차 활용 • 신고는 성희롱 고충상담 신청서에 피해자가 날인 후 성고충 상담창구에 제출 • 신고서 접수 이전 면담기록은 상담기록이고 신고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 신고인이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때는 상담원 참관하에 구술로 신고 접수 • 신고인 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녹음이나 속기로 기록을 보존 -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사안발생 보고 서식V-3 / 326쪽 • 피해교직원이 발생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발생보고는 하지 않음 ※ 사건(통보, 신고)동의 확인서 작성(2023 폭력예방 운영 안내 p.136 양식 참고) - 가해자가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 일 경우 • 위계에 의한 성사안일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 피해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대리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 • 피해교직원이 수사기관 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음 •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피가해 소속교가 다른 경우, 관리자(교장, 교감, 행정실장)인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 운영	
초기대응	- 파·가해 교직원 분리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요청사항 수용 권장) - 상담을 통한 화해 여부 확인 ▶ 피해 직원이 행위(가해) 교직원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 행위(가해) 교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 • 행위(가해) 교직원의 합의 의사 여부를 확인 • 성고충 상담창구의 중재로 당사자 간 화해 ▶ 화해 중재 시 주의사항 • 중재 과정에서 행위(가해) 교직원과 피해 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 성급한 중재를 시도, 행위 교직원에게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 •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피해 교직원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 중재 - 2차 피해 방지	
사안조사	- 접수일 기준 20일 이내로 조사 완료(상황에 따라 10일 연장 가능) ▶ 사안 조사 시 유의 사항 • 피해 교직원이 원할 경우 고충 상담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 • 피해 교직원이 행위 교직원에게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 • 행위(가해) 교직원 상담 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부여 • 행위(가해) 교직원에게 대한 선입견 배제, 객관적, 공정한 자세와 언행을 조심 • 피해 및 행위 교직원 간의 사실관계에 내용 불일치 경우 제3자 목격담을 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함 - 학교 여건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 -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가능 -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학교장 보고	

절차	유형	유형																	
	교직원(피해자) - 교직원(가해자)																		
심의	-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 가해자가 관리자인 사안의 경우 교육지원청 상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교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개최를 통한 피해 보호 가능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피해교원 보호만 가능, 가해 교직원에 대한 조치 불가) - 피해 교직원 조치. 가해 교직원 조치																		
		<table><tr><th>구분</th><th>조치 사항</th><th>비고</th></tr><tr><td>피해 교직원 조치</td><td>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부서 전환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td><td> • 피해자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처리할 수 있음. </td></tr><tr><td>행위 교직원 조치</td><td> 1. 서면사과 2. 피해자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부서전환 5.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6. 인사조치 7.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8.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td><td>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의결 • 인사 조치 - 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전보나 계약해지 및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교직원의 경우 상급 기관에 인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사안이 위중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가능 </td></tr><tr><td>결과 조치</td><td colspan="3">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파·가해 교직원에게 서면 통보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심이 불가함 • 피해자가 결과 불수용 시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V-5 / 328쪽 - 성고충심의위원회 파·가해자 조치 사항 이행 </td></tr><tr><td>사후처리</td><td colspan="3"> - 결과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 교단 복귀 시에는 성폭력 교육 상담 전문기관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시행 의무 •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인 3, 4월에 실시 권장(신입 교직원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피해 교직원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지 않도록 계속적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서식V-6 / 329쪽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에 모두 보고 의무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학교 단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학내 상담창구 안내와 비밀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함 </td></tr></table>	구분	조치 사항	비고	피해 교직원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부서 전환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자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처리할 수 있음.	행위 교직원 조치	1. 서면사과 2. 피해자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부서전환 5.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6. 인사조치 7.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8.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의결 • 인사 조치 - 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전보나 계약해지 및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교직원의 경우 상급 기관에 인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사안이 위중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가능	결과 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파·가해 교직원에게 서면 통보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심이 불가함 • 피해자가 결과 불수용 시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V-5 / 328쪽 - 성고충심의위원회 파·가해자 조치 사항 이행			사후처리	- 결과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 교단 복귀 시에는 성폭력 교육 상담 전문기관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시행 의무 •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인 3, 4월에 실시 권장(신입 교직원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피해 교직원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지 않도록 계속적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서식V-6 / 329쪽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에 모두 보고 의무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학교 단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학내 상담창구 안내와 비밀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함		
	구분	조치 사항	비고																
피해 교직원 조치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 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부서 전환 5.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피해자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처리할 수 있음.																	
행위 교직원 조치	1. 서면사과 2. 피해자 및 신고·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부서전환 5.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6. 인사조치 7. 지원청 및 시·도교육청 보고 8.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 행위 교직원에 대한 조치는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심의의결 • 인사 조치 - 학교장이 임용권이 있는 교직원의 경우 전보나 계약해지 및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음. - 학교장이 임용권이 없는 교직원의 경우 상급 기관에 인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음. - 사안이 위중한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고발 가능																	
결과 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파·가해 교직원에게 서면 통보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재심이 불가함 • 피해자가 결과 불수용 시 개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V-5 / 328쪽 - 성고충심의위원회 파·가해자 조치 사항 이행																		
사후처리	- 결과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강등 이하 징계를 받은 교직원: 교단 복귀 시에는 성폭력 교육 상담 전문기관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시행 의무 • 신규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인 3, 4월에 실시 권장(신입 교직원 임용 후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 피해 교직원의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되지 않도록 계속적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서식V-6 / 329쪽 •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에 모두 보고 의무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학교 단위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학내 상담창구 안내와 비밀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하여 약속함																		

● 교직원(피해자)-학생(가해자)

절차	유형	유형
	교직원(피해자) - 학생(가해자)	
인지 및 상담	- 상담, 실태조사, 타 기관 통보 등으로 사안 파악	
신고 및 접수	- 고충상담창구 접수 - 교육(지원)청 보고(48시간 이내) -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사안발생 보고 서식V-3 / 326쪽 - 피해교직원이 발생보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발생보고는 하지 않음 ※ 사건(통보, 신고)동의 확인서 작성(2023 폭력예방 운영 안내 p.136 양식 참고) - 보호자 통보 - 사안 내용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보호자에게 통보함	
초기 대응	- 피해-가해 분리 - 가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교직원 보호조치 - 2차 피해 방지	
사안 조사	- 교직원: 성고충상담창구 (교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교권보호 관련부서) - 학생: 생활지도 담당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 교권보호 관련부서) ▶ 조사 시 유의점 -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분리하여 조사 - 사안 조사 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지킴 - 학생의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안 처리가 다른 관계유형에 비해 소홀히 다루지 않게 함	
심의	- 피해교직원이 개최를 원할 시 심의위원회로 개최 - 교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로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대체 가능 - 임의판단하지 말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절차 이행	
	구분	교원 피해 경우
	해당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교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해학생) or 교권보호위원회(피·가해)
		직원 피해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피해직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해학생)
결과 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피해교사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사항 이행 조치 -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교직원 조치 사항 이행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가해학생 조치 사항 이행 - 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서식V-5 / 328쪽	
사후처리	- 결과 조치 이행 모니터링 및 예방교육 - 필요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보고 서식V-6 / 329쪽 사안 발생 보고 3개월 이내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에 모두 보고 의무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부록

관련서식

학생 사안 처리 체크리스트

23-○차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체크 결과	서식
사 안 발 생	사실 확인	사건 정황·경위 파악	☐ 확인자[] 확인일[]	
	학생 지도	1차 면담 및 생활교육 실시	☐ 지도자[] 지도일[]	
	사안 접수	신고내용 '사안접수대장' 기록	☐ 보고자[] 보고일[]	[서식Ⅱ-6]사안접수대장
	사안 보고	학교장 보고	☐ 통지자[] 통지일[]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 기록자[] 기록일[]	
사 안 조 사	관련자 조사	사실 확인서 작성	☐ 확인자[] 확인일[]	[서식Ⅱ-2]학생자기변론서 [서식Ⅱ-3]목격자확인서 [서식Ⅱ-4]사실확인서
	입증 자료 수집	물증·증거 수집	☐ 예[] ☐ 부	
	조사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작성자[] 보고일[]	[서식Ⅱ-5]사안조사보고서
	조사 결과 통지	학교장 보고	☐ 보고자[] 보고일[]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상 정 여 부 결 정	상정 여부 협의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결정	☐ 상정 ☐ 미상정	
		징계 이외 지도방안 (미상정 시)	☐ 지도방안[]	
	학교장 재가	학교장의 상정 여부 결정(내부기안)	☐ 상정 ☐ 미상정	내부기안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단계	체크 사항	체크 항목	체크 결과	서식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위원 섭외 및 학부모(보호자) 참여 가능, 일시·장소 선정	☐ 수립	
	개최 안내·통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내부기안	☐ 기안자[] 결재일[]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 통지자[] 통지일[]	[서식Ⅱ-7]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서식Ⅱ-8]서면 의견서 [서식Ⅱ-16]수령확인서
	징계 심의	징계 조치 심의·의결	☐ 징계 ☐ 없음	[서식Ⅱ-11]징계 의결서
	학교장 재가	학교장의 징계 최종 결정	☐ 재가 ☐ 불허	내부기안 [서식Ⅱ-12]회의록 [서식Ⅱ-13]조치대장
	심의 결과 통지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 통지자[] 통지일[]	[서식Ⅱ-15]조치 결정 통지서
		불복절차 통지·안내	☐ 통지자[] 통지일[]	[서식Ⅱ-16]수령확인서
	징계 시행	이행 계획 수립	징계 조치 이행 계획 수립	☐ 수립
학습결손 대비책 마련			☐ 여[] ☐ 부	
이행 계획 통지		학교장 보고	☐ 보고자[] 보고일[]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서면 통지	☐ 통지자[] 통지일[]	[서식Ⅱ-14]이행 계획서
징계 조치 시행		조치별 징계 이행 여부	☐ 이행 ☐ 미이행	
징계 이행 보고		학교장 보고	☐ 보고자[] 보고일[]	내부기안
		관련 교사, 담임교사, 관련자 통지	☐ 통지자[] 통지일[]	
불복		징계 조치 불복 여부	☐ 수용 ☐ 불복	[서식Ⅱ-17]재심의 신청서 [서식Ⅱ-18]재심 청구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경기도교육청 165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66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학교 밖()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서식II-5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관련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 1부.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학부모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비고
생교 23-1	○○○순경 (○○경찰서)	2023.00.00. 00:00	○○○ (교사)	2023년 0월 0일 00시경 김○○, 박△△학생이 함께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자와 음료를 훔침	2023.00.00. 00:00 (유선)	2023.00.00. 00:00 (대면)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서식Ⅱ-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서 면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서식Ⅱ-9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시나리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사) 재적위원 8명 중 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학년도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에 ○항에 의거하여 교칙위반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학교-생교-20○○-○호 사안으로서 ○○○의 ○○○ 사안에 관한 심의 건입니다.	

2 제척, 회피 절차의 진행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제척,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회피 신청이 없는 경우]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위 원) 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 원) ○○○위원님께서 본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00조 제00항 제00호에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께서 이 사안을 심의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이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위 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00조 제00항 제00호 규정에 의거 ○○○위원은 제척(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제척(또는 회피)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위원님께서 귀가해(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위원 귀가 또는 대기)	제척·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회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

3 위원 주의사항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시간 부족할 경우 아래 3가지 주의사항 간단히 전달 또는 생략 가능) 첫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그리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위원님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생의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안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및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안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보고	(위원장) 그럼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경우 아래 4줄 생략 가능) (위원님께서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선도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께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교칙위반 사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시작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이루어진 후 심의진행을 권장함.
쟁점, 질의	(간사) 사안보고 사전 협의시의 사안 개요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사안 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사안 관련 내용 질의 응답	
대리인 (변호인) 참관 허용 여부 심의 (신청시)	(간 사) 본 사안 ○○○ 학생의 변호인이 본 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변호인 참석 여부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은 ○○○ 학생의 변호인 참석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학생의 변호인의 참석은 허용하되 변호인 별도의 질문은 하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주었으면 합니다. 단,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별도의 시간을 주어 변호인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변호인의 참석을 허락하되,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질의응답, 불복절차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관련 학생 학부모 (보호자) 입장 및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학생 및 보호자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관련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입장	보호자가 아닐 경우 참석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음.
	(위원장) 본 사안으로 학생은 물론 보호자께서도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기피신청	(위원장)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개의정족수 에는 포함되나 의결 에는 참여하지 못함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피 신청이 없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없습니다. (위원장) 네. 그럼,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하실 위원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학부모(보호자)) ○○○위원을 (~사유)로 기피 신청합니다. ☞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의 기피 신청 (학부모(보호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 사유를 바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를 위해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00조에 의거 ○○○위원이 기피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결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대리인)께서는 기피 여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실로 이동하여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에 의해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기실로 이동) (위원장) 이제부터 학부모(보호자)께서 신청하신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상호 협의) ☞ 위원 간 상호 협의 (위 원) ○○○위원은 “당일 흡연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으로서 본 사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다”라는 해당 학생 측의 기피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저 또한, 현장에서 지도했던 ○○○위원님이 해당 학생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피 여부 결정은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장)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피 여부 결정은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00조에 의거 기피 신청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위원님 기피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위원님에 대한 기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은 귀가(또는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분께서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을 다시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대리인 재입장)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선도와 회복 및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것입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신뢰해주시고,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리인 신청 학생 입실 때 만 안내(해당시) (위원장)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의 응답 전에 입회를 요청한 변호인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단, 변호인의 별도 질문을 받지 않으며,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질문에 대신 답을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되,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을 모두 마친 후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드리면 3분 이내로 변호인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밖에 위원회 진행과 절차에 관해 질문 있으십니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질문 사항 응답) (위원장)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해당 사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의사항의 경우 별도 유인물을 제작 안내 가능				
사안설명 및 사실여부 확인	(위원장)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칙 위반한 사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의 사안 설명 (사안 개요 및 경위) <table><tr><td>관 련 학 생</td><td>○ ○ 중</td><td>○ ○ ○</td><td>※ 사안일시 : 20○○년 4월 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경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td></tr></table> 이상입니다.	관 련 학 생	○ ○ 중	○ ○ ○	※ 사안일시 : 20○○년 4월 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경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	
관 련 학 생	○ ○ 중	○ ○ ○	※ 사안일시 : 20○○년 4월 경 - 20○○년 ○월 ○일 ○요일 점심시간 경 화장실에서 ○○와 함께 담배를 피운 사안입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장) 학생과 보호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 질의 응답 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추가자료 제출	
위원과 학생측 질의응답 및 의견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행위의 의도, 계기, 상황, 이유 등을 질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개전의 정, 앞으로의 다짐 등)관련 확인 -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학부모(보호자)를 통해서 가정상황, 학생심리상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을 확인 (위원 및 학생측 질의응답)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생을 먼저 퇴실 시키고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융통성있는 진행 필요
마지막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 진술  변호인 진술 3분 (해당 시) 이상으로 ○○학생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먼저 최종진술 후 학부모(보호자) 진술 등 상황에 맞게 진행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학생과 보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조치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불복절차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님께서 귀가하셔도 됩니다.	관련 학생측의 귀가 안내 불복절차에 관한 별도 유인물 제작·제공 가능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6 참고인 진술 (필요 시, 순서 변경 가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참고인 진술 및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간사분께서는 참고인○○○를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네, 알겠습니다. (참고인 입장) (위원장) 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의 출석 요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은 해당 학생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예시 1. 해당 학교 교직원: 해당 학교의 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안 관련 사실, 관련 학생의 교우관계, 사안 발생 이후 학교생활 태도,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상담사: 관련 학생의 심리상태 관련 등을 확인 3.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학생의 인지, 심리, 행동 특성 등을 확인 4. 다문화 교육 전문가: 다문화 학생의 언어 및 문화적 특성 등을 확인 5. 의사, 법률전문가 등도 필요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연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므로 참고인은 필요한 때에만 회의에 출석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회의에 참석하거나, 징계 결정에 관여하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위원장) 본 사안과 관련된 참고인(담임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등)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참고인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 ○○○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참고인 퇴장)	위원회 개최 이전 참고인 사전 조사 필요

7 안건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학생 선도조치 논의	(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중 및 선도 기준표를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반성정도, 선도가능성, 개전의 정, 앞으로의 다짐 등에 비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협의	위원들은 조치와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침

8

의결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의결 조치결정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의한 결과, 학교생활인권규정 ○○조 제○항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점, 학생이 ~ 반성하는 점, 학생이 ~ 다짐하는 점, 가정에서 ~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이유로 인해 ○○○○의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로 조치를 결정 (선도기준표 참조) 간사는 필요시 조치 이행 방법 및 집행 가능성,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조치 시간 결정	(위원장) 다음은 학생에 대해 내려진 선도조치의 이행 시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간 협의 ※ 조치 이행 시간 결정 <table><tr><th>조치</th><th>학교내외 봉사</th><th>사회 봉사</th><th>특별교육</th><th>출석정지</th><th>퇴학</th></tr><tr><td rowspan="2">이행 기간</td><td>()시간</td><td>()시간</td><td>()시간</td><td>()일</td><td>집행예정일 (년, 월, 일)</td></tr><tr><td></td><td></td><td></td><td></td><td>가정학습 부여 여부, 기간 결정</td></tr><tr><td>비고</td><td>2시간/일×5일=10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td><td>5시간/일×5일=25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td><td>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재량운영가능)</td><td>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td><td>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가능성이 열보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td></tr></table> (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상정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00조에 의거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로 ‘사회봉사 4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 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번호 23-00호 ○○○학생의 징계(선도) 조치로 학생생활인권규정 제00조에 의거 ○, ‘사회봉사 4시간’으로 의결합니다. (땡땡땡) (위원장) 위원분들께서는 위원회 종료 후 본 위원회 의결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학교내외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이행 기간	()시간	()시간	()시간	()일	집행예정일 (년, 월, 일)					가정학습 부여 여부, 기간 결정	비고	2시간/일×5일=10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	5시간/일×5일=25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	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재량운영가능)	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가능성이 열보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	학생의 학습결손을 고려하여 결정
조치	학교내외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이행 기간	()시간	()시간	()시간	()일	집행예정일 (년, 월, 일)																				
					가정학습 부여 여부, 기간 결정																				
비고	2시간/일×5일=10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	5시간/일×5일=25시간 이내 (일수재량운영가능)	30시간 이내 (6시간/일×5일) (일수재량운영가능)	10일 이내/회, 30일 이내/연간	학교장 조치 전 10일 이내 가정학습 가능 (단, 미인정결석처리) <가정학습 기간 중 반성 선도가능성이 열보일 시 퇴학 조치 취소 가능>																				

9

폐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폐회	(위원장) 지금까지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모두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땡땡땡) (위원장)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의결서 서명	(‘징계 의결서’ 위원 서명)	징계 조치 확인 후 ‘징계 의결서’ 서명

기피 신청서

* 사안번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주소						
신청내용	기피대상자						
	신청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0.00.00. (서명 또는 인) 000학생 보호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서식II-1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제○회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의결서

성명	학년 / 반	의결 사항		
		징계내용	징계 수준	비고
김○○	○ / ○	특별교육 이수	○시간	
이○○	○ / ○	학교 내의 봉사	○시간	

위 조치의결 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직책	성명	서명(날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제척, 기피, 회피 절차의 진행 3.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전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자: 간사 ○○○

서식II-1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사안 번호	학년 / 반	성명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이행 여부
생교 23-1	○ / ○	○○○	학교 내의 봉사	5시간	2023.00.00. ~ 2023.00.00.	흡연	

[참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공개 문서로 관련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보존기간(00후 0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 이행 계획서

사안 번호	생교 23-○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사항	① 흡연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② 반복적으로 흡연을 한 학생		
대상 학생 (학년 / 반)					
○○○ (○ - ○)	징계 이행(시행) 계획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학교내의 봉사	○시간	20 .00.00. ~20 .00.00., 방과후 ○시간씩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부 (교사 ○○○)
○○○ (○ - ○)	징계 이행(시행) 계획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특별교육 이수	○시간	20 .00.00., 10:00 ~ 12:00	상담	○○학교 / 위클래스 (교사 ○○○)
○○○ (○ - ○)	징계 이행(시행) 계획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 시간	방법	징계 기관 / 부서 (담당자)
	출석정지	2일	20 .00.00. ~20 .00.00., 시험기간 제외	과제 부여 후 가정학습 실시 (가정학습프로그램)	○○부 (교사 ○○○)
※ 징계내용과 수준은 변경 불가. 단, 징계 기간 및 기관 등은 학교 및 기관의 여건상 변동될 수 있음					

서식II-15

조치결정 통지서

OO학교생활인권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000, ☎ 000-000-000)			
20 . . .			
OO초·중·고등학교장 (직인)			

수령 확인서

서류명	
수령인 성명	
수령인 주소	
연락처	
수령 장소	
확인 내용	
년 월 일 학생명 :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식II-17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관계	본 인 () 보호자 ()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학교 ()학년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 참고사항: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						

재심 청구서

					접 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 구 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 소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학 생	성명		소속	()학교 ()학년 ()반		
피청구 인	학교명	()학교		소재지	()시	학교장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심 청구인)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생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주 소	
보호자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관 계	

상기 본인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사회봉사 의뢰 기관 특별교육 의뢰 기관		
② 이용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수집·활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학교, 사회봉사의뢰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③ 제공 항목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보호자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작성일 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서류 보유 기간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사회봉사 의뢰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학 교 명		학 번	
학 교 정 보	담당교사		연 락 처	
	담 임		연 락 처	
보 호 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 락 처		연 락 처	
의뢰 신청	○ 대상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의뢰인 의견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교 상담 내용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상기와 같이 사회봉사를 의뢰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사회봉사 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초·중·고등학교장				

서식II-21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학번	생년월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 시간	선도처분	연락처
1	(예시) 0-0	00000000	000	20 0000 ~ 0000(0일간)	25	사회봉사	담임 : 000-0000-000 부모 : 000-0000-000 학생 : 000-0000-000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봉사 2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봉사 3일	날짜 : 20 년 월 일 요일 담당자 (서명)	상	중	하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예 00:00-00:00)		
	참여 및 협력 정도			
	성실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			
	종합의견란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초·중·고등학교장 귀하

특별교육 의뢰서

1. 학교

학교명		학교 연락처	
담당교사		담당교사긴급번호	

2. 학생/학부모 정보

학생교육 ()			학부모교육 ()		
의뢰기간			의뢰기간		
학생성명		성별 : 남/여	학부모성명		성별 : 남/여
학년반			학생성명 (학년반)	학년 반	
학생/학부모	주소 : 전화번호 : 학부모(				

3. 특별교육 의뢰 사유

학교폭력	유형: (조치유형 : 호)
선도조치	사안: (조치유형 : 호)
교육활동침해	유형: (조치유형 : 호)
분류	☐ 학교폭력유형 : ()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선도조치사안 : () (※ 흡연 / 음주 / 절도 / 기물파손 / 시험부정행위 / 징계중 교칙위반 / 지각, 미인정결석 등 출결관련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 교육활동침해유형 : ()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모욕 / 손괴 / 성범죄 / 기타[이외 유형이거나 복수유형인 경우])
참고사항	
상기인을 기관에 특별교육이수를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II-23

특별교육이수 결과 보고서

(※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 기관 이외의 기관 위탁 및 프로그램 참가시 변형하여 사용 가능)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학 교	
		학 번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3. 프로그램 내용

순	일시	프로그램 활동 내용	출결여부
1			
2			
3			
4			
5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특별교육 이수 확인증

※ 본 기관에서는 학교에서 특별교육이수를 위탁 받은 결과 그 이수 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담당자 기관연락처	
학생교육() 1)~3)표기	1)학교명		2)학생 학년반	학년 반
학부모교육() 1)~4)모두표기	3)학생성명		4)학부모성명	
학교에서 의뢰한 기간 및 시간	학생	20 . . . () ~ 20 . . . () 총()시간		
	학부모	20 . . . () 00:00 ~ 00:00 총()시간		
특별교육 의뢰사안	학교폭력 조치유형()호 / 선도 조치유형()호 교육활동침해 조치유형()호 중 사유기재			
교육평가 및 참고사항				
교육 이수시간	학생	20 . . . () ~ 20 . . . () 총()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우수 / 보통 / 미흡	
	학부모	20 . . . () 00:00 ~ 00:00 총()시간		
		이수 / 미이수 / 부분이수		
위와 같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장 (직인)				

※ 본교에서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의 특별교육이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학교확인란	20
	학교장 (직인)

서식Ⅱ-25

※ 화해중재 신청서(학교용)

화해중재 신청서

학교명	담당자	김○○	연락처	000-000-0000
○○초	신청일	2023.0.0	사안명 (사안번호)	
신청 영역	☐ 학교폭력 ☐ 학생인권 침해 ☐ 교육활동 침해			

구분	신분	학교	성명	성별	비고
관 련 자					
사안 주요 내용					
주요 쟁점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 노력	해결 과정	〈있을 경우 기재〉			
	현재 상황				
중재 요청사항					
예비 중재 일시 장소	희망일시 (1지망)	월	일	00:00	장소:
	희망일시 (2지망)	월	일	00:00	장소:
비 고					

화해중재 참여 동의서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 반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보호자	성명		관계		휴대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적 : 화해중재 참여
- 수집항목 : 학생 생년월일, 학적사항,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 보유기간 : 당해학교 재학 기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재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여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중재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자료는 비밀을 지키고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학생 : (서명)

서식II-27

※ 화해중재 참여 동의서 (교사용)

화해중재 참여 동의서

교사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적 : 화해중재 참여
- 수집항목 : 생년월일, 학적사항, 연락처
- 보유기간 : 학교 재직 기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재에 참여하고, 그 결과로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여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중재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자료는 비밀을 지키고 외부로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교사 : (서명)

화해중재 참여 안내문

학부모님/○○학생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 사안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학부모님과 자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사안에 대한 엄정한 사안처리와 더불어 해당 사안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느냐의 문제는 사안 당사자의 회복과 성장,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잘못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끝내지 않고, 사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떤 피해와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책임을 분명하게 지도록 기회를 만들고, 이후 재발 방지와 관계 회복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은 학교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해가기 위한 교육적 접근이며, 우리 스스로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이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00학교 화해중재 모임 안내

□ 일시 및 장소(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학생명)
□ 예비중재			
□ 본중재			
□ 사후중재			

※ 가급적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중재 실시 가능합니다.

년 월 일

00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서식Ⅱ-29

※ [예시]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변경하여 사용

화해중재 협의록

작성일			기록자	
학교명				
담당자		연락처		
중재 사안번호				
구분	☐ 예비중재 ☐ 본중재 ☐ 기타			
일시				
장소				
참석 자	관련자			
	중재위원			
주요 협의 내용				
향후 추진 사항				

화해중재 합의문

학교명		중재 사안번호	
일시		장소	
당사자	성명	성명	성명

우리는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 본 합의문의 약정내용은 년 월 일까지 모두 이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_____ (서명)	(당사자) _____ (서명)
(당사자) _____ (서명)	(당사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위원 _____ (서명)

00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서식II-31

※ [예시]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변경하여 사용

화해중재단 활동 보고서

작성일		중재 사안번호		중재위원명	
학교명			중재일시		
구분	☐ 예비중재 ☐ 본중재 ☐ 기타				
본중재 시 성립여부	성립 / 불성립	불성립시 사유			
활동 내용 및 중재 의견					

순	영역	관련근거	편성기준	관련 법교과 주제																																
1	학교안전 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안전교육)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학생들, 학생, 학생교육, 시간, 등, 등수 <table><tr><th>구분</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h>특수교육</th><th>평생교육</th><th>교육지원청</th><th>교육지원청</th></tr><tr><td>초</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r><tr><td>중</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r><tr><td>고</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r></tabl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평생교육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	12	12	12	12	12	12	12	중	12	12	12	12	12	12	12	고	12	12	12	12	12	12	12	1. 안전,건강교육 2. 인성교육 3. 인권교육 등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평생교육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	12	12	12	12	12	12	12																													
중	12	12	12	12	12	12	12																													
고	12	12	12	12	12	12	12																													
2	아동안전 교육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table><tr><th>구분</th><th>초등학교</th><th>중학교</th><th>고등학교</th><th>특수교육</th><th>평생교육</th><th>교육지원청</th><th>교육지원청</th></tr><tr><td>초</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r><tr><td>중</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r><tr><td>고</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d>12</td></tr></table>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평생교육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	12	12	12	12	12	12	12	중	12	12	12	12	12	12	12	고	12	12	12	12	12	12	12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육	평생교육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초	12	12	12	12	12	12	12																													
중	12	12	12	12	12	12	12																													
고	12	12	12	12	12	12	12																													
3	성폭력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매년 1회 1시간 이상																																	
4	성매매 예방교육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매매 예방교육)	중등학생 대상 매년 1회 1시간 이상																																	
5	성희롱 예방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교직원 대상 매년 1회 1시간 이상																																	
6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매년 1회 1시간 이상																																	
7	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과 통합 편성운영 가능																																
8	자살예방 교육	• 「경기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연간 6시간 이상 확대 실시(교육부 권장사항)																																	
9	성교육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3조	연간 20시간 이상 확보(단, 코로나로 인해 14시간 이상 확보)																																	
10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 8 •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학기당 1회																																	
11	학생인권 교육	•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학기당 2시간 이상																																	
12	노동인권 교육	•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 제11조	중등학생 대상 매년 2시간 이상																																	
1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 ()학교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연락처) 또는 신고기관	신고내용	접수 사실 통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작성자 (책임 교사)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2023-1			예시) 2000. 0. 0. 00시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000학생이 000 학생을 폭행	예시) 1.3.(금) 15:00 교사 김00이 정△△의 어머니에게 유선 통화	예시) 1.3.(금) 15:20 교사 김00이 박△△의 아버지에게 유선 통화	분리 시행	
2023-2						분리 미시행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2023-3							

[참고] 사안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 사안 번호: (학교에서 작성,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의 사안 번호)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를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최대 3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종료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초일 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2023 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한셀양식에 작성_양식 변경 금지)

□ 시트1-사안기본정보

학교명(사안접수번호)		행복초등학교 2023-000호 ※정식 학교명칭으로 기재(○○초등학교-○/ ○○초, ○○초교-x)									
접수일시	교감		책임교사		신고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성명	관계					
2023.0.0.00:00	전교감	010-1234-5678	전책임	010-2233-4455	전신고	010-3333-4444					
발생일시		발생일시(불특정할 경우)									
2023.0.0.00:00		발생일시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 (예시) 2023년 0월 0일 18시경									
학교폭력 발생유형(※중복체크 가능하며 해당란에 '1'입력)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폭력	기타	
	1		1					1			
피해상황											
행복병원 입원 치료 중, 타박상 및 손목 골절, 현금 2만원 빼앗김, 따돌림에 의한 정신적 피해											
사안 내용 및 경위											
사안 내용 및 경위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2023.3.2.(목) 15:20경 : 행복초 5-2 김가해(여)는 같은 반 정피해(여) 학생이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소망초 6-2 최가해(남)와 사귀다는 말을 한 것을 소망초 6-4 이가해(여)를 통해 들었음 • 2023.3.3.(금) 18:30경 : 중앙공원에서 김가해는 할 말이 있다며 정피해를 문자로 불러내 이가해, 최가해와 함께 사실을 확인하려고 함 • 2023.3.3.(금) 19:00경 : 김가해는 정피해가 나오자 평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 사실 여부와 이유를 따져 물었으나 정피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함 • 2023.3.3.(금) 19:30경 : 정피해가 거짓말을 한다며 같이 있던 이가해, 최가해와 함께 3명이 손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방치함 • 2023.3.3.(금) 19:40경 : 지나던 주민이 쓰러진 정피해를 발견하고 행복병원으로 후송함 • 2023.3.3.(금) 20:10경 : 담임교사가 사실을 알고 학부모(보호자)에 연락, 교감선생님께 보고하고 병원으로 가서 피해학생을 면담한 후 사실을 인지 • 2023.3.3.(금) 20:40경 : 김가해, 이가해, 최가해로부터 가해 사실을 확인함 • 2023.3.6.(월) 08:30경 : 가해학생을 조사하고 진술을 확보 후, 전문상담교사에 의뢰 심리검사 및 상담 조치 • 2023.3.6.(월) 16:30 현재 : 피해학생은 쓰러지며 왼팔 골절과 타박상으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피해 학부모(보호자)가 경찰에 고소하였음										
기타 사항	• 경찰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보호자)를 조사 중 ※ 고소 및 소송 여부 등 기재 ※ 성범죄 사안의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학교전담경찰관 또는 112) 신고(신고 일시 기재)										

□ 시트2-관련학생

학교명	성명	학 년	반	번 호	성 별	가피 여부 ①	분리내용 ②	분리일 ③	분리비고 (미시행시 사유기재) ④	보호자 통보일자	다문화	장애 학생	탈북 학생	학생선수				화해 중재 여부	타 학교 통보 여부	타학 교통보 내용 ⑤	특이 사항 비고
														종목	생년 월일	지도 자 성명	통보 여부				
행복 초등 학교	최○○	5	2	22	남	가해	학교내 분리	3일		2023-03-03		1		농구	2012-05-03	나지 도	1	1	1		
소망 초등 학교	정○○	5	2	12	여	피해				2023-03-03	1	1					1	1			
기타 초등 학교	이○○	6	2	10	여	피가해	가정 분리	2일		2023-03-03	1		1						1		

[참고]

-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48시간 이내 보고)
-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한셀양식(시트1, 시트2)에 작성하여 보고하며 양식은 임의 변경 금지

[작성시 유의사항]

- 학교명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예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① 가피여부는 가해, 피해, 피가해로 구분 작성
- ② 분리내용은 학교내 분리, 가정분리, 기타로 구분 작성
- ③ 분리일은 1일, 2일, 3일로 구분 작성
- ④ 분리비고(미시행시 사유기재)는 ‘피해학생 반대 의사 표명’, ‘교육활동 중이 아님’,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중 선택 기재
- ⑤ 타학교 통보여부-통보일시, 방법, 받은이, 연락처 등 기재
- 다문화, 장애학생, 탈북학생은 중복체크 가능하며 ‘1’로 표시

서식Ⅲ-4

학교폭력 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학교폭력 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행복중학교 /○○교육지원청	작성자 : 직(책임교사, 장학사), 031-243-○○○○, 010-123-○○○○	성명 : 김 교 사
	보고자 : 직(교장, 교육장)	성명 : 이 교 장

- ☐ 언론사명 :
☐ 보도제목 및 보도일자:
☐ 보도내용(요약) :

☐ 사안 개요

○ 개요 :

- (일시 및 장소) 2023. 3. 17.(금) 17:30, 상가건물 옥상 ※최초 발생일 기준
- (관련 학생) 피해 - 김피해(2학년, 15세), 가해 - 이가해(2학년), 박추가(3학년), 김폭력(3학년)
- (폭력 유형)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력 ※해당폭력 유형 모두 기재
- (사안 요지) ※내용(육하원칙), 폭력형태(집단폭력/일대일폭력), 발생 및 지속기간(1회/지속성) 등 포함

예시) 방과 후 김피해가 3명의 동학년 학생과 이야기 하다 상가건물 옥상에서 수차례(얼굴, 가슴, 다리 등 10회 내외) 폭행당함.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 중으로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지함. 사안 발생 수일 전 카톡에 김피해에 대한 집단 폭행 모의함.

○ 사안 경과 ※시간순 기재

일시	내 용
3.17.(금) 17:30	■ 3명의 동학년 학생이 김피해 집단폭행 ■ 김피해 학생 병원 입원
3.20.(월) 10:00	■ 학교 내 집단 폭력 발생 신고 접수(학부모)
3.21.(화) 17:00	■ 관련 학생 조사, 언론 취재

○ 조치 사항

- (학교) 경찰 신고 접수 및 심리 상담 실시(교육지원청 연계)
- (교육지원청) 심리상담 현장 지원(Wee 센터), 지역 경찰서 정보공유
- ※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사안보고를 검토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치를 추가 기재한 후 보고 교육지원청 사안보고서 작성자는 담당장학사, 보고자는 교육장임

☐ 현재 상황

- (피해 상황) 신체적 피해 높음(전치 4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등을 높음, 보통, 낮음을 수치와 함께 기재
- (학교 상황)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관련 사항 조사 중(~2023.3.24.)
 - 피해학생 학부모와 가해학생 학부모 간 대화 진행

☐ 향후 계획

- (학교)
 - (상담 및 모니터링) 피해학생 상담 및 병원 입원(10일) 치료 지원 및 지속적인 학생 모니터링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 발송(2023.3.29)
- (교육지원청)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결정)※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필수기재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내학교 대상 예방교육 실시 안내 및 지역 유관기관 연계 지속지원 예정

[참고] 언론보도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피해,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대상학생	학년 / 반	-	성명	
사안 개요 (조치원인)	※ 접수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간략히 기재			
조치 내용	피해학생	조치 사항	제16조1항제1호, 제2호, 제6호 조치(가능)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가해학생	조치 사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조치 가능 (제5호, 제6호는 동시 부과 가능)	
		법적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조치일자	2023년 월 일			
긴급 조치의 필요성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청취 여부	① 의견청취 완료 (일시: _____, 방법: _____) ②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지	통지일자	2023. . .		
	통지방법	유선연락		
작성자 : _____ 확인자 : _____ 학교장				

[참고]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법률 제16조제1항에 의거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아야 함
- 출석정지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의견청취는 필수 절차임. 이때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님

서식III-6

학생 확인서

관련학생(피해,가해,목격) 확인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예시> - 누가(가해학생은) - 언제(= 일시, 횟수(번, 회) 또는 빈도(하루 몇 회, 주 몇 회)) - 어디서 - 누구에게(피해학생에게) -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위유형)하였고/하여/ 이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고 함					
필요한 도움					
작성일	2023년 ____월 ____일		작성 학생	(서명)	

보호자 확인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1.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사안 해결을 위해 학교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 인지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신체적 - 정신적 -			
자녀관 련 정보	교우 관계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실제로 밝혀진 것 외에도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녀 확인 내용	(사안에 대해 자녀가 보호자에게 말한 것)			
현재까지의 보호자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특이점, 성격 등)			
현재 보호자의 심정		(어려운 점 등)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엄정한 사안처리와 더불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단위학교 관계회복프로그램 및 화해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보호자 의견, 바라는 점		(예시) 1. 단위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련안내 및 참여 2. 화해중재 관련안내 및 참여 등			
작성일	2023년 ____월 ____일		작성자	(서명)	

[참고]

-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사안 조사, 전담기구 심의 근거자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보고 자료이므로 가급적 반드시 작성
-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적절한 요구를 취할 수 있도록 각 절차(1. 학교장 자체해결, 2. 단위학교 관계회복 프로그램, 화해중재 신청, 3.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함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서식Ⅲ-8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접수 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 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피해학생별 가해관련 학생 명시 (피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피해 관련 학생		가해 관련 학생
	이삼월		김일월
	박이월		차사월, 백오월
※ 피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피해관련 학생별 가해 학생을 구분하여 명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2023.3.2.(목) 2~3반 2교시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B학생(남)이 A학생(남)의 볼을 빼앗기 위하여 테클을 함. A학생이 B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화가 난 A학생은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B학생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는, 발로 B학생의 옆구리를 5~6차례 밟음. 이를 발견한 체육교사에 의하여 상황 종료 • 2023.3.2.(목) 체육교사가 전담기구에 알려 사안 접수 • 2023.3.3.(금) 전담기구에서 관련학생에 대한 조사 • 2023.3.6.(월) B학생의 보호자가 전담기구에 상해진단서(4주 진단)를 제출 • 2023.3.6.(월) K중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제2호(일시보호) 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제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함 • 2023.3.7.(화) A학생의 보호자와 B학생의 보호자 간 치료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고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치료비용, 향후 치료비용,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서 작성) • 2023.3.10.(금)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심의, 요건 미충족 • 2023.3.3.(금) ~3.10.(금) B학생은 집에서 일시보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이사 표명()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객관적 요건(4가지) 충족 여부(O/X) ※ 4가지 요건 : ▲ 진단서 미제출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함 ▲ 지속적이지 않음 ▲ 보복행위가 아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자체해결 동의 여부(O/X)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 작성날짜 포함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	
	주요 쟁점 2.	※ 위와 동일	근거자료 ※ 작성날짜 포함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학교는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 화해중재 참여여부	(예시) - 2023.3.2.(목), 양측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2023.3.3.(금), 피해학생측 거부 의사(유선, 메시지 등) - 2023.3.6.(월), 1차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학부모, 학생, 담임교사, 책임교사, 교감 등) - 2023.3.14.(화), 1차 화해중재단 중재 진행(학부모, 학생, 화해중재단 등) - 2023.3.22.(수), 2차 화해중재단 중재 진행(학부모, 학생, 화해중재단 등)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예시) 제16조 제1항 제1호	
	가해학생	(예시) 제17조 제1항 제2호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횡수 기재 (예시) ① 2022-000호(제17조 제1항 제6호 5일,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② 2022-000호(제17조 제1항 제3호 10시간, 제17조 제3항 학생 특별교육 5시간) 총2회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관련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경찰 수사여부 등 특이사항 기재 •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 [참고1]을 확인하여 상기 확인 내용란에 구체적으로 기재
- [참고2,3]도 반드시 확인

[참고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사항	관련 자료 및 참고 사항
1. 심각성 판단 요소	진단서 제출 여부 등
2. 지속성 판단 요소	전담기구 심의 결과 등
3. 고의성 판단 요소	피·가해학생, 목격학생 확인서 등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가해학생 면담조사 등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고소, 고발 및 합의서 여부 등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판단 요소	학교폭력 재발 여부 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특수교사의 의견 청취 등

[참고2]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에 의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결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2.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확인 시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판단사항	작성 시 참고 사항
1. 심각성 판단 요소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인지, 피해학생의 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2. 지속성 판단 요소	전담기구 심의결과, 해당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및 횟수
3. 고의성 판단 요소	이전에 피해학생과 마찰이 있었는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음에도 행사한 것인지, 교사의 지도가 있음에도 그렇게 행동했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는지 등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전담기구 조사 협조 여부,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고소·고발 여부, 화해가 되었는지,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조정 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등
6.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판단 요소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을 받은 적이 있는지, 평소의 생활 태도, 사안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해당조치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지 등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장애유형(영역) 및 정도 등

- [참고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의거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결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직접 서명을 받은 후 결재를 올릴 경우 참석 구성원 등록부 미첨부)

○○○ ○○○ ○○○ ○○○
○○○ ○○○ ○○○ ○○○

4. 심의 주제 : 사안번호 2023-00호 ()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5. 심의 내용

※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
-
-

※ 필수 확인 사항

-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판단하여 해당 여부 체크
- 이행복(피해관련 학생 1)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충족) 여부 충족(O), 미충족(X)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행복(피해관련 학생 2)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충족) 여부 충족(O), 미충족(X)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6. 결정 사항(예시)

- 제13조의2 제1항에 충족함으로 피해 관련 학부모에게 의사 확인 후 학교장의 자체 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함
- 제13조의2 제1항에 충족하지 못하는바, 학교장의 자체해결 불가로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함

[참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내부결재)시 첨부
- 피해관련 학생이 여러명일 경우 피해관련 학생별로 각각 4가지 요건 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학부모 부동의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시 필수 첨부 서류임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위 사안 조사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학생: (인) 피해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참고]

- 피해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개인별 작성
-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필요 없음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피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사안 조사 내용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사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된 결과를 기록 (예: 객관적 요건(4가지) 충족 여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여부, 양자 간에 화해,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적용 등의 내용)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 가해학생이 사과를 하였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용서함 • 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첨부 • 재산상의 피해가 없음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음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님 • 가해학생 교육 선도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활동 이행 예정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서식Ⅲ-1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보호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청사유	<table border="1"> <thead> <tr> <th>요건</th> <th>해당 여부 (O, X)</th> </tr> </thead> <tbody> <tr> <td>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td> <td></td> </tr> <tr> <td>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td> <td></td> </tr> </tbody> </table>			요건	해당 여부 (O, X)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요건	해당 여부 (O, X)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00.0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참고]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개최 요구 공문에 첨부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이 사안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합니다. 2023. . .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참고]

- 해당 요청서는 학교장이 접수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 공문에 첨부함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하였으나 교육지원청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취소를 요청할 때 필수 서식

[추가서식]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종결 보고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1. 일 시 : 년 월 일(요일) 시 분

2. 장 소 :

3. 참 석 자

○ ○ ○ ○ ○ ○ ○ ○ ○ ○ ○ ○
○ ○ ○ ○ ○ ○ ○ ○ ○ ○ ○ ○

4. 회의 주제 : 사안번호 2023-00호 ()에 대한 학교폭력 아닌 사안인지 여부 확인

5. 회의 내용

※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
-
-

※ 필수 확인 사항

학교폭력 아닌 사안으로 종결 가능한 경우	해당(충족) 여부 충족(O), 미충족(X)
1.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2.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3.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6. 확인 사항

-
-

[참고]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아닌 사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보고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신청인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동의합니다.

2023.00.00.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참고]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서(본 양식)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서식Ⅲ-15

[발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예시)

○○학교

수신 ○○교육지원청(○○과)

(경유)

제목 [심의요청] ○○중 2023-0호 사안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1. 관련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나. ○○학교-0000(2023.00.00.)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 기안번호

2. ○○중 2023-0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학교 사안번호	학생선수 여부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피해학생	○○중학교	3-1	○○○	○○중 2023-1		예시
가해학생	○○중학교	3-1	○○○	○○중 2023-1	√	학생선수의 생년월일
가해학생	○○고등학교	1-2	○○○	○○고 2023-2		예시

붙임 1. 피해·가해학생 확인서 ○부.

2. 보호자 확인서 ○부.

3. 목격학생 확인서 ○부.

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1부.

5. 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부.

6.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부.

7.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지 이상)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822(2022.8.3.) 참조, 학생선수가 아닐 경우 필요하지 않음

8.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끝.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협조자 (학생선수 사안일 경우 학생선수 담당자 협조 결재)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교육(지원)청에서 제공한 한셀양식에 작성_양식 변경 금지)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연번	사안번호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우편번호) 주 소

[참고]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시,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2000학년도 입학생)

인적사항				조치 일자	졸업 예정일 (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유보 조치 포함)	졸업 2년 후 삭제 사항	
학년	반	번호	성명				전담기구 심의 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삭제 시기(월)
6	1		A	2023.3.12	2024. 2	제3호		
6	1		A	2023. 6.23	2024. 2	제1호· 제2호· 제3호		
6	1		A	2023. 8. 4.	2024. 2	제2호· 제5호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제5호는 심의 대상 아님)	2026 2.
6	4		B	2023. 12.12.	2024. 2	제1호· 제7호 (제1호 기재유보)	(졸업학년도 2월말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제7호는 심의 대상 아님)	

[참고]

- 보존기간: 졸업 후 2년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기재
-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련 내용을 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2000학년도 입학생)

인적사항				조치일자 (이행기간)	조치사항	이행 완료일	비고
학년	반	번호	성명				
3	1	25	김삿갓	2023.4.5. (2023.00.00)	제1호	2023.00.00.	
3	2		홍길동	2023.5.12. (2023.00.00)	제3호	2023.00.00.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음

※ 조치일자는 교육장 내부결재일(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통보함)

※ 조치이행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란에 취소선을 그음

※ 보존기간: 졸업학년도 2월말에 폐기

[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가해학생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이행한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서식Ⅲ-19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학교 2023-()호

학 생	성명	(남 / 여)				
	주소					
	소속	학교	학년	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유]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학교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3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1.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2. 2023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전담기구 구성원수: 6명(예시)

구성원	교원	학부모	비고
구성 방법	학교장 임명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자 중 학교장 위촉	
인원수	4명	2명	학부모구성원 1/3 이상

※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구성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임(학부모 결원 시 학운위 추천과정 필수)

나.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 1년(예시)

다. 구성 시기: 학기말(2월말) 또는 3월 개학과 동시

라. 전담기구 구성원 명부 및 역할: (붙임2) 참조

마. 심의방법: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여 인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바. 역할

-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 2)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요건 충족여부 심의
- 3)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련 대장 관리
- 4)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및 미삭제 학생 졸업 2년 후 삭제 대상 명단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알림
- 5) 집중 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 6) 학교폭력 실태조사
- 7)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사. 본 공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 붙임 1.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구성원 추천서 1부.
2. 202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명부 1부.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1부.
4.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위촉장 1부. 끝.

★	교사(중등)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	() 접수	()
우			/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비공개(5,6)

[참고]

- 전 학교 본 공문 생산 필수(구성원 임기 1년 권장)
- 본 공문으로 '전담기구 구성·운영 계획'을 대체할 수 있음

서식Ⅲ-21

담임교사 의견서(참고서식)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담 임 교 사 의 견 서

소속 :

이름 : (인)

년 월 일

[참고]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학교상황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음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생(자 기) 의 견 서 (자필)

학년 반 이름 (인)

[illegible]

[참고]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학교상황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음

○○학교

수 신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개최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심의)

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에 대한 삭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3.00.00(요일) 16:00 ~
나. 장소: 도서실
다. 참석대상: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
라. 안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심의
 - 1) 심의 대상학생: (붙임) 참조
 - 2) 심의기준
 - 졸업 직후 삭제 대상(심의 없이 삭제함): 1호, 2호, 3호
 - 4호, 5호, 6호, 7호는 졸업 후 2년 뒤 삭제 대상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삭제 가능
 - 8호는 심의 삭제 대상이 아니며 졸업 2년 후 삭제해야 함.

- 붙임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삭제 심의 대상자 명단 ○부.
2. (현)학습 담임교사 의견서 ○부.
3.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부.
4. 부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부.
5. 부가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보호자) ○부.
6.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부. 끝.

[참고]

-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는 외부기관에서 제공된 확인서 또는 내부 계획에 의해 이행된 이수 확인서 첨부
- 2023.2.28.이전 신고된 사안으로 받은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2023.3.1.이후 신고된 사안으로 받은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2023.3.1.이후 신고된 사안으로 받은 제8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
-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조치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였을 경우 전담기구 심의 대상 아님
 - 졸업학년도 2월 말 기준 6개월 이내 조치를 받은 경우, 재학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심의 보고서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건 및 조치 개요	(학교폭력 사건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사항, 분쟁조정 및 소송 현황 등)				
조치사항 이행 현황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등)				
유사사례 재발여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 가해 유사사례가 재발한 경우 사실관계 기재 등)				
조치 이후 학교 생활 의 성실 성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지도를 잘 따르는지 여부 등)			
	학교생활 충실성	(출결상황, 수업참여태도, 과제이행 등)			
	학교 및 학급규칙 준수	(학교생활교육구성원회 회부 여부, 벌점 등)			
	교우관계	(교우관계)			
피해학생과의 관계	(피해학생 피해회복 및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관계회복 여부, 피해학생 측의 의견 등)				
담임교사 소견					
기타 관계자 소견	(학생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기타	(학교폭력 예방 노력, 기타 선행사례 등)				

※ 본 서식은 참고용으로 학교상황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음.

서식Ⅲ-25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 결과 보고(예시)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 결과 보고

1. 관련

가. 「초·등·중·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나. ○○학교-0000(2023.00.00.) ※ 학교폭력 전담기구(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개최 내부결재 공문번호

2.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붙임 1.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서(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1부.
2. 2023 학교폭력 기재내용(제1호,제2호,제3호)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자 명부 1부.
3. 2023 학교폭력 기재내용(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삭제 심의 대상자 명부 1부. 끝.

★

협조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담당자

교사(중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시행

○○학교-

(2023.**.**.

) 접수

(

)

우

/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비공개(6)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 결정서

사건		○○학교 학교폭력 사안 20○○-○○호	
가해학생		피해학생	
심의위원회 처분사항			
조치사항 삭제심의 결과내용	취지	삭제, 미삭제	
	내용	조치사항 이행 이후 유사 사안 여부 및 학교생활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삭제”처분이 적절하다고 결정	
	관련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4항, 5항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4항, 5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 사항을 통보합니다. 20○○년 ○월 ○일 ○○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 참고사항(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4항, 5항) 제18조(자료의 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II)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서식Ⅲ-27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받는 자	전입교 및 상급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이용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상기의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참고]

본 양식을 졸업(전출) 직전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제공 받았을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보관하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 첨부하여 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학교명		○○중학교					
학년	2	반	2	번호	2	성명	김○○
피해학생 보호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교육장(2000.00.00)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장							

참고자료

학교폭력 전담기구 시나리오(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본 시나리오는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 여부 심의를 위한 전담기구의 회의 진행과 구성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회의 시나리오 예시 자료입니다. 사안의 특성, 상황, 여건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회의록 작성은 시나리오와 구별되며, 심의의 발언 요지만 기록해도 무방합니다.

1 개회 및 안내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진행자) 우리학교 전담기구 운영 계획의 회의 개최 요건인 재적 구성원 6명 중 4명이 출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안번호 2023-00호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충족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담기구 운영은 <Ⅳ-⑥>을 참고하여 심의 방법 등을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해야 함
진행자 인사	(진행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 되었습니다. 구성원분들께서는 본 기구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진행자) 오늘 심의할 안건은 사안번호 2023-00호 ○학년○반 A학생과 ○학년○반 B학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기피 회의 안내	(진행자)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1. 구성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구성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구성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며, ▶ 구성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구성원분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 회피 시 구성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
주의사항 전달	(진행자) 본 회의는 상정된 안건이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는 객관적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사안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보고	(진행자) 다음은 학교폭력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경과 및 사안의 내용,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선생님께서 사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담당 교사는 사안보고와 구성원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으나 심의를 위한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 (업무 담당자) 사안보고 ▶ 사안번호 2023-00호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2023.00.00. 학교폭력 사안 접수하여, ~~~ ※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사안개요, 진행상황, 중점심사 사항 등) ☞ 기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 이상입니다.	
쟁점,질의	(진행자) 구성원님들께서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자료 등 관련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구성원들의 질의에 응답)	

3-1 학교폭력 아닌 사안의 경우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확인	(진행자) 사안보고 결과 본 사안은 ①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인 경우 ② 학교폭력 의심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③ 피해학생 측이 신고한 사안에 피해학생 측이 오인 신고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① ~ ③ 중 ○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모 두) 동의합니다.	
결과방향 논의	(진행자) 그러면 상정된 안건은 오인신고임을 확인하고 본 협의 내용을 첨부하여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후 종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확인 결과 ① ~ ③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3-2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자체해결 요건 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해당여부 확인	(진행자) 본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 모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호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모 두) 동의합니다. (진행자) (전담기구 심의 전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또한,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Ⅳ-⑮)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동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자) (전담기구 심의 전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여부 확인 원칙적인 자체해결 사안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대장에 기재 → 학교장에게 보고, 해당 보호자에게 통지 → 전담기구 사안조사 → 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작성 → 학교장 내부결재 → 교육지원청 보고 및 보호자에게 통보임. 그러나 실무적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먼저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4가지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함
결과방향 논의	(진행자)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가 확인된다면 학교장의 자체해결 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자체해결로 사안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음. 단 해당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음

3-3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해당여부 확인	(진행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호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각호 중 충족하지 못한 요건의 특징 및 그 이유에 대한 발언) (모 두) 동의합니다. (진행자)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더라도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될 수 없음
결과방향 논의	(진행자) 상정된 안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해 충족하지 못한 요건이 존재하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심의위원회 회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지원청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Ⅳ-㉓)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4

전담기구 회의 및 심의 마무리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회의 마무리	(진행자) 이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새울학교 대안위탁교육 신청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월일		사진 (3×4)
주소							
소속	중학교 학년 반 번						
학교 전화		담당 교사	성명 : 휴대전화 :				
학생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보호자 성명	부 모	보호자연 락처		
위탁영역	☐ 교권 침해		☐ 교내 징계		☐ 대안교육 희망		
	☐ 학교부적응		☐ 학교폭력		☐ 기타()		
신청 사유							
경기새울학교 위탁교육을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지원학생 : (인) 보호자 : (인) ○○○학교장 (직인) 경기새울학교장 귀하							

담임 의견서

※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 생활 및 행동 특성, 환경적, 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 . .

작성자 직: 성명: (서명)

서식Ⅳ-1-③

상담소견서(상담실)

※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해 심리적, 정서적 특성과 경기새울학교에서 상담진행시 유의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〇〇. . .

작성자 직: 성명: (서명)

원적교(학교장 및 담임교사)의 교육 협력 동의서

※ 이 서식은 재적학교에서 작성하여 경기 위(Wee) 스쿨로 송부하는 교육협력 동의서입니다.

학교명		소재지	시(군) 동(읍/면)
위탁학생명		학년/반/번호	
교장성명		연락처	(교장실) (휴대폰)
담임교사명		연락처	(교무실) (휴대폰)

귀교의 학생이 경기새울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치유·돌봄·성장의 교육과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귀교의 학생은 **문제 학생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정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는** 경기새울학교의 철학에 동의합니다.
2. 귀교 학생이 경기새울학교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새울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3. 귀교의 학생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경기새울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새울 학교에서 요청하는 자료(생활 및 상담자료 등)를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4. 귀교학생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필요시 **등하교(월, 금)지원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5. 경기새울학교와 귀교의 원활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의 금요일귀가 시 실시하는 **원적교 방문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6. 기타 경기새울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2000년 월 일

담임교사 ○ ○ ○ (서명)
○○○중학교장 ○ ○ ○ (서명)

경기새울학교장 귀하

서식Ⅳ-2-① (수원-여자)가정형 위(Wee) 센터 의뢰 양식

가정형 위(Wee) 센터 의뢰 양식

위탁교육 의뢰서

학 생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담임 교사	성명			휴대폰		
	교내 연락처	Tel : Fax :		e-mail		
위탁교육 기 간		최초 위탁일로부터 3개월 ※ 학교 방학기간은 위탁기간에서 제외됨.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가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영어듣기평가			
			기타공식평가			
		방학기간	봄			
			여름			
			겨울			
		특이사항				
위와 같이 위탁교육을 의뢰합니다. 2000 년 월 일 () 학 교 장 (직인)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위(Wee) 센터(수원-여) 귀하						

대상자 의뢰서

의뢰자 정보					
① 이름		② 관계		③ 연락처	
기 타					
학 생 정 보					
④ 이름	⑤ 성별	⑥ 학교명	⑦ 학년/반	⑧ 나이	⑨ 담임교사명
⑩ 주 소			⑪ 연 락 처		⑫ 알게 된 경로
⑬ 가족관계					
⑭ 의뢰사유					
⑮ 기타사항					

※ 위탁의뢰학생이 타기관에서 심리검사를 받았거나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Ⅳ-2-③

(고양-남자)가정형 위(Wee) 센터 의뢰 양식

위탁교육 의뢰서

학생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담당 교사	성 명			휴대폰		
	교내 연락처	Tel : Fax :		e-mail		
위탁교육 기 간	* 기본 위탁기간은 3개월이며 학교 방학기간은 위탁기간에서 제외됨. * 새 학년 시작의 경우 학교적응기간으로 1-2주간 본적교로 출석할 수 있음. * 원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위탁연장 가능 (위탁 7일 전 연장의뢰서 작성)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가기간	1학기 중간고사	년 월 일 - 월 일			
		1학기 기말고사	년 월 일 - 월 일			
		2학기 중간고사	년 월 일 - 월 일			
		2학기 기말고사	년 월 일 - 월 일			
		영어듣기평가	년 월 일			
		기타공식평가	년 월 일			
	방학기간	여름	방학식날	년 월 일		
			개학일	년 월 일		
		겨울	방학식날	년 월 일		
			개학일	년 월 일		
		단기방학		년 월 일 - 월 일		
		종업식		년 월 일		
		새 학년 시작일		년 월 일		
특이사항						
위와 같이 위탁 교육을 의뢰합니다. 2000 년 월 일 () 학 교 장 (직인) 경기도교육청 가정형 위(Wee) 센터(고양-남) 귀하						

대상자 의뢰서

* 대상자 및 해당 부모님의 입소 의지가 확실한 경우 의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의뢰 시, 해당 학생의 심리검사결과 및 의사 소견서가 있을 시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정보		의뢰자 정보			
접수일	접수자	성 명	관 계	연락처	e-mail
학생 정보					
성 명	학교명	학년/반	생년월일	주소	
담당교사			보호자 성명 <관계>	보호자 연락처	
성 명	연락처	e-mail			
			()		
가족관계					
의뢰사유					
기타사항					

서식Ⅳ-3-①

병원형 위(Wee) 센터 의뢰 양식(보호자 → 재적학교 → 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기관)

병원형 위(Wee) 센터 대상자 의뢰서

※ 보호자가 재적학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서류입니다.

접수정보		의뢰자 정보		
접수일	병원형 위(Wee) 센터 접수자	성명	관계	연락처
2021. . .				
학교명		생년월일	00. 00. 00.	
학생명		학년/반/번호		
자택 주소				
의뢰 기관	(피노키오, 이음, 롤루랄라, 도담도담) 위(Wee) 센터			
담임교사		학부모		
성명	연락처 H·P	성명	관계	연락처
[의뢰 사유]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000 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교육을 보호자 연서로 의뢰합니다.				
2000년 월 일				
학 생	(서명)	(동의여부: ○, ×)		
보호자	(서명)	(동의여부: ○, ×)		
※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청 시, 추후 수탁 취소 처리됩니다.				

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교육 신청서

※ 보호자가 재적학교에 위탁교육을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학 생 명		생년월일	00. 00. 00.	
주 소				
학 교		자택전화		
학년/반/번호		E-mail		
위탁교육 희망기관	(피노키오, 이음, 룰루랄라, 도담도담) 위(Wee) 센터	휴대폰	학 생	
			학부모	
[신청 사유] 6하 원칙에 의해 자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000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교육을 보호자 연서로 신청합니다.				
2000년 월 일				
학 생	(서명)	(동의여부: ○, ×)		
보호자	(서명)	(동의여부: ○, ×)		
※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청 시, 추후 수탁 취소 처리됩니다.				

서식Ⅳ-3-③

재적학교 → 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기관

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교육 추천서

※ 재적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학생명							생년월일	00. 00. 00.			
주 소											
학 번	()학년()반()번						소속 학교 담임 교사	성 명 :			
위탁교육 기관	(피노키오, 이음, 룰루랄라, 도담도담) 위(Wee) 센터							학교전화 :			
								FAX :			
								휴대전화 :			
									E-mail :		
구 분 학 년	근 태 사 항									특 기 사 항	
	결석			지각			조퇴			※ 해당 학년만 기재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학년											
2학년											
3학년											
【추천사유 :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을 귀 000 병원형 위(Wee) 센터 위탁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00 년 월 일 000학교장(직인)											

000학교 학사일정

※ 재적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송부하는 서류입니다.

학생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담임 교사	성 명		휴대폰	
	교내 연락처	Tel : Fax :	e-mail	
위탁교육 기간 ※ 필요한 일정은 추가 삽입하여 작성	* 기본 위탁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시 사례회의를 통해 1회 위탁연장 가능(위탁 7일 전 연장의뢰서 작성) * 학생 상황에 따라 복교 전 학교적응기간으로 1-2주간 본적교로 출석할 수 있음 * 성적 및 출결 관련한 학사 일정 변동 시 담임교사 병원형 위(Wee) 센터에 연락하여 사전 일정 조정함			
	위탁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가 기간	1학기1차지필고사	년 월 일 ~ 월 일	
		1학기2차지필고사	년 월 일 ~ 월 일	
		2학기1차지필고사	년 월 일 ~ 월 일	
		2학기1차지필고사	년 월 일 ~ 월 일	
		영어 듣기평가	년 월 일	
		기타 공식평가	년 월 일	
	방학 기간	여름방학	년 월 일	
		겨울방학	년 월 일	
		단기방학	년 월 일 - 월 일	
		단기방학	년 월 일 - 월 일	
특이사항				
위와 같이 000학교 학사일정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000학교장 (직인)				

학생 자살 사안 보고 공문(예시)

- ① 자살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위기관리 지원을 받음
- ②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학교장 직인 포함)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
- ③ PDF 파일을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로 공문 동시 발송
(제목: 학교명 사용 금지)

교표

○○학교

수신

(경유)

제목 학생 자살 사안 보고

1. 관련: 2023위기학생지원 계획(2023.00.00.)
2.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사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지역: 경기도 00시(군)
 - 나. 자살사망 일시: 2023.3.25.(토) 22:30 경, 자택
 - 다. 자살사망 학생: ○○고등학교 ○학년 ○반 남(여)학생
 - 라. 자살사망 방법: 투신, 목매, 약물복용 등 자살 방법 작성
 - 마. 자살사망 원인: 가정불화, 성적비관, 이성문제 등 자살 원인 작성(세부내용 [붙임] 참조)
 - 바. 학교 조치사항: 학생 자살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취한 조치를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보고함
 - 1) 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 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담당자가 학교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안 대처 지원
 - 2) 자살사망 학생의 가족, 친한 친구, 담임교사 등에 대한 특별상담실 운영
 - 3)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협조 및 지원 등
 - 4) 자살사망 학생 소속 학급 학생들에 대해 위(Wee) 센터 상담 일정 협의 및 운영

붙임 학생 자살 사안 보고서(○○학교) 1부. 끝.

○○학교장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학교-0000	(2023.3.26.)
우	*****	경기도 00시 00로 00 / http://www.*****.es.kr
전화	031-111-2222	/전송 031-111-3333 / *****@****.net / 비공개(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우선입니다.

서식IV-4-②

학생 자살 사망사안 보고서(2023 교육부 양식)

학교장 <직인>

작성자	(인)	작성자 직위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 학생자살 사망사안 보고서에 관하여 '교육부 학생자살예방 정책연구소'에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는 ☎ 02-2290-1486~7)로 해 주십시오.

I. 자살학생 정보

1. 성명(성별)	(남/여)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학년/반	/
2. 학교명	(학교 소재지: 시 군(구))				
2-1. 학교지역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강원 ⑤ 대전 ⑥ 대구 ⑦ 광주 ⑧ 울산 ⑨ 부산 ⑩ 세종 ⑪ 충북 ⑫ 충남 ⑬ 경북 ⑭ 경남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2-2. 학교유형	① 공립 초등학교 ② 사립 초등학교 ③ 일반 중학교 ④ 특수목적 중학교 ⑤ 일반계 고등학교 ⑥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교, 과학고) ⑦ 특성화 고등학교 ⑧ 자율고등학교(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⑨ 특수학교 ⑩ 기타 ⑪ 모름				

II. 자살사안(사고) 내용

1. 사망 일시	① 자살실행 추정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② 모름 ② 사망 추정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② 모름
2. 자살 시도 장소	① 자택 ② 친척 집 ③ 지인 집 ④ 학교 ⑤ 직장(아르바이트 장소 등) ⑥ 공공장소(교량, 공원, 건물 등) ⑦ 숙박업소 ⑧ 야산 혹은 교외 ⑨ 병원 ⑩ 기타() ⑪ 모름
3. 방법	① 투신 ② 목매 ③ 본인이 운전해서 교통사고(오토바이 등) ④ 약물 음독 ⑤ 분신(방화) ⑥ 달리는 물체에 뛰어들기(지하철 등) ⑦ 가스 중독 ⑧ 기타() ⑨ 모름
4. 경위	※ 자살 시도 시점부터 사망 확인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술
5. 기록물	사망 당시 자살학생이 작성한 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유서 ③ SNS ④ 문자메시지 ⑤ 메모 및 포스트잇 ⑥ 카카오톡 ⑦ 블로그 ⑧ 홈페이지 ⑨ 기타() ⑩ 모름 5-1. 작성한 기록물이 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III. 자살사안 발생 전 자살예방조치 및 사후개입

1. 교내 개입 (복수응답 가능)	1-1. 사전	학생자살 사망사안이 발생하기 전 자살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한 조치가 있습니까?						
		① 없음[☐ '1-2'로] ② 있음[☐ '1-1-1'로]						
		1-1-1. 실시한 자살예방조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②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③ 교직원 대상 자살예방교육 ④ 학교 위기관리 위원회 조직 ⑤ 기타()							
	1-2. 사후	학생자살 사망사안이 발생한 후 개입이 있었습니까? 각 개입방법마다 '개입 진행사항'에 √표 해주십시오.						
			대상	개입방법	개입 진행사항			
					없음	예정	개입 중	완료
		전체	① 학교 위기관리 위원회 소집					
		학생	② 응급심리지원 심리교육 [☐ '1-2-1'로]					
			③ 고위험군 선별검사					
			④ 고위험군 상담					
		교사	⑤ 교사지원					
		유가족	⑥ 유가족 지원					
		기타	⑦ ()					
		프로그램 내용 : 회기 : 총 시간 :						
※ 1-2번에서 '개입 진행사항'을 개입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1-2-2. 사안관련 교육 시행 및 서비스 지원기관 (해당사항 모두 체크)								
교내	① 없음 ② 교내 Wee클래스 ③ 학교 상담실 ④ 기타() ⑤ 모름							
교외	① 없음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③ Wee센터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⑤ 개인 상담센터 ⑥ 자원봉사자 ⑦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⑧ 기타() ⑨ 모름							
1-2-3. 자살사안에 대해 교내 학생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① 예 (혹은 전달 예정) [☐ '1-2-3-1'로] ② 아니오 [☐ '1-2-3-2'로]								
1-2-3-1. 자살사안에 대해 어떻게 전달(예정)하셨습니다?								
① 가정통신문 ② 교내방송 ③ 담임선생님이 전달 ④ 기타()								
1-2-3-2. 자살사안을 전달하지 못한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교외 대응	2-1. 언론과의 접촉이 있었습니까?							
① 예 [☐ '2-1-1'로] ② 아니오 [☐ '2-2'로]								
3. 어려웠던 점	학생자살 사망 이후, 사후 개입 및 대응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선택해 주십시오.(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학교구성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③ 유족대응 ④ 사후조치관련 의사결정 ⑤ 지속관리 학생 예산지원 ⑥ 언론대응 ⑦ 교육청 등 상부기관 보고 ⑧ 기타()								

Ⅳ. 자살학생 특이사항

※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상황, 심리 및 행동 특성, 취미 및 특기 등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생활

심리 및 행동특성

취미 및 특기

Ⅴ. 자살학생 세부사항

1. 가족형태	① 양부모(①-1.친부모가정, ①-2. 재혼가정) ④ 부모 사별 (부 /모)		② 부모 이혼 ⑤ 기타 ()		③ 부모 별거 ⑥ 모름		
	1-2. 다문화가정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1-3. 부모 (혹은 주 양육자)와의 친밀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안 좋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좋음				
2. 동거가족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부 ② 모 ③ 조부 ④ 조모 ⑤ 형·오빠 ⑥ 누나·언니 ⑦ 남동생 ⑧ 여동생 ⑨ 친척 () ⑩ 기타 () ⑪ 모름		2-1. 형제·자매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기술해 주십시오.				
	성명: 학교명: 학년/반:		성명: 학교명: 학년/반:				
3. 거주형태	① 가족과 동거 ② 기숙사 ③ 자취 ④ 기타()						
4. 경제적 수준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모름						
5. 가계소득 주수입자	① 부모 맞벌이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부모 모두 실직 ⑤ 기타 () ⑥ 모름						
6. 학교생활	6-1. 성 적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모름				
	6-2. 출결 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양호 ② 질병 지각·조퇴 ③ 질병 결석 ④ 무단 지각·조퇴 ⑤ 무단 결석 ⑥ 기타() ⑦ 모름				
	6-3. 학생회 임원 경력		① 없음 ② 있음(임원명 :) ③ 모름				
	6-4. 품행문제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흡연 ③ 음주 ④ 가출 ⑤ 절도 ⑥ 학교폭력 가해 ⑦ 기타() ⑧ 모름				
	6-5. 교내 징계 및 법적 조치 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교내외 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정학 ⑤ 경찰 훈방 ⑥ 보호관찰명령 ⑦ 기타() ⑧ 모름				

	6-6. 학교에 대한 속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속속되어 있지 않음 ① ② ③ ④ 매우 속속되어 있음	
	6-7. 교사와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잘 지내지 못함 ① ② ③ ④ 매우 잘지냄	
	6-8. 걱정이나 고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교사가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7. 성격	학생의 평소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성적 ① ② ③ ④ 외향적			
8. 정서·행동상태	학생의 최근 2개월 이내 정서·행동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없음 ② 우울 ③ 불안 ④ 충동성 ⑤ 사회성 문제 ⑥ 공격성 ⑦ 기타 () ⑧ 모름			
9. 건강상태	9-1. 신체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병명 : [] '9-1-1'로) ③ 모름	9-1-1.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해 주십시오. ① 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④ 치료하지 않음 ② 치료 중 ⑤ 모름 ③ 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9-2. 정신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병명 : [] '9-2-1'로) ③ 모름	9-2-1.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해 주십시오. ① 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④ 치료하지 않음 ② 치료 중 ⑤ 모름 ③ 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10. 최근 1년 이내 문제 (해당사항 모두 체크)	10-1. 개인 문제	① 없음 ② 외모 콤플렉스 ③ 신체건강 문제 ④ 정신건강 문제 ⑤ 기타() ⑥ 모름	10-2. 중독 문제	① 없음 ② 게임 중독 ③ 인터넷 중독 ④ 스마트폰 중독 ⑤ 음란물 중독 ⑥ 약물중독 ⑦ 도박중독 ⑧ 기타() ⑨ 모름
	10-3. 가족 문제	① 없음 ② 가정폭력 ③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의 신체건강 문제 ⑤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⑥ 부모-자녀 갈등 ⑦ 부모 사이의 갈등 ⑧ 기타() ⑨ 모름	10-4. 친구 문제	① 없음 ② 갈취, 폭력 피해 ③ 갈취, 폭력 가해 ④ 왕따/사이버불링 피해 ⑤ 왕따/사이버불링 가해 ⑥ 폭력서클 가입 ⑦ 이성문제 ⑧ 교우갈등 ⑨ 기타() ⑩ 모름
	10-5. 학업 문제	① 없음 ② 성적부진에 대한 비판 ③ 성적 하락에 대한 비판 ④ 학교 내 성적 경쟁과열에 대한 부담 ⑤ 학습량 과다로 인한 부담 ⑥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부담 ⑦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⑧ 부모의 성적부담 및 압박 ⑨ 학업에 대한 무관심(학습의욕부진) ⑩ 기타() ⑪ 모름		

11. 자살 직전 사건	① 없음 ② 있음 [☞ '11-1'로] ③ 모름	11-1. '있음'에 답한 경우, 내용을 보기 중 선택해주시요. ① 부모와 갈등 ② 친구와 갈등 ③ 이성문제 ④ 형제·자매와 갈등 ⑤ 진로 및 성적관련 사건 ⑥ 문제행동의 발각 ⑦ 주변인의 사망(자살 포함) 및 자살시도 ⑧ SNS 상의 친구와 관계문제(비방, 갈등 등) ⑨ 교사의 훈계 혹은 갈등 ⑩ 학교폭력 피해 ⑪ 성폭력 피해 ⑫ 기타	
12. 최근 1년 내 자해/자살 시도	12-1.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의도 없이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12-2.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① 없음 ② 있음 ③ 모름	① 없음 ② 있음 ③ 모름	
13. 최근 1년 내 지인 사망 경험	① 없음 [☞ '14'로] ② 있음 [☞ '13-1'로] ③ 모름		
	13-1. 지인 사망 경험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부모님 ⑤ 학교 선생님	② 형제·자매 ⑥ 이웃 어른	③ 친척 ⑦ 기타()
14. 자살 사망사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⑤ 친구 자살	② 부모 자살 ⑥ 유명인의 자살	③ 형제자매 자살 ⑦ 기타()
	④ 친인척 자살 ⑧ 모름		

VI.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지원체계를 통한 개입

1.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실시여부	1. 자살학생이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까?		
	① 실시함 (년도) [☞ '1-1'로] ② 실시하지 않음 [☞ '1-2'로] ③ 모름 [☞ 'Ⅶ'로]		
	1-1.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자살학생의 검사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2-1'로]		
	① 정상군 [☞ 'Ⅶ'로] ② 일반관리군 [☞ '2-1'로] ③ 우선관리군(고위험군) [☞ '2-1'로] ④ 모름 [☞ 'Ⅶ'로]		
	1-2.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Ⅶ'로]		
2. 정신건강 지원방법	① 학생 거부 ② 학부모 거부 ③ 결석 ④ 기타 ⑤ 모름		
	2-1. 검사 결과가 일반/우선 관리군인 경우, 교내 조치/교외 기관 연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미 외부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포함)		
	① 연계함(년도) [☞ '2-2'로] ② 연계되지 않음 [☞ '2-3'으로] ③ 모름 [☞ 'Ⅶ'로]		
	2-2. 조치/연계되었다고 답한 경우, 어떤 조치/연계가 실시되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체크) [☞ '3'으로]		
	교내	① 없음 ④ 담임교사 상담	
		② 학교 상담실(학교 내 Wee클래스) ⑤ 기타()	
		③ 외부기관 프로그램 교내 실시 ⑥ 모름	
	교외	① 없음 ④ 개인상담센터 ⑦ 기타()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⑤ Wee센터 ⑧ 모름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⑥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3. 개입결과	2-3. 연계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 본인이 거부함 [☞ '2-3-1'으로] ② 부모의 비동의 [☞ '2-3-1'으로] ③ 기타 () [☞ 'Ⅶ'로] ④ 모름 [☞ 'Ⅶ'로]		
	2-3-1. '학생의 거부' 혹은 '부모의 비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Ⅶ'로]		
	① 없음 ③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 ⑤ 기타()		
	② 학교에서의 불이익 염려 ④ 치료 받을 필요가 없음 ⑥ 모름		
3. 개입결과	3-1. 개입중단 이유 [☞ 'Ⅶ'로]		
	① 학생 본인이 중단 의사 밝힘 ② 부모 반대 ③ 연락 두절		

※ 아래의 항목(IX.~XI)은 사망학생의 담임교사께서필히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자	(인)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IX. 자살학생의 사망 전 변화사항

1. 사망 전 학생의 변화	사망 전, 학생의 언어, 행동, 정서의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없음 [☐ 'X'로] ② 있음 [☐ '1-1'로] ③ 모름	
	1-1. 변화가 있었다면,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오.(해당사항 모두 체크)	
	내용	
	언어	①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② 신체적 불편함(두통, 복통, 위염 등)을 호소한다. ③ 자기비하적인 말을 한다. ④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을 한다. ⑥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⑦ 편지, 수양록, 노트 등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다. ⑧ 기타()
	행동	① 수면상태의 변화: 수업시간에 졸거나, 얹드려 잔다. ② 식사상태의 변화: 입맛이 없다며 점심을 거르거나, 폭식을 한다. ③ 주변을 정리한다. ④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⑤ 외모관리에 대해 무관심하다. ⑥ 평소와 다른 기괴하거나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며, 이로 인한 수행 저하가 발생한다. ⑦ 집중력 저하 및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수행 저하가 발생한다. ⑧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을 보인다. ⑨ 죽음관련 음악, 시, 영화 등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⑩ 어긋났던 인간관계를 갑자기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예전 잘못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등) 신변정리를 한다. ⑪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⑫ 기타()
	정서	① 감정상태의 변화: 죄책감, 수치감, 외로움,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낸다. 멍한 모습을 보인다. 절망감, 무기력감,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다. ② 대인기피, 흥미상실: 평소에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 이상 즐기지 않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 ③ 기타()
1-2. 사망 전 학생의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오.		

X. 자살학생의 사망 전 친구관계

1. 친구관계	1-1. 교우관계	① 원만 ② 갈등 ③ 소외 ④ 자발적 고립 ⑤ 모름
	1-2.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였습니까?	잘 지내지 못함 매우 잘 지냄 ①②③④

XI. 자살학생의 사망 전 행동특성

※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학생 행동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안전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때리기, 위협하기, 빼앗기).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담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좋아한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낮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훔친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학교장 <직인>

서식Ⅳ-5

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 현장지원 일지(양식)

2023년 OO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 현장지원 일지																					
접수번호	2023-00		지원일시		2023. . .(00:00 ~ 00:00)																
요청자	소속		성명		연락처																
OO교육지원청 학생위기지원협의체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위기현황	☐ 위기학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15%;">학교</th> <th style="width: 15%;">학년반</th> <th style="width: 20%;">성명</th> <th style="width: 15%;">성별</th> <th style="width: 3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비고										
	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비고																
☐ 위기내용 - - -																					
지원내용	- - -																				
조치사항	- - -																				
추수관리	- - -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양식)

- ① 자살시도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위기관리 지원을 받음
- ②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학교장 직인 포함)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
- ③ PDF 파일을 첨부하여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로 공문 동시 발송

우리 모두를 위한 양심의 실천, 공익신고

교표

○○학교

수 신

(경유)

제 목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

1. 관련: 2023 위기학생지원계획(2023.00.00.)
2.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시도 사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가. 자살시도 학생: ○○학교 ○학년 ○반 남(여)학생
 - 나. 자살시도 일시: 2023.3.25.(토) 22:30 경, 자택
 - 다. 자살시도 방법: 투신, 목매, 약물복용 등 자살 시도 방법 작성
 - 라. 자살시도 원인: 가정불화, 성적비관, 이성문제 등 자살 시도 원인 작성(세부내용 [붙임] 참조)
 - 마. 학교 조치사항: 학생 자살시도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취한 조치를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보고함
 - 1) 학교위기관리위원회 개최, 학부모 상담 등
 - 2)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담당자가 학교위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안 대처 지원
 - 3)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협조 및 지원 등
 - 4) 자살시도 학생에 대한 위(Wee) 센터 상담 일정 협의, 계획 및 운영

붙임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학교) 1부. 끝.

○○학교장

★교사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고등학교-0000	()
우	*****	경기도 00시 00로 00 / http://www.*****.es.kr
전화	031-111-2222	/전송 031-111-3333 / *****@****.net / 비공개(6)

서식Ⅳ-6-②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양식)

()학교장 <직인>

작성자	(인)	작성자 직위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 학생 자살시도 사안 보고서에 관하여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에 문의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031-380-6010)

I. 자살시도 학생 정보

1. 성명(성별)	(남/여)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학년/반	/
4. 부모직업	부: _____ 모: _____ ※ 아래 보기를 보고 부/모 직업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주십시오.(작성일 기준)						
	① 관리자	② 전문가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단순노무 종사자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학생	⑩ 군인	⑪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⑫ 무직(전 직업:)			
	⑬ 전업주부	⑭ 기타()	⑮ 모름				
5. 학교명	(학교 소재지: 시 군(구))						
5-1. 학교지역	※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강원	⑤ 대전	⑥ 대구	
	⑦ 광주	⑧ 울산	⑨ 부산	⑩ 세종	⑪ 충북	⑫ 충남	
	⑬ 경북	⑭ 경남	⑮ 전북	⑯ 전남	⑰ 제주		
5-2. 학교유형							
	① 공립 초등학교	② 사립 초등학교	③ 일반 중학교				
	④ 특수목적 중학교	⑤ 인문계 고등학교	⑥ 특수목적 고등학교(외교, 과학고)				
	⑦ 특성화 고등학교	⑧ 자율고등학교(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⑨ 특수학교				
	⑩ 기타	⑪ 모름					

II. 자살시도 사안(사고) 내용

1. 자살시도 일시	① 자살시도 실행 (추정)시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요일), 시 ② 모름					
	② 자살시도 발견 시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요일), 시 ② 모름					
2. 자살시도 장소						
	① 자택	② 친척 집	③ 지인 집	④ 학교		
	⑤ 직장(아르바이트 장소 등)	⑥ 공공장소(교량, 공원, 건물 등)	⑦ 숙박업소	⑧ 야산 혹은 교외		
	⑨ 병원	⑩ 기타()	⑪ 모름			
3. 자살시도 발견경로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학생 스스로 보고	② 부모의 보고	③ 친구의 보고			
	④ 교사의 관찰	⑤ 학교관계자(교사 외)의 보고	⑥ 기타()			
4. 자살시도 방법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투신	②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	③ 본인이 운전해서 교통사고(오토바이 등)			
	④ 약물 음독	⑤ 화상입히기/분신(방화)	⑥ 달리는 물체에 뛰어들기(지하철 등)			
	⑦ 가스 중독	⑧ 자기를 때리거나 할퀴기	⑨ 날카로운 물건으로 자기 몸에 상처내기			
	⑩ 목매	⑪ 피부에 글자, 그림 등을 새기기(문신 제외)	⑫ 벽이나 책상 등에 신체 부딪치기			
	⑬ 기타()	⑭ 모름				
5. 자살시도	① 없음 ② 하기 싫은 것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유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③ 우울/불안 또는 불쾌/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⑤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⑦ 타인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⑨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⑪ 죽고 싶은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 ⑬ 기타()	④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⑥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 ⑧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⑩ 고통이나 자극을 느끼기 위해 ⑫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⑭ 모름
6. 기록물	자살시도 당시 학생이 작성한 글이 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유서 ③ SNS ④ 문자메시지 ⑤ 메모 및 포스트잇 ⑥ 카카오톡 ⑦ 블로그 ⑧ 홈페이지 ⑨ 기타() ⑩ 모름 6-1. 작성한 기록물이 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해 주십시오.	
7. 경위	※ 시간 순서대로 자살시도 관련, 갈등이나 유발요인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	

III. 자살시도 사안 발생 전 자살예방조치 및 사후개입

1. 교내 개입 (복수응답 가능)	1-1. 자살 시도 이전	학생 자살시도 사안이 발생하기 전 자살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실시한 조치가 있습니까?		
		① 없음 [☐ '1-2-1'로] ② 있음 [☐ '1-1-1'로]		
		1-1-1. 실시한 자살예방조치는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 ② 학부모 대상 자살예방교육 ③ 교직원 대상 자살예방교육 ④ 학교 위기관리 위원회 조직 ⑤ 기타()		
	1-2. 자살 시도 이후	1-2-1. 교사가 자살시도 학생의 문제를 인지한 후, 학생에 대한 교내개입 및 외부기관 연계가 이루어졌습니까? ① 개입/연계됨 [☐ '1-2-2'로] ② 개입/연계하지 않음 [☐ '2'로] ③ 개입/연계 예정 [☐ '1-2-2'로] ④ 모름 [☐ '2'로]		
		1-2-2. 사안관련 개입기관 (해당사항 모두 체크)		
	교내	① 없음 ④ 기타()	② 교내 위(Wee)클래스 ⑤ 모름	③ 학교 상담실
	교외	① 없음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⑦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⑤ 개인 상담센터 ⑧ 기타()	③ 위(Wee)센터 ⑥ 자원봉사자 ⑨ 모름
2. 학부모알림	부모님께 학생의 자살시도를 알려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알릴 예정 ④ 이미 알고 계심			
3. 어려웠던 점	학생 자살시도 이후, 개입 및 대응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선택해 주십시오.(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자살시도 대응지식 부족 ③ 학생면담 ④ 학부모와의 면담 ⑤ 개입/연계의 어려움 ⑥ 학생관리 ⑦ 기타()			
4. 학생의 자살시도에 대해 잘 개입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교육청 등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Ⅳ. 자살지도 학생 특이사항

※ 학교생활, 또래관계, 가족상황, 심리 및 행동 특성, 취미 및 특기 등 학생의 특이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Ⅴ. 자살지도 학생 세부사항

1. 가족형태	① 양부모 (①-1. 친부모 가정, ①-2. 재혼가정) ② 부모 이혼 ③ 부모 별거 ④ 부모 사별 (부/모) ⑤ 기타 () ⑥ 모름			
	1-2. 부모(또는 주양육자)와의 친밀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안 좋음 ① ② ③ ④ ⑤ ⑥ 매우 좋음		
2. 동거가족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부 ⑤ 형·오빠 ⑨ 친척 ()	② 모 ⑥ 누나·언니 ⑩ 기타 ()	③ 조부 ⑦ 남동생 ⑪ 모름	④ 조모 ⑧ 여동생
3. 거주형태	① 가족과 동거 ② 기숙사 ③ 자취 ④ 기타()			
4. 경제적 수준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모름			
5. 가계소득 주수입자	① 부모 맞벌이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부모 모두 실직 ⑤ 기타() ⑥ 모름			
6. 학교생활	6-1. 성 격	① 상 ② 중 ③ 하 ④ 모름		
	6-2. 출결 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양호 ② 질병 지각·조퇴 ③ 질병 결석 ④ 무단 지각·조퇴 ⑤ 무단 결석 ⑥ 기타() ⑦ 모름		
	6-3. 학생회 임원 경력	① 없음 ② 있음(임원명 :) ③ 모름		
	6-4. 품행문제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흡연 ③ 음주 ④ 가출 ⑤ 절도 ⑥ 학교폭력 가해 ⑦ 기타() ⑧ 모름		
	6-5. 교내 징계 및 법적 조치 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교내외 봉사 ③ 특별교육이수 ④ 정학 ⑤ 경찰 훈방 ⑥ 보호관찰명령 ⑦ 기타() ⑧ 모름		
	6-6.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음 ① ② ③ ④ 매우 소속되어 있음		
	6-7. 교사와의 관계는 원만하였습니까?	잘 지내지 못함 ① ② ③ ④ 매우 잘 지냄		
	6-8. 걱정이나 고민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는 교사가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름			

7. 성격	학생의 평소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성적 ① ④ ② ③ 외향적			
8. 정서·행동상태	학생의 최근 2개월 이내 정서·행동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없음 ② 우울 ③ 불안 ④ 충동성 ⑤ 사회성 문제 ⑥ 공격성 ⑦ 기타 () ⑧ 모름			
9. 건강상태	9-1. 신체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병명 :) [예 '10-1-1'로] ③ 모름	9-1-1.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해 주십시오.	
			① 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④ 치료하지 않음 ② 치료 중 ⑤ 모름 ③ 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9-2. 정신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병명 :) [예 '10-2-1'로] ③ 모름	9-2-1.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치료여부에 대해 주십시오.	
			① 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④ 치료하지 않음 ② 치료 중 ⑤ 모름 ③ 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8. 정서·행동상태	학생의 최근 2개월 이내 정서·행동상태를 나타내는 문항에 표시해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① 없음 ② 우울 ③ 불안 ④ 충동성 ⑤ 사회성 문제 ⑥ 공격성 ⑦ 기타 () ⑧ 모름			
10. 최근 1년 이내 문제 (해당사항 모두 체크)	10-1. 개인 문제	① 없음 ② 외모복플렉스 ③ 신체건강 문제 ④ 정신건강 문제 ⑤ 기타() ⑥ 모름		10-2. 중독 문제
	10-3. 가족 문제	① 없음 ② 가정폭력 ③ 경제적 어려움 ④ 가족의 신체건강 문제 ⑤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 ⑥ 부모-자녀 갈등 ⑦ 부모 사이의 갈등 ⑧ 기타() ⑨ 모름		10-4. 친구 문제
	10-5. 학업 문제	① 없음 ⑥ 전공 및 진로에 대한 부담 ② 성적부진에 대한 비판 ⑦ 학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③ 성적 하락에 대한 비판 ⑧ 부모의 성적부담 및 압박 ④ 학교 내 성적 경쟁과열에 대한 부담 ⑨ 학업에 대한 무관심(학습의욕부진) ⑤ 학습량 과다로 인한 부담 ⑩ 기타() ⑪ 모름		
11. 자살 시도 직전 사건	① 없음 ② 있음 [예 '11-1'로] ③ 모름	11-1. '있음'에 답한 경우, 내용을 보기 중 선택해 주십시오.		
		① 부모와 갈등 ② 친구와 갈등 ③ 이성문제 ④ 형제·자매와 갈등 ⑤ 진로 및 성적관련 사건 ⑥ 문제행동의 발각 ⑦ 주변인의 사망(자살 포함) 및 자살 시도 ⑧ SNS 상의 친구와 관계문제(비방, 갈등 등) ⑨ 교사의 훈계 혹은 갈등 ⑩ 학교폭력 피해 ⑪ 성폭력 피해 ⑫ 기타()		
		11-2. '있음'에 답한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2. 최근 1년 내 자해/자살 시도	12-1.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의도 없이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12-2.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① 없음 ② 있음 [☞ '12-1-1'로] ③ 모름	① 없음 ② 있음 [☞ '12-2-1'로] ③ 모름
	12-1-1. 자해시도가 있었다면,	12-2-1. 자살시도가 있었다면,
	총 ____회, 방법 : _____	총 ____회, 방법 : _____
13. 최근 1년 이내 자살사건 경험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없음 ② 부모 자살 ③ 형제자매 자살 ④ 친인척 자살 ⑤ 친구 자살 ⑥ 유명인의 자살 ⑦ 기타() ⑧ 모름	

※ 다음은 학생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VI.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원체계를 통한 개입

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여부	1. 자살 시도 학생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까?
	① 실시함 (년도) [☞ '1-1'로] ② 실시하지 않음 [☞ '1-2'로] ③ 모름 [☞ 'Ⅶ'로]
	1-1. 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자살 시도 학생의 검사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 '2-1'로]
	① 정상군 [☞ 'Ⅶ'로] ② 일반관리군 [☞ '2-1'로] ③ 우선관리군(고위험군) [☞ '2-1'로] ④ 모름 [☞ 'Ⅶ'로]
	1-2.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Ⅶ'로]
2. 정신건강 지원방법	① 학생 거부 ② 학부모 거부 ③ 결석 ④ 기타 ⑤ 모름
	2-1. 검사결과가 일반/우선관리군인 경우, 교내조치/교외기관 연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미 외부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포함)
	① 연계함(년도) [☞ '2-2'로] ② 연계되지 않음 [☞ '2-3'으로] ③ 모름 [☞ 'Ⅶ'로]
	2-2. 조치/연계되었다고 답한 경우, 어떤 조치/연계가 실시되었습니까?(해당사항 모두 체크) [☞ '3'으로]
	교내 ① 없음 ② 학교 상담실(학교 내 위(Wee)클래스) ③ 외부기관 프로그램 교내 실시 ④ 담임교사 상담 ⑤ 기타() ⑥ 모름
	교외 ① 없음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개인상담센터 ⑤ 위(Wee)센터 ⑥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⑦ 기타() ⑧ 모름
	2-3. 연계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 본인이 거부함 [☞ '2-3-1'으로] ② 부모의 비동의 [☞ '2-3-1'으로] ③ 기타 () [☞ 'Ⅶ'로] ④ 모름 [☞ 'Ⅶ'로]
	2-3-1. '학생의 거부' 혹은 '부모의 비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Ⅶ'로]
	① 없음 ② 학교에서의 불이익 염려 ③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 ④ 치료 받을 필요가 없음 ⑤ 기타() ⑥ 모름
3. 개입결과	① 상태 호전되어 종결 3-1. 개입중단 이유 [☞ 'Ⅶ'로] ② 개입 중 ③ 개입 중단 [☞ '3-1'로] ④ 기타 () ⑤ 모름
	① 학생 본인이 중단 의사 밝힘 ② 부모 반대 ③ 연락 두절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이 있었을 경우, 아래 문항에 체크바랍니다.

Ⅶ.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학교차원의 발견 학생에 대한 개입

1. 개입여부	학생생성·행동특성검사 외에,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인지하여 연계/개입이 이루어졌습니까?	
	① 없음 [☞ ‘Ⅶ’로] ② 있음 [☞ ‘2’로] ③ 모름 [☞ ‘Ⅷ’로]	
2. 문제인식 경로	연계/개입했다고 답한 경우, 학생의 문제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Ⅵ의 ‘3’로]	
	① 학생의 자발적 요청 ② 담임교사 관찰 ③ 친구의 보고 ④ 학부모의 요청 ⑤ 기타()	
4. 정신건강 지원방법	연계/개입했다고 답한 경우, 개입한 방법이나 연계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u>해당사항 모두 체크</u>) (※ 이미 외부기관에 다니고 있는 경우를 포함)	
	교내	① 없음 ② 학교 상담실(학교 내 위(Wee)클래스) ③ 외부기관 프로그램 교내 실시 ④ 담임교사 상담 ⑤ 기타() ⑥ 모름 [☞ ‘Ⅶ’로]
	교외	① 없음 [☞ ‘Ⅶ’로] ② 정신건강증진센터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위(Wee)센터 ⑤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⑥ 개인상담센터 ⑦ 기타() ⑧ 모름 [☞ ‘Ⅶ’로]
5. 개입결과	① 상태 호전되어 종결 ② 개입 중 ③ 개입 중단 [☞ ‘5-1’로] ④ 기타 () ⑤ 모름	5-1. 개입중단 이유 [☞ ‘Ⅶ’로]
		① 학생 본인이 중단 의사 밝힘 ② 부모 반대 ③ 연락 두절

VIII.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자살시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살은 한 가지 요인이 원인이 되기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이유를 짐작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작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시요.

※ 아래의 항목은 자살시도 학생의 담임교사께서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자	(인)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IX. 학생의 자살시도 전 변화사항

1. 자살시도 전 학생의 변화	자살시도 전, 학생의 언어, 행동, 정서의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없음 [☐ 'X'로] ② 있음 [☐ '1-1'로] ③ 모름 [☐ 'X'로]	
	1-1. 변화가 있었다면, 아래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주시요.(해당사항 모두 체크)	
	내용	
	언어	①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②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한다. ③ 자기비하적인 말을 한다. ④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을 한다. ⑥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 ⑦ 편지, 수양록, 노트 등에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적는다. ⑧ 기타()
	행동	① 수면상태의 변화: 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잔다.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잠이 들고 난 후에도 자주 뒤척이고 너무 일찍 잠에서 깬다. ② 식사상태의 변화: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는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신체적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③ 주변을 정리한다. ④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⑤ 외모관리에 대해 무관심하다. ⑥ 평소와 다른 기괴하거나 비일상적인 행동을 하며, 이로 인한 수행 저하가 발생한다. ⑦ 집중력 저하 및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이 어려우며 이로 인한 수행 저하가 발생한다. ⑧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을 보인다. ⑨ 죽음관련 음악, 시, 영화 등에 과도하게 몰입한다. ⑩ 어긋났던 인간관계를 갑자기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예전 잘못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등) 신변정리를 한다. ⑪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⑫ 기타()
	정서	① 감정상태의 변화: 죄책감, 수치감, 외로움,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낸다. 멍한 모습을 보인다. 절망감, 무기력감,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다. ② 대인기피, 흥미상실: 평소에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 이상 즐기지 않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피한다. ③ 기타()
	1-2. 자살시도 전 학생의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시요.	

X. 학생의 자살시도 전 친구관계

1. 친구관계	1-1. 교우관계	① 원만 ② 갈등 ③ 소외 ④ 자발적 고립 ⑤ 모름
	1-2.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였습니까?	잘 지내지 못함 ① ② ③ ④ 매우 잘 지냄

XI. 학생의 자살시도 전 행동특성

※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학생 행동에 근거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구분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때리기, 위협하기, 빼앗기).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담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낮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 하고, 겁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훔친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서식IV-6-③

학생 자해 사안 작성 안내 및 사안 보고서(양식)

- ① 자해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위기관리 지원을 받음
- ② 반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해사안보고서 작성 후 PDF 파일로 저장
- ③ PDF 파일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로 공문 발송

학생 자해사안 작성 안내문

자해는 죽으려는 의도 없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자해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해는 향후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자해행동을 발견하였을 때 조기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자해 사안 의뢰서”는 자해행동의 원인 및 관련요인을 탐색하여, 자해학생에 대한 지원 및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해학생의 가족 및 학교생활, 심리상태, 자해 방법 및 횟수, 자살관련 행동, 도움요청 여부, 자해학생에 대한 개입, 교사의견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첨부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해학생을 면담하신 후 “학생 자해 사안 의뢰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자해학생의 행동특성, 자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 시 유의점도 포함되어 있으니, 본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학생 자해 사안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해행동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경우 ■

- 자해상처의 특징이 있는 경우
 - 주로 상처를 내기 쉬운 손목, 팔, 손등에 나타납니다(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주로 나타남).
 - 피부에 화상, 자상, 상처 또는 유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 자해를 하는 학생들의 행동특성을 보이는 경우
 - 학생들은 자해행동을 잘 드러내지 않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손목 밴드를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 짧은 소매나 반바지와 같이 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는 활동을 꺼립니다.
 - 봉대를 자주 사용하고 적절하지 않은 용품을 지니고 있습니다(면도칼 등).
 - 자존감이 낮고, 우울 및 불안 증상이 악화됩니다.
 - 성적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 물질 남용이 있습니다.

자해행동 면담 시 유의사항

■ 자해학생과 면담을 할 때 ■

- 우선 자해 상처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 자해 상처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거나, 반복적인 자해가 있었다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자해행동이 여러 번 있거나, 상처가 심할 때는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학생에게 말해줍니다.
- 학생의 자해행동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 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화를 합니다.
- 처음부터 많은 질문을 하는 것보다 학생의 상황을 잘 들어 줍니다.
- 자해는 대부분 오랜 기간 지속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나므로, 처음부터 학생이 속이야기를 털어놓기 어려울 수 있음을 공감합니다.
- 자해를 그만하도록 말하는 것보다, 내면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줌으로써 학생이 혼자서 아니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에서 자해행동을 상담하는 역할을 맡은 교사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 학부모와 면담을 할 때 ■

- 가능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자해행동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부모에게 자해행동 개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및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해를 지속하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 자해행동에 대해 학부모가 분노감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자해행동의 원인과 심리적 기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도록 돕습니다.
- 자해행동 치료는 학생 내면의 심리적·환경적 어려움을 돌봐주어야 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학부모가 자녀의 자해행동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어야 하며, 학생의 문제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학생 자해 사안 보고서

()학교장 <직인>

작성자	(인)	작성자 직위	작성일자	년	월	일
			면담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연락처	H.P:	Tel:	E-mail:			

I. 자해학생 정보

1.성명(성별)	(남/여)	2. 생년월일	년	월	일	3. 학년/반	/
4. 학교명							
☐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한부모, 조부모, 혼자 거주 시 I. 자해학생 정보 중 5.가족형태 파악)				

II. 자해 사안(사고) 내용

☐	언제 자해를 시도했습니까?	년	월	일	시
☐	어디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까?	※ 구체적인 장소			
☐	어떤 방법으로 자해를 시도했습니까?	※ 구체적인 방법			
☐	자해행동 직전, 자해행동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까?	※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	자해를 하기 전 술이나 약물을 했습니까?	※ 술과 약물 각각 기재			
☐	자해를 하는 동안 신체적 통증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다면 그 정도는 어떠했습니까?	※ 통증 없음, 약간, 심함, 매우 심함으로 파악			
☐	자해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기 싫은 것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②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③ 우울이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④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얻기 위해 ⑤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⑥ 스스로를 처벌하기 위해 ⑦ 고통이나 자극을 느끼기 위해 ⑧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⑨ 또래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⑩ 기타()			

III. 이전 자해 시도 경험

☐	자해를 여러 번 시도했다면, 가장 처음 자해를 시도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만	세
☐	최근 3개월 동안,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면담을 실시하게 된 자해행동 제외 후 체크 ① 없음 ② 있음 ③ 모름	
☐	최근 3개월 동안,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면 자해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방법은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 면담을 실시하게 된 자해행동 제외 후 체크 ①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처내기(회) ② 때리거나 할퀴기(회) ③ 벽이나 책상 등에 신체 부딪히기(회) ④ 화상 입히기(회) ⑤ 약물 과다복용(회) ⑥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기(회) ⑦ 피부에 글자나 그림 등을 새기기(문신제외)(회) ⑧ 기타 (회)	

☐	최근 3개월 동안, <u>자해방법</u> 은 주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① TV드라마/영화 ②인터넷 ③뉴스/신문기사 ④소셜/책 ⑤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⑥이전 자해경험을 통해 ⑦기타 ()
☐	최근 3개월 동안, 자해시도를 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학생이 자해시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없음 ② 가족 ③ 친구 ④ 학교 선생님(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⑤ 정신건강 전문가(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⑥ 성직자 ⑦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사 ⑧ 온라인 상의 대화 상대 ⑨ 기타 ()
☐	최근 3개월 동안, 학생이 자해시도를 한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 알렸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직접 말하기 ② 상처 직접 보여주기 ③ 일기쓰기 ④ 유서 남기기 ⑤ SNS/블로그/메신저 등에 사진/글쓰기 ⑥ 기타 ()
☐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 중 자해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기간 상관없이 복수응답)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친구 ⑤ 학교선생님 ⑥ 이웃 어른 ⑦기타()
☐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 중 자살을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기간 상관없이 복수응답)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척 ④ 친구 ⑤ 유명인 ⑥ 기타() ⑦ 모름

IV. 자해학생 세부사항

	최근 3개월 동안,	
☐	•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우울한 기분이나 짜증이 난 적이 있습니까? ()	
☐	• 2주 이상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	• 1개월 이상 평소보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 적이 있습니까? ()	
☐	•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	
☐	• 참을성이 없었습니까? ()	
☐	•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났습니까? ()	
☐	신체/정신질환이 있습니까?	※ 있을 경우 병명 기재
☐	신체/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상태 호전 후 치료 종결 ②치료 중 ③완치되지 않았으나 중단 ④치료하지 않음 ⑤모름
☐	평소 스트레스를 받았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 구체적인 스트레스 내용 기재

V. 학생의 도움요청

☐	자해행동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① 없음 ② 가족 ③ 친구 ④ 학교 선생님(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⑤ 정신건강 전문가(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⑥성직자 ⑦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사 ⑧ 온라인상의 대화 상대 ⑨ 기타 ()
☐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도움을 청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② 자신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③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④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⑤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⑥ 다른 사람에게 알려 질까봐 ⑦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서 ⑧ 비용이 부담되어서 ⑨ 기타 ()

서식Ⅳ-7-①

아동학대(의심) 사안 보고서(양식)

(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보고용)

○ ○ 교육지원청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학생 생활 관련 사안 보고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피해학생 인적사항(생략가능)

학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고
학교명	학년 반	성명	관계	성명	
○○학교	○학년○반	○○○	부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나. 세부 내용 : (붙임1)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참고

붙임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보고
구분

☐최초☐최종

○○학교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기타
체크(○)					
〈중복체크 가능〉					

담임	성명:	부장 (책임교사)	성명:	교감	성명:	교장	성명:
	H·P:		H·P:		H·P:		H·P:

피해 학생	()학년 ()반 ()번 성명 : ()				
발생 일시	2000.00.00.~2000.00.00.(00회)		보고 일시	최초	2000.00.00.
접수 일시	2000.00.00.			최종	2000.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

특이사항	※ 재학대여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결과,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 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 일시보호	2000.00.00.	○○시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진행중	2000.00.00.	○○경찰서 등

☐ 향후 계획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추진 등

서식Ⅳ-7-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 보고 시 주의사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학교장 1명, 원장 1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교직원수 입력
- 교육청에서는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별개 기관으로 취급하여 통계 처리
(예: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통계로 별도 처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00학교(유·초·중·고)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00도 00시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2000. 00. 00		교육장소		2층 협의실 등
전체 교직원수 (학교장 또는 원장 각각 포함)	0명	이수 인원수	0명	집합 인원수	0명
				사이버연수 인원수	0명
이수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증빙자료〉 사진(파일크기 줄여서 삽입)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수료증 첨부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서 서식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명단]

순번	학교명	성명	직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일시	이수(수료)증번호
1	00초	김아동	교사	중앙교육연수원	2000.5.1.~6.1	
2						

아동학대(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번호	체크항목	체크란 ☒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서식Ⅳ-8

아동학대(의심) 관련 중대·언론보도 사안 보고서(양식)

아동학대(의심) 관련 중대 및 언론보도 사안 보고서		
○○중학교/○○교육지원청	작성자 : 직(책임교사, 장학사) 보고자 : 직(교장, 교육장) 성명 : 김 교 사 (서명) 성명 : 이 교 장 [직인]	
☐ 언론사명 : ☐ 보도제목 : ☐ 보도일자 : ☐ 보도내용 : -		
☐ 보도 경위 및 취재 현황 ○ ○ ☐ 사안 개요 ○ 발생 일시 : ○ 발생 장소 : ○ 관련 학교 : 경기도 ○○시 ○○학교(공립/사립, 학급수 : ○○학급) - 교장 이교장 (☎) - 교감 김교감 (☎), - 교감 박교감 (☎) ○ 관련 학생 - 피해자 : ○○학교 정피해(학년 반) - 학대 의심자 : ○ 사안 경위 및 내용 - - - ☐ 조치 사항 ○ ○ ○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사안보고를 검토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치를 추가 기재한 후 보고 교육지원청 사안보고서 작성자는 담당장학사, 보고자는 교육장임 ☐ 재발 방지 대책 ○ ○ ○		

아동학대 출결인정,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관련 기안문 및 양식(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요청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에서 본교에 재학 중인 아래 아동의 보호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해당 학생의 출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아동명 : ○○○ (○○년 ○○월 ○○일생)

나. 보호기관명 : 피해아동전용쉼터(○○도 ○○시 소재)

다. 쉼터 입소일 : 20○○년 ○월 ○일

라. 기간 : 20○○년 ○월 ○일 - 학생 출석 시 까지

마. 결석사유 :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바. 유의사항 : 아동 출결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

사. 출결인정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붙임 ○○○○○○ 요청공문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Ⅳ-9-②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등교학습지원교→원적교]

(등교학습 지원학교 → 피해학생 원적교)

학교명	OO학교	작성자	교사 OOO	연락처	

1. 인적 사항

학생	성명	OOO	생년월일	OOOO년 OO월 OO일
	재적교	OO학교 O학년 O반 OOO번		
	주소			

2. 출결 사항

구분	기간	수업일 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위탁 교육		OO일													

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간	특기사항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생활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를 통지합니다.

2000. 00. 00
OOOO장 (직인)

등교학습 신청서 (학생 작성→지자체 신청용)

등교학습 신청서			
주 소			
현재적교		학 년	○학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전화번호 (휴대폰)			
※ 신청 사유(예시) 본인은 ○○지역의 조부모집(또는 ○○쉼터)에서 머무르며 인근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 받기를 희망하므로,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Ⅳ-9-④

의견 제출서 (학교·아보전·시설 등→지자체 제출용)

등교학습 지원 의견 제출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 재적교			학 년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 제출인	성 명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 의견 제출 사유(예시) 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등교학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 재적교		학 년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의견서 (예시): 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위 학생의 등교학습 지원에 대한 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장(직인) ○○교육감(장) 귀하				

서식Ⅳ-9-⑥

비밀전학 요청 공문(예시)

비밀전학 요청(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도 공문 동시 시행

○○ 학교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원제목 :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따라 귀교의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해 비밀전학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교	○학년 ○반	○○○	아동학대로 인한 시설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따른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상담소견서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주무관 ○○○

담당 ○○○

과장 ○○○

(시·군·구의 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비밀전학 요청서(예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신고접수일	년 월 일	
학대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유기 및 방임	
취학요청사항	☐ 주소지 외 비밀전학 ☐ 주소지 내 비밀전학	
아동정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소	
	학교(학년, 반)	
학대행위자정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요청기관정보	기관명(주소)	
	담당 공무원	
	연락처	
사례개요	• 학대 피해 사항 - - -	
	• 비밀전학 요청 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상기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서식Ⅳ-9-⑥

비밀전학 관련 내부결재 기안문(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보고 (※ 원제목: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4항(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원제목 :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Ⅳ-9-⑥

비밀전학 요청 교육(지원청) 공문(예시)

교육(지원)청→피해아동이 전입할 학교

○ ○ 학교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전입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원제목 :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3. 다음의 아동을 귀교로 비밀전학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비고
○○도 ○○시 ○○학교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4.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상담소견서 1부. 끝.

○ ○ 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

과장 ○○○

교육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예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보호시설 →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위탁교육기관	00학교	작성자		연락처	

1. 인적 사항

학생	성명	0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재적교	00학교 0학년 0반 00번		
	주소			

2. 출결 상황

구분	기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위탁 교육															

3. 수상경력

구분	수 상 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참가인원)
교내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인증				

5. 진로희망사항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희망사유
	학 생	학부모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일 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학교)			
	(개인)			

7. 독서활동상황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를 통지합니다.

2000. 00. 00

위탁교육기관 00000장 (직인)

서식Ⅳ-10-①

학생 실종(유괴) 사안 보고서(양식)

학생 실종(유괴) 사안 보고서

- 수 신 : OO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위기지원단
 ■ 보고자 : 소속 직) 성명) (연락처:)
 ■ 보고일시 : 2023년 월 일, 00:00
 ■ 기본사항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안명		발생일시	0000.00.00. 00:00 ~ 00:00
사고 학생	000 (학년 반, 남/여)		

■ 사안 내용

- 사고경위
 -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
- 언론 보도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 경찰 조사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 사안 발생 후 학교 조치사항

- 가.
나.

■ 기타

※ 추가보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양식 없이 사안보고서 뒤쪽으로 첨부

학생 실종(유괴) 사안 결과보고서(양식)

학생 실종(유괴) 사안 결과보고서

- 수 신 : OO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학생위기지원단
- 보고자 : 소속) 직) 성명) (연락처:)
- 보고일시 : 2023년 월 일, 00:00
- 기본사항

학교명		전화번호	
소재지		발생일시	0000.00.00. 00:00 ~ 00:00
사안명			
사고 학생	000 (학년 반, 남/여)		

■ 사안 결과

■ 사고결과

-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

- 가출 등은 원인 포함

■ 언론 보도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 경찰 조사 내용(해당없는 경우 미기재)

-

■ 사안 종결 후 학생 상태

- 가.
- 나.

■ 학생에 대한 조치(예정)사항

- 가.
- 나.

■ 기타

※ 추가보고 자료가 있는 경우 별도 양식 없이 사안보고서 뒤쪽으로 첨부

참고자료

위(Wee) 프로젝트 연락처 현황

□ 위(Wee) 센터 위치 및 연락처

기관명	주소	(대표)전화번호
가평 위(Wee)센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17 가평교육지원청 별관2층	031-580-5174
고양 위(Wee)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64-27(구 백마초등학교 장항분교장)	031-901-9170
광명 위(Wee)센터	광명시 광명로777 광명교육지원청 별관1층	02-2610-0550
광주하남 위(Wee)센터	(광주)광주시 광주대로 178광주하남교육지원청4층	031-280-7271
	(하남)하남시 망월동200, 1층	02-480-5131~3
구리남양주 위(Wee)센터	남양주시 경춘로52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031-550-6346
군포의왕 위(Wee)센터	군포시 청백리길17 군포의왕교육지원청 2~3층	031-390-1180~7
김포 위(Wee)센터	김포시 김포한강1로 98번길35 고창초등학교 후관4층	031-982-2950~1
동두천양주 위(Wee)센터	동두천시 중앙로110-3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층	031-860-4333
부천 위(Wee)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219 부천교육지원청4~5층	032-620-0149
성남 위(Wee)센터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112 금빛관신관1층	031-759-8710
수원 위(Wee)센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8 창용중학교 별관3층	031-246-0818
시흥 위(Wee)센터	시흥시 장현순환로100 시흥가온중학교 4층	031-365-8290
안산 위(Wee)센터	안산시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2층	031-8085-3960~9
안성 위(Wee)센터	안성시 백성2길59 안성몽실학교 본관2층	031-670-8770~7
안양과천 위(Wee)센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0 안양과천교육지원청 5층	031-380-7063~9
양평 위(Wee)센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126 양평교육지원청 별관1층(교육지원청 뒷편)	031-770-5630~4
여주 위(Wee)센터	여주시 여양로103 정음관 앞 1층(여흥초 주차장옆)	031-885-0093
연천 위(Wee)센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356-1 연천교육지원청별관2층	031-839-0165~8
용인 위(Wee)센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128 현암중학교 4층	031-889-5890
의정부 위(Wee)센터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29 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1층	031-820-0092~6,8,9
이천 위(Wee)센터	이천시 이섭대천로1311번길18(증포동) 이천교육지원청 3층	031-645-1654
파주 위(Wee)센터	파주시 교하로1290번길38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2층	031-948-8834
평택 위(Wee)센터	평택시 장당길40 장당중학교 1층	031-650-1680~9
포천 위(Wee)센터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1520 포천교육지원청 마흘나래관2층	031-539-0150~5
화성오산 위(Wee)센터	오산시 북삼미로119 화성오산교육지원청1~2층	031-371-0651,6,8

참고자료

위기학생 지원 외부기관 현황

□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학대 피해아동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함. 시군 지자체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미배치 시 현장조사를 대행함

기관명	주소	연락처	관할지역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20. (영화동)	031-245-2448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96. 4층(도림빌딩)	031-874-9100	의정부,양주, 동두천,포천,연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06. 2층(태평동)	031-756-1391	성남,하남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11. 7층 (행신동,삼정프라자)	031-966-1391	고양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319. 골든타워 3층 302호	032-662-2580	부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1334. 4층(봉담읍,송현 빌딩)	031-227-1310	화성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39. 204호 (금곡동,다남빌딩)	031-592-9818	가평, 남양주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35. 402호	031-402-0442	안산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21.지젤레이크타워 802호(중동)	031-275-6177	용인,이천,여주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83. (대야동, 2층)	031-316-1391	시흥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33. 동방평택복지타운 (소사동)	031-652-1391	평택,안성
경기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수원천로347.	031-8009-0080	수원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526. (광명농협 신촌지점4층)	02-897-1577	광명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9. 계양빌딩7층	031-468-9821	안양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53, 여성행복센터 4층	031-523-3163	구리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64-2, 1층(송정동)	031-8027-0171	광주시, 양평군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로5길 8	031-360-1391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36 백산프라자 301호 (도마교동)	031-8042-7395	군포시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543 지오프라자 8층	031-8049-3891	김포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8번길 3-6, 1층	031-8077-9610	오산시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4층 407호(와동동)	031-839-0940	파주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청소년 전용 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운영 등)

번호	지역	주소		전화번호
1	경기도	본청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행정동우회관 1층	031-248-1318
2	군포시	군포시 수리산로 112, 상상마을 슬기관 2층		031-398-1277
3	과천시	과천시 참마음로9 과천청소년수련관 로비층		02-504-1388
4	광명시	광명시 디지털로34 3층 광명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99-2267
5	광주시	광주시 중앙로 회안대로 350-17 청소년수련관 3층		031-762-2219
6	김포시	김포시 걸포로76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031-984-1388
7	부천시	소사센터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032-715-4580
		원미센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107 복사골문화센터 301호	031-325-3002
		오정센터	부천시 소사로 780 원종청소년어울마당 2층	070-674-5127
8	성남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7(금담빌딩) 4층		031-756-1388
9	수원시	본소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293 수원시청소년재단 3층	031-212-1318
		장안분소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114 장안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242-1318
		영통분소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33 영통청소년문화의집 3층	031-215-1318
		권선분소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42 권선청소년수련관 2층	031-236-1318
		천천분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42번길 42 천천청소년문화의집 4층	031-271-2654
		칠보분소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577번길 209 칠보청소년문화의집 2층 209호	031-278-6862
		광교분소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7번길24 광교청소년수련관 3층	031-216-8354
10	시흥시	본소	시흥시 은행로179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	031-318-7100
		정왕분소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3층	031-318-7101
11	안산시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76 초지종합사회복지관 4층		031-414-1318
12	안성시	안성시 낙원길108 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676-1318
13	안양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8045-2745~6
14	양평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183 삼진빌딩 2층		031-775-1318
15	여주시	여주시 청심로 88 여주시산림조합		031-882-8889
16	오산시	오산시 오산로278번길3 (2,3층)		031-372-4004
17	용인시	본소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청소년수련관 4층	031-324-9300
		수지분소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435 수지구청 내 수지복지센터 5층	031-266-9301
18	의왕시	본소	의왕시 문화공원로33 의왕시청소년수련관 3층	031-452-1388
		포일분소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어울림센터 2층	031-245-4530

번호	지역	주소		전화번호
19	이천시	본소	이천시 영창로260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031-634-2777
		청미분소	이천시 장호원을 서동대로 8965번길 57	
20	평택시	평택시 평남로616번지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56-1383
21	하남시	하남시 대청로10 하남시청 사회복지과 청소년상담실		031-790-6680
22	화성시	본소	화성시 태안로145 유엔아이센터 2층	031-225-1318
		항남분소	화성시 항남읍 항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031-8047-0279
23	가평군	본소	가평군 청평면 온고개로 39,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1층	031-582-2000(내선1)
		가평 분소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 가평청소년문화의집 3층	031-582-2000(내선2)
		설악 분소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65, 설악가족행복지원센터 2층	031-582-2000(내선3)
		조종 분소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5, 조종청소년문화의 집 2층	031-582-2000(내선4)
24	고양시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92-4269
25	구리시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3층 구리시청소년재단		031-557-2000
26	남양주시	본소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8098~9
		동두분소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주민자치센터 1층	031-590-8404
		북부분소	남양주시 금강로 1059-26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층 2층	031-590-8979
27	동두천시	동두천시 지행로 95 청소년수련관 3층		031-861-1388
28	양주시	본소	양주시 옥정서로 254, 행복플러스어린이집 2층	031-858-1318
		고읍분소	양주시 고읍남로 205, 양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서부권분소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63-8,2층	
29	연천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2층		031-832-4452
30	의정부시	본소	의정부시 의정로27, 청소년수련관 3층	031-872-1388
		호원분소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155-1 3층	031-828-9566
31	파주시	본소분소 통합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415(와동동) 운정행복센터 6층	031-540-5300
32	포천시	본소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내2층	031-533-1318
		분소	포천시 중앙로96 2층	031-536-1388

□ 정신건강복지센터

○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수원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7번길17	031-242-5737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28 KT 고양지사 2층	031-908-3567
성남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4층	031-751-2445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73, 소사어울마당 4층	032-654-4024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69(정자동) 경기도의료원 2층	031-212-0435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95 연천군보건의료원	031-832-8106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101, 장안구청 1층	031-247-0888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87 1층	031-411-7573~4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11,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031-286-0949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194, 보건소 별관 2층	031-762-8728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131, 보건소3층	031-838-4181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522(다산동, 남양주시청 제2청사)	031-592-5891~2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보건지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56	031-658-9818
	[송탄보건지소]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031-8024-7226
	[안중보건지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402	031-8024-8611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08번지 보건소별관 2층	031-998-4005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031-863-3632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48 만안구보건소 5층	031-469-2989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69번지 과천시보건소 2층	02-504-4440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72, 오정어울마당3층	032-654-4024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3-6, 현대빌딩2층	031-968-2333~4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34 의왕시보건소 별관1층	031-458-068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하남시미사보건센터 2층	031-793-6552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59 보건소 2층	031-374-8680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수정본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80-7000
	[중원본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사로 137, 성남시노인보건센터	031-739-9969
	[분당본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3층	031-702-7214
	[판교본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10, 운중동주민센터 내 판교보건지소	031-729-4246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향남본소]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내1층	031-352-0175
	[동탄본소] 화성시 노작로226-9, 동탄보건지소 2층	
	[봉담본소] 화성시 봉담읍 진등1길 47-2, 덕수빌딩 3층	
	[마도본소]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 마도보건지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84 보건소 3층	031-523-8672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221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461-1771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2, 2층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86-3435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야본소]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55 5층, 정신건강복지센터	031-316-6661,3
	[정왕본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23번길 19, 정왕보건지소 2층 정신건강상담실	031-319-3419
	[목감본소]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목감 어울림센터 2층 마음 건강상담실	031-482-3419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119 이천상공회의소 2층	031-637-2330~1
광명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13 광명시보건소 3층	02-897-7786~7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3층	031-771-3521 031-773-1331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본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68, 파주시건강증진센터 1층	031-942-2117
	[분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67, 2층	031-942-2118
가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155-9,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1, 3층	031-581-8881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1612포천시보건소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031-532-1655
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8번길 5, 2층	031-840-7320-4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강변로74번길24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031-8057-0104

□ 자살예방센터

지역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경기도립수원의료원 2층	031-212-0437
가평군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155-15, 1층	031-581-8881
고양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4층	031-927-9275
과천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69번지 과천시보건소 2층	02-504-4440
광명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13, 광명시보건소 1층	02-2618-8255
광주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194, 보건소 별관 2층	031-762-8728
구리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84 보건소 3층	031-523-8672
군포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221	031-360-1779
김포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08번지 보건소별관 2층	031-998-4005
남양주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522(다산동, 남양주시청 제2청사)	031-592-5891~2
동두천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031-865-3632
부천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72, 오정어울마당3층	032-654-4024
성남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215,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4-3220
수원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47번길17, 해피마음터3층	031-214-7942
시흥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55, 시흥시보건소 5층 정신건강복지센터	031-316-6661

지역	주소	전화번호
안산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5, 상록수보건소3층	031-418-0123
안양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만안구보건소 5층	031-469-2989
양주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양주시 삼송로 38번길 5, 2층	031-840-7320~4
양평군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3층	031-771-3521 031-773-1331
여주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338번지 여주대학교 소통본부 2층	031-886-3437
연천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95 연천군보건의원	031-832-8106
오산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59 보건소 2층	031-374-8680
용인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11,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031-286-0949
의왕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34 의왕시보건소 별관1층	031-458-0682
의정부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17, 성원빌딩 5층	031-894-8089
이천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1119 이천상공회의소2층	031-637-2330
파주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시건강증진센터 1층	031-942-2117
평택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56	031-658-9818
포천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0 5층	031-532-1670
하남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하남시미사보건센터 4층	031-796-6509
화성시자살예방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8길 36,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A동 1층	031-352-0175

□ 경기도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근거 국가가족정책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

센터명	주소	대표번호
가평군가족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2층	031-582-9902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27	031-969-4041
과천시가족센터	과천시 관악산길58(관문동107-5)	02-503-0070
광명시가족센터	광명시 디지털로34 2층(철산동379)	02-6265-1366
광주시가족센터	광주시 통미로52번길19(송정동115-4)	031-798-7141
구리시가족센터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	031-556-3873
군포시가족센터	군포시 수리산로 112 수리산상상마을 슬기관 1층	031-392-1811
김포시가족센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564	031-996-5920
남양주시가족센터	남양주시 경춘로522남양주시청 제2청사2층, 4층	031-553-8211
동두천시가족센터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층	031-863-3801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2번길 60 1층	032-326-4212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30-1 3층	031-755-9327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61우림빌딩6층	031-245-1310
시흥시가족센터	시흥시 정왕천로449번길 51	031-319-7997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그린손해보험안산사옥 6층	031-501-0033

센터명	주소	대표번호
안성시가족센터	안성시 산수유길 15-0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031-677-7191
안양시가족센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8동안구청 별관 2층	031-8045-5572
양주시가족센터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6층	031-858-5681
양평군가족센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3 양평행복플러스센터 2층	031-775-5951
여주시가족센터	여주시 세종로61현대아파트상가3층	031-886-0321
연천군가족센터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5층	031-835-0093
오산시가족센터	오산시 성호대로 83 1층	031-378-9761
용인시가족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031-323-7131
의왕시가족센터	의왕시 덕장로19청계종합사회복지관4층	031-429-8931
의정부시가족센터	의정부시 둔야로5번길 67	031-878-7117
이천시가족센터	이천시 남천로 31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1-637-5525
파주시가족센터	파주시 중앙로229	031-949-9161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 서정로295 북부복지타운1층	031-615-3952
포천시가족센터	포천시 해룡로 120 차 의과학대학교 면학관 101호	031-532-2062
하남시가족센터	하남시 신장동덕풍천서로9,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별관4층	031-790-2993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 병점동 태안로145 유엔아이센터 4층	031-267-8787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번호	지역	주소	전화번호
1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신흥3동 3435번지)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1-2768~9
2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031-256-9478
3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구단원보건소 2층	031-411-8445~6
4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안양시보건소 5층	031-464-0175
5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38번길 16(의정부동 427-33)	031-829-5001~2
6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파주시 건강증진센터 2층)	031-948-8004 031-948-8044
7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남본소 경기도 화성시 서봉로 998 정남행정복합센터 내 정남보건지소 1층	031-354-6614
		동탄본소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26-9 동탄보건지소 2층	031-8003-3803

참고자료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자료 목록

※ 자료 탑재 :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 메인화면 중앙 배너 '생명존중'

연번	자료명	대상	자료 형태	주요내용	활용 방법	자료 개발	개발 연도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공모전 우수작품	초·중·고	포스터 웹툰 UCC	2015~2022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홍보, 캠페인, 수업자료로 활용	수업 자료 및 홍보	교육부	2015 ~ 2022
2	자살예방 뉴스레터	학부모 학생 교원	계기 자료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 - 2015년 ~ 2022년 교사용 뉴스레터 2018년 ~ 2022년	계기 교육 및 수업	교육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학생정신건강지 원센터	2015 ~ 2022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영상	초·중·고		(초)소중한 너와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요 (중)변성기 (고)동생의 편지	수업 자료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 원센터	2018
4	애도반응의 이해	학생 교원	동영상	자살 등 가까운 지인의 상실에 대한 애도 교육 플래시 동영상(6')	수업 및 계기 교육	교육부/학생정 신건강지원 센터	2016
5	생명존중교육 길라잡이 (초·중·고 3종)	초·중·고	교사용 교수- 학습자료	초: 나와 너의 생명, 생명과 관계, 생명과 사회 중: 생명존중교육의 의미, 생명존중교육의 실제 고: 나의 존재 느끼기, 타인의 존재 느끼기, 사람이 아닌 존재 느끼기, 생명의 아픔,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 함양	수업 자료	교육부/경기도 교육청	2015
6	분노조절 교육	초·중·고	동영상	학생정서함양교육 분노조절(4'40")	수업 및 계기 교육	교육부/학생정 신건강지원 센터	2015
7	우리 함께 해피up. 힘내요, 우리가 있어요	초·중·고	동영상	캠페인 및 생명존중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래(댄스)	캠페인	교육부/대구광 역시교육청	2015
8	교사를 위한 학교 정신건강 핸드북	교원	소책자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학생 상담 및 지도	교육부/대한소 아청소년정신의 학회	2015
9	학교재난위기 및 자살사건 발생 시 위기관리	교원	동영상	학교재난위기 및 자살사건 대비를 위한 교직원 교육용(총 4편, 편당 약 10'~15')	교직원 교육 자료	교육부/학생건 강정보센터	2015
1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자료	중·고	동영상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수업자료(학생 인터뷰를 통한 학생의견 반영, 5') 포기 하지마,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30")	수업 자료	교육부/대구광 역시교육청	2015
11	생명 감수성 증진 교육	초·중·고	동영상	생명감수성(각 편당3~5') 1편 - 또 하나의 우주, 나, 2편 - 우리, 따뜻함의 울타리 3편 - 물, 생명, 사랑 4편 - 길 위에서 만난 동물들 5편 - 생의 마지막 그 곁을 지켜주세요.	수업 및 계기 교육	교육부/경기도 교육청	2015
12	학생자살예방 인식개선	대국민	동영상	학생 자살관련 인식개선(총 2편)	인식 개선	교육부	2020
13	코로나 시대에 슬기로운 학부모 생활	학부모	유튜브 탑재 동영상	(1회) 학교 및 학습, 또래문제(유한익) (2회) 코로나블루, 자살, 자해 문제(박준성) (3회)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 문제(방수영) (4회) 사춘기와 감염병, 현명한 대처법(손석한) (5회) 우리 아이 양육 코칭(오은영)	학부모 교육	교육부/학생정 신건강지원센터 /청소년모바일 상담센터	2020

전국 시도교육청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자료 목록

1. 서울특별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Health 인(人) 원격 보건교육: 8. 정신건강증진 교육(생명존중과 자살예방)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2	코로나19 신학기 EDU-백신 3.0 2021 토닥토닥 마음방역 영상자료			
	2021	1편 : 슬기로운 동물친구들(초)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2021	2편 : 토닥토닥 관계 맺기 ;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중)	학생	
	2021	3편 : 토닥토닥 관계 맺기 ; 온라인에서 좋은 첫인상 남기기(중)	학생	
	2021	4편 : 토닥토닥 스트레스 날리기 ; 어떻게든 되겠지(중,고)	학생	
	2021	5편 : 토닥토닥 스트레스 날리기 ; 호흡에 집중하기(중,고)	학생	
3	지식채널e 시리즈			
	2021	자살예방 교육자료 (1탄) 저 안 괜찮아요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2021	자살예방 교육자료 (2탄) 너의 사춘기에게	학생	
	2021	자살예방 교육자료 (3탄) 내이름을 불러줘	학생	
	2020	코로나블루 극복 내 마음의 블루 스크린	학생	
4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감정)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 1	학생	서울시교육청 부서홈페이지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감정)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 2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자존감) 소중한 나와 너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자성예언)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어렵지 않아요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ABC 이론) 감정은 어디에서 올까요?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ABC 이론)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뀌어요!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현실치료) 욕구를 알아봐요!	학생	
	2021	초등 마음키움 심리정서 프로그램: (현실치료) 새롭게 행동해봐요!	학생	
	2021	청소년용 생명존중교육 <라이프 히어로즈>: 1회기: 신호 발견!	학생	
	2021	청소년용 생명존중교육 <라이프 히어로즈>: 2회기: 구해줄게!	학생	
	2021	청소년용 사후 안정화 프로그램: 1회기: 힘들어도 괜찮아	학생	
	2021	청소년용 사후 안정화 프로그램: 2회기: 안녕? 그리고 안녕	학생	
5	2021	(1차시)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	학부모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2021	(2차시) 부모의 감정 돌보기	학부모	
	2021	(3차시)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내 아이	학부모	
	2021	(4차시) 자존감 만렙을 위한 요런 칭찬~ 아주 칭찬해!	학부모	
	2021	(5차시) 산만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아이와 올바른 부모의 자세	학부모	
	2021	(6차시) 소통과 성장을 돕는 질문의 기술	학부모	
6	2022	코로나19 트라우마 극복하기(학생편)	학생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2022	코로나19 트라우마 극복하기(교사편)	교사	
	2022	코로나19 트라우마 극복하기(학부모편)	학부모	
	2022	불안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학생편)	학생	
	2022	불안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사편)	교사	
	2022	불안한 미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학부모편)	학부모	
	2022	대화와 공감이 필요한 지금 (학생편)	학생	
	2022	대화와 공감이 필요한 지금 (교사편)	교사	
	2022	대화와 공감이 필요한 지금 (학부모편)	학부모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생명을 지키는 작은 관심! 생명존중 게이트키퍼 교육(VOD)	초등교사 학부모	▶ 학교지원서비스 (https://bsss.pen.go.kr/)
2	2022	위기 청소년을 성인으로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VOD)	중등교사 학부모	▶ 원클릭생활교육 (https://home.pen.go.kr/oneclick/)

3. 대구광역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교직원용 생명존중교육 “자해 이해와 대응”	교직원	시교육청
2	2022	학생마음건강지킴이 “생명존중 자살예방 가이드”	교직원	배부
3	2022	대학병원 Wee센터 홍보 리플릿	학생, 교직원	배부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청소년 스트레스 관리법	학생	▶ 유튜브
2	2021	[사춘기 청소년과 대화법] 1편_청소년의 이해	학생, 학부모	▶ 유튜브
3	2021	[사춘기 청소년과 대화법] 2편_사춘기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학생, 학부모	▶ 유튜브
4	2021	정신건강 인식개선 고민상담 1편_친구관계	학생	▶ 유튜브
5	2021	정신건강 인식개선 고민상담 2편_진로고민	학생	▶ 유튜브
6	2021	정신건강 인식개선 고민상담 3편_가족관계	학생	▶ 유튜브
7	2021	내 아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上편	학부모	▶ 유튜브
8	2021	내 아이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下편	학부모	▶ 유튜브
9	2021	청소년 일탈에 따른 보호자 대처방안	학부모	▶ 유튜브
10	2021	인터넷 심리테스트 믿어도 될까?	학생, 학부모	▶ 유튜브

5. 광주광역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2	학생 마음 건강 지키기 영상 자료(8편) 1. 저는 학생인데 죽고 싶어요 2. 심대지만 절망을 느껴요(학교 밖 청소년) 3. 범죄 피해를 당한 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4. 게임 말고는 삶에 즐거움이 없어요 5. 헤어지자는 말에 죽고 싶어요 6. 목숨보다 자존심이 소중해요 7. 죽어도 학교에서 맞고 다닌다고는 말 못해요 8. 공부가 안 돼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학생, 학부모	▶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누리집-알림마당- 마음건강정보)

6. 대전광역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학생·학부모용 집단상담 교육 프로그램	학생·학부모	교육청 자료실
2	2021	위(Wee) 센터 운영가이드	교사	인쇄물로 학교 전달
3	2021	한 눈에 알아보는 위(Wee) 클래스	학생·학부모·교사	인쇄물로 학교 전달
4	2021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리플릿	학생	인쇄물로 학교 전달
5	2022	문자위기상담 안내 리플릿	학생·학부모·교사	인쇄물로 학교 전달
6	2022	위(Wee) 프로젝트 및 위(Wee) 클래스 운영가이드	교사	인쇄물로 학교 전달

7. 울산광역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교실에서 만나는 학생 위기 지원 가이드	교사	▶ 학교 배부
2	(교육부)	학교를 위한 응급심리지원 매뉴얼	교사	▶ 학교 배부
3	(교육부)	학생 자해 대응 교사용 안내서	교사	▶ 학교 배부
4	(교육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교사	▶ 학교 배부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학생 자살·자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실무 매뉴얼	교원	▶ 공문,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2	2022	학생 자살예방 위기문자상담망 “다들어줄게” 활용 안내 포스터(세종형)	학생, 학부모	▶ 공문,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3	2022	학생 자살시도/자해 대응 안내서	교원	▶ 공문,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4	2022	위기학교 응급심리지원 안내서	교원	▶ 공문,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9. 경기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자료집	교사	25개 교육지원청 배부
2	2021	애도 프로그램 자료집(잘가 친구야)	교사	위센터 배부
3	2021	위기학생 대처 Q&A 자료집	교사	학교 배부
4	2021	E-loi(이로울) 클래스 교사용 매뉴얼	교사	위센터 및 학교 배부
5	2021	캔들 교사용 매뉴얼	교사	위센터 및 학교 배부
6	2021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교사용 위기학생 지원 가이드 북	교사	위센터 및 학교 배부
7	2022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알아보기	교사	위센터 및 학교 배부

10. 강원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2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자료 안내 -초등학생 대상: 마음독감 예방접종(6차시) -중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 인식개선 교육(6차시)	학생, 교직원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11. 충청북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학교 응급심리지원 매뉴얼	교사	공문게시
2	2021	감염병 재난시 정신건강 관련 질문지(학교급별)	학생	공문게시
3	2021	학교 자살위기대응 매뉴얼	교사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4	2022	마음교육자료 '마음다이어리'	학생	단위학교 책자 배부

12. 충청남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2	학생 위기관리 안내서	교원	▶ 충청남도교육청 자료집
2	2020	[충남교육가족 마음건강프로젝트] 코로나지만 괜찮아유~	학생, 학부모, 교원	▶ 유튜브 충남교육청

13. 전라남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업꾸러미(초등용)	교원	▶ 전라남도교육청 ▶ 학생건강교육센터
2	2021	학생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수업꾸러미(중등용)	교원	▶ 전라남도교육청 ▶ 학생건강교육센터
3	2021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 안내 콘텐츠	학생, 교원, 학부모	▶ 전라남도교육청 ▶ 각급학교 홈페이지
4	2021	괜찮니 톡톡톡	교원	▶ 각급학교 배부
5	2021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리플릿	교원	▶ 각급학교 배부
6	2021	위기학생 신호등 지원시스템 매뉴얼	학생, 교원, 학부모	▶ 각급학교 배부
7	2021	학생 심리정서지원 전남맵 안내자료	학생, 교원, 학부모	▶ 각급학교 배부
8	2022	생명지킴이 나무 및 스티커	학생	▶ 각급학교 배부
9	2022	함께해요! 생명지킴이 학생 교육 리플릿	학생	▶ 각급학교 배부
10	2022	자살예방 위기상담전화 안내 콘텐츠	학생, 교원, 학부모	▶ 각급학교 배부
11	2022	위기학생 신호등 지원시스템 e-Book	학생, 교원, 학부모	▶ 각급학교 배부
12	2022	학생 심리정서지원 전남맵 e-Book	학생, 교원, 학부모	▶ 각급학교 배부
13	2022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리플릿	교원	▶ 각급학교 배부
14	2022	초등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교원	▶ 각급학교 배부
15	2022	중등용 생명지킴이 교육 프로그램	교원	▶ 각급학교 배부
16	2022	학생 자살예방(생명존중) 집중관리주간 운영자료	학생, 교원, 학부모	▶ 각급학교 배부

14. 경상북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2	학생정신건강증진 교육자료 *총 6편(초등학교 3편, 중·고등학교 3편), 동영상(mp4) -초등 1편 자존감 뽀뽀(7분40초) -초등 2편 통하고 통하는 친구(6분24초) -초등 3편 마음신호등 온(On)(6분44초) -중등 나에게 주고 싶은 세가지 1편 “나를 표현하고”(6분54초) -중등 나에게 주고 싶은 세가지 2편 “너를 만나고”(7분42초) -중등 나에게 주고 싶은 세가지 3편 “가족과 소통하고”(7분38초)	학생, 교직원	▶ 유튜브(맛쿨멋쿨) 탑재 https://bit.ly/3cvgf7v
2	2022	*인쇄물 총 5종 1. MAP 마음건강증진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2. 자해&자살 위기개입 지침서 3. 리플렛 1편(자해에 대한 이해) 4. 리플렛 2편(자해 대응 예방) 5. 리플렛 3편(생명사랑 남서부센터 및 도내 마음건강 관련기관)	교직원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생활과, 생명사랑센터, 자료실 탑재
3	2022	다 들어줄 개 위기문자 상담망 안내 리플렛(1장)	학생	인쇄물 경북 도내전교 배부

15. 경상남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청소년 자해에 관한 학부모 도움 안내서	학부모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2	2020	자해 청소년을 위한 상담선생님의 토닥 편지	학생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3	2020	학생 자살(자해)대응 교사용 안내서	교사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4	2021	학교응급심리지원에 대한 안내	교사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5	2021	학교응급심리지원 업무가이드	교사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6	2021	슬기로운 마음건강상자 사용 안내서	교사	▶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1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1	2021 생명존중 실천 캠페인 영상 ‘작은 관심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 유튜브, TV, 라디오
2	2022	마음챙김 애니메이션 6편(초등3, 중등3)	학생	▶ 유튜브
3	2022	스트레스 시대에 의미있는 일 실천하기	학생, 교사	각 학교 책자 배부
4	2022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힐링콘서트	학부모, 교사	▶ 유튜브, TV
5	2022	2022 생명존중 실천 캠페인 영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생명을 살립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 유튜브, TV, 라디오
6	2022	마음건강 <사랑 talk! talk> 캠페인 영상 ‘사랑을 말해요.’	학생, 학부모, 교사	▶ 유튜브, TV

17.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최근 3년간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재 및 콘텐츠 개발 현황 〉

(‘22.9.20.기준, 단위 : 종)

구분	학생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코로나19 대응	학부모 교육	뉴스레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계
2020	3	6	4	65	4	82
2021	3	0	3	44	5	55
2022	0	0	3	38	8	49
계	6	6	10	147	17	186

① 학생정신건강 및 생명존중 콘텐츠 목록(6종)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중학생 정신건강 토크보기 (지도서, 활동자료, 읽기자료)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	2020	중학교용 정신건강리터러리시 (지도서, 워크북, ppt)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	2020	교사용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	교사	강사 제공
4	2021	고등학교용 정신건강 리터러리시 교재 (지도서, 워크북, ppt)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	2021	[생명존중교육자료] (초등 고학년) 슬기로운 마음생활 (매뉴얼, 동영상, 활동지, ppt)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6	2021	우리 아이를 위한 따뜻한 처방전	학생,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② 코로나19 대응 자료 목록(6종)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학생, 학부모	▶ 유튜브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2	202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재난으로 무너진 마음건강을 다시 세우려면	학생, 학부모	▶ 유튜브
3	202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재난으로 무너진 마음건강을 다시 세우려면	학생, 학부모	▶ 유튜브
4	2020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심리지원 방안 안내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5	2020	감염병 대응 학교 심리방역 가이드	학생, 학부모,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6	2020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극복 심리지원 방안 안내 동영상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③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목록(10종)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 1편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2	2020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 2편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3	2020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 4편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4	2020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 5편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5	2021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 1회 영상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6	2021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 2회 영상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7	2021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 3회 영상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8	2022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콘서트 (1차시)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9	2022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콘서트 (2차시)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10	2022	2022 우리 아이 성장 토크콘서트 (3차시)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유튜브

④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 정신건강 소식지(뉴스레터, 카드뉴스) 목록(147종)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2020 중등교사용 뉴스레터 (학생의 분노조절을 대하는 교사의 마음)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	2020	2020 초등교사용 뉴스레터 (학생의 분노조절을 대하는 교사의 마음)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10호(우리 아이 감정 그릇 튼튼하게 하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10호(우리 아이 감정 그릇 튼튼하게 하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 (학생의 수면문제에 대처하는 교사의 마음)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6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9호(건강한 수면 습관)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7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9호 (건강한 수면습관)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8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 특별호 (코로나19 심리극복)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9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 (자살의 징후 발견과 학생들을 돕는 방법)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0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8호(자살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1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8호 (자살 자해로부터 내 아이 지키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2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 (식이장애)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3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7호 (신체와 외모)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4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7호 (신체와 외모)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5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_행동지도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6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6호 (운동)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7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6호 (운동)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8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특별호 (부모 자녀 의사소통 방법)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9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특별호(올바른 자녀지도법)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0	2020	2020 중고등교사용 뉴스레터 (불안장애)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1	2020	2020 초등교사용 뉴스레터 (틱장애)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2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5호 (불안장애)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3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5호 (틱장애)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4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5	2020	2020 학부모용 뉴스레터 4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6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3호(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위해서)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7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3호 (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위해서)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8	2020	2020 중고등학부모용 뉴스레터 2호(새 학년 친구 관계 돕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29	2020	2020 초등학부모용 뉴스레터 2호 (새 학년 친구 관계 돕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0	2020	2020 교사용 뉴스레터 (코로나19)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1	2020	2020 학부모용 뉴스레터 1호 (코로나19)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2	2021	[2021년 12호]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뉴스레터 (스마트폰 사용/사춘기 학생과의 대화법)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3	2021	[2021년 11호]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뉴스레터 (감정조절)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4	2021	[2021년 10호]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뉴스레터 (건강한 수면습관)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5	2021	[2021년 9호] 교사용 카드뉴스 (새학기 친구관계)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6	2021	[2021년 9호] 학생용 카드뉴스 (새학기 친구관계)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37	2021	[2021년 9호] 학부모용 카드뉴스 (새학기 친구관계)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8	2021	[2021년 9호]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뉴스레터 (새학기 친구관계)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39	2021	[2021년 8호] 학부모용, 교사용 뉴스레터 (신체와 외모/식이문제)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0	2021	[2021년 7호] 학부모용, 교사용 뉴스레터 (운동/슬기로운 행동지도)	학부모,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1	2021	[2021년 특별제2호] 학생용 카드뉴스 (마음건강 지키기 : 자살자해예방편)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2	2021	[2021년 특별제2호] 학부모용, 교사용 카드뉴스 (마음건강 지키기 : 자살자해예방편)	학부모,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3	2021	[2021년 특별제2호] 학부모용, 학생용, 교사용 뉴스레터 (마음건강 지키기 : 자살자해예방편)	학부모, 학생,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4	2021	[2021년 5호] 학부모용, 교사용 뉴스레터 (틱/불안)	학부모,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5	2021	[2021년 4호] 학부모용, 교사용 뉴스레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학부모,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6	2021	[2021년 2호] 학부모용 뉴스레터 (코로나우울 대처하기)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7	2021	[2021년 특별제1호] 학부모용 뉴스레터 (귀하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8	2022	[2022년 특별2호] 교사용, 학부모용 뉴스레터 / 학생용 카드뉴스 (세계 정신건강의 날)	교사,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49	2022	[2022년 5호] 학생용 카드뉴스 (마음건강이란)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0	2022	[2022년 5호] 교사용, 학부모용 뉴스레터 (마음건강이란)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1	2022	[2022년 4호] 학생용 카드뉴스 (감정의 화산 폭발 막기)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2	2022	[2022년 4호] 교사용, 학부모용 뉴스레터(불안한 아이를 돕는 방법)	교사,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3	2022	[2022년 3호] 학생용 카드뉴스 (건강한 수면습관)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4	2022	[2022년 3호] 교사용, 학부모용 뉴스레터 (신체와 외모)	교사,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5	2022	[2022년 특별호] 학생용 카드뉴스 (우리들의 마음건강 진료, 팩트 체크)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6	2022	[2022년 특별호] 교사용, 학부모용 뉴스레터 (팩트 체크, 마음건강 관리)	교사,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7	2022	[2022년 2호] 학생용 카드뉴스 (친구 사귀기)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8	2022	[2022년 2호] 교사용, 학부모용 뉴스레터(새학기 친구관계 돕기)	교사,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9	2022	[2022년 1호] 학생용 카드뉴스 (우리들의 마음건강 이야기)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60	2022	[2022년 1호] 학부모용 뉴스레터 (자녀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을 위해서)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61	2022	[2022년 1호] 교사용 뉴스레터 (자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을 돕는 방법)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련 콘텐츠 개발 목록(17종)

구분	개발 연도	교육자료	대상	게시처
1	2020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동영상 설명자료 (초등학교 학부모용)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2	2020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동영상 설명자료 (중·고등 학생용)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3	2020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동영상 설명자료 (교사용)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4	2020	2020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매뉴얼	교사, 교육청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5	2021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교사, 교육청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6	2021	20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동영상 설명자료(초등학교 학부모용) : 보완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7	2021	202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동영상 설명자료 (중·고등 학생용) : 보완	학생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8	2021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동영상 설명자료(교사용) : 보완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9	2021	2021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매뉴얼 사용자 교육자료 (공통)	교사, 교육청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 유튜브
10	2022	202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관리 매뉴얼 & 교육자료	교사, 교육청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1	2022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Q&A] 1. 검사 해석에 대한 궁금증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2	2022	[보호자가 궁금해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Q&A] 2. 전문기관 심층평가는 누가, 어떻게 받나요?	학부모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3	2022	202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매뉴얼 사용자 교육자료 (공통)	교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14	2022	202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도교육청(지원)청 담당자 설명회 자료	교사, 교육청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학생건강정보센터

위기학생 상담 및 심리지원 초기 대응 절차

※ 학교폭력, 자살(시도) 및 자해, 아동학대 및 성 관련 피해 등 위기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였을 경우

단계	처리 내용	비고
사건 발생 인지	-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의뢰 및 신고접수,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접수 등을 통해서 사건 발생 인지 -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상담 지원 안내 내부 상담을 원할 시 위(Wee) 클래스 연계 외부 상담을 원할 시 위(Wee) 센터 및 외부 전문기관* 연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가능) * 해바라기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원 등	업무 담당자
상담 접수	- 관련 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원원 진료 등, 가해(의심)자-격리·심리적 안정 등) 확인 - 필요 시 위기 스크리닝, 자기보고식 검사 등 실시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상담 개입	- 학생 심리평가하고 사례개념화하여 상담 계획 수립 - PTSD, 자존감 회복, 감정조절 등 피해학생에게 적절한 상담 지원 - 개인상담, 집단상담, 2차 심리검사(성격, 정서, 지능, 행동 평가 등), 심리지원 프로그램, 외부 전문기관 연계 등 - 필요 시 학부모 상담 및 교사 상담 지원을 통해 학생의 보호요인 강화 -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의심)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감정이 격앙되는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 -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유의사항 - 피해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어린 감정을 표현한다. - 피해학생 보호 및 진술오염 방지를 위해 초기 진술은 동의하에 녹음하는 것도 고려한다. - 피해 사실을 기억하도록 종용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부득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충분한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한다. -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학생의 요구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문상담교사의 판단을 배제한 사실 관련 내용을 기록한다.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상담 종결	- 상담 종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확인 - 종결 후에도 언제든지 재상담이 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상담 채널 및 스트레스 관리 방법 안내 - 상담 만족도 평가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추수상담	- 학생의 적응 정도와 심리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 교사 및 학부모 사후 협의를 통해 학생의 적응 상태 재확인 - 이용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 안내 등	교사 학부모

참고자료

교사용 학생 자살징후 체크리스트 안내

【 교사용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 개요 】

- ▶ (사용 목적)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의 이상 징후를 점검 시 사용, 자살 경고신호 등 언어·행동·정서 문제의 조기발견 가능
 - ▶ (사용 대상) 초·중·고 학생 관찰이 가능한 모든 교사
 - ▶ (사용 방법)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필요 시에 수시 활용 가능, 체크리스트에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학생과 1:1 면담 또는 전문기관 상담 연계 등 조치
 - ▶ (사용 절차) 체크리스트 작성(최근 3개월 이내 해당 내용 체크) → 2개 이상 해당되는 학생과 면담(자살 생각, 자살 계획 질문*) → **명확한 자살 시도·계획이 있는 경우 즉각 보호자에게 연락, 전문기관(위센터, 병·의원 등) 연계 조치**
- *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 '자살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학생들은 편안하게 생각을 말합니다. 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학교에서 식별되는 학생의 **주요 자살징후**입니다.

구분	자살징후 내용
언어	☐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함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함
	☐ 자기비하적인 말을 함
	☐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함
	☐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
행동	☐ 편지, 일기, 노트 등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음
	☐ 수면상태의 변화 (평소보다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잠. 또는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일찍 깸)
	☐ 식사상태의 변화 (평소보다 덜 먹거나 더 많이 먹음.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함)
	☐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못 마침
	☐ 집중력 저하, 사소한 일에 대한 결정의 어려움
	☐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 (술, 담배 등)
정서	☐ 감정상태의 변화 (좌절감, 외로움, 무기력 또는 평소보다 화를 잘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멍한 모습)
	☐ 대인기피, 흥미상실 (평소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는 즐기지 않는 모습. 타인과의 관계를 피함)

※ 학교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에 의하면, 자살사망 학생은 **최소 2개 이상의 주요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학교에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자살징후**입니다.

- ☐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을 함
- ☐ 주변 정리 (마지막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함. 받았던 상자이나 기념품을 버림)
- ☐ 자살에 대한 계획을 세움
- ☐ 외모 관리에 대해 무관심함
- ☐ 죽음 관련 음악, 시, 영화 등의 과도한 몰입
- ☐ 어긋났던 인간관계 개선, 노력, 신변정리
- ☐ 평소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줌

자살 학생의 유형

2017-2020 학교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 분석 결과, 자살로 사망한 학생의 유형은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일반군, 반항행동군, 품행문제군, 외톨이군)으로 분류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일반군 (62.8%)

핵심징후	감정상태의 변화 편지, 일기, 노트 등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음
주요특성	★ 자살징후가 학교에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식별하기 매우 어려운 유형 ★ • 학교에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지향성이 높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임. 그럼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다수 관찰되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함

2 반항행동군 (27.0%)

핵심징후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술, 담배 등) 감정상태의 변화 편지, 일기, 노트 등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적음
주요특성	• 불규칙한 출결을 보임 • 부모, 교사, 친구와 사이가 다 안 좋음 •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음, 낯선 상황에서 특히 불안해하며 자신감을 쉽게 잃음 • 평소에 기쁨을 느끼던 활동을 더 이상 즐기지 않음

3 품행문제군 (5.4%)

핵심징후	자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냄 품행 문제가 나타나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못 마침 감정상태의 변화
주요특성	•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많이 나타남 • 불규칙한 출결을 보임 •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함,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함 • 불같이 성질을 부림, 다른 학생하고 싸움, 괴롭힘, 때리기 위협을 함, 물건을 훔치는 등의 문제를 보임

4 외톨이군 (4.8%)

핵심징후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함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함 자해행동이나 물질남용(술, 담배 등)
주요특성	• 불규칙한 출결을 보임 • 또래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함 •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잘 지냄 • 불행해보이고, 걱정이 많은 모습을 보임

참고자료

자살징후 알리미 스마트폰 앱‘스마트안심드림’

□ 스마트 안심드림

-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되는 자살 관련단어 감지 및 부모 알림 (욕설, 따돌림, 협박 등 사이버언어폭력 의심 문자 색출하여 부모에게 즉시 알림 기능)
- 자녀가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고민단어(학교폭력, 자살 등) 감지 및 부모 알림



- 학생과 학부모의 휴대폰에 자살징후 알리미 앱(스마트안심드림)을 설치하여 자녀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으로 수신되는 자살과 관련된 문자를 감지하여 학부모 휴대폰으로 전송
- 자살징후 감지를 통한 학생 자살 사전 예방 및 조기 치료 가능

설치조건	▶ 안드로이드(OS 5.0이상) 설치 이용가능하며, 부모용과 자녀용 구분 없이 '스마트안심드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	
설치방법	▶ 스마트안심드림: 사이버안심존 (moiba.or.kr) ▶ 오픈마켓(구글 Play스토어, 원스토어) 에서 '스마트안심드림'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및 설치	
설치순서	▶ 1단계 : 부모님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①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② 모드 선택 시 '보호자' 선택 ③ 서비스 이용 동의 ④ 비밀번호 등록 ※ 로그인 비밀번호로 이용되니 반드시 기억할 것 ⑤ 자녀 휴대폰 번호 입력(스마트폰 기기만 설치) ▶ 2단계 : 자녀 스마트폰에 '스마트안심드림' 설치 ①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스마트안심드림' 실행 ② 모드선택 시 자녀모드 선택 ③ 서비스 이용 동의 ④ 기기관리자 설정 시 실행 클릭 ⑤ 접근성 설정 '서비스가 정상 작동 중입니다' 화면이 표시되면 동작 중 ⑥ 환경설정에서 설정 클릭 → 설치 완료	
이용방법	▶ 스마트안심드림 로그인 후 '자녀폰 관리'에서 '자녀고민 검색어'를 클릭하여 자살 관련 수신메시지 및 검색어 확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 개요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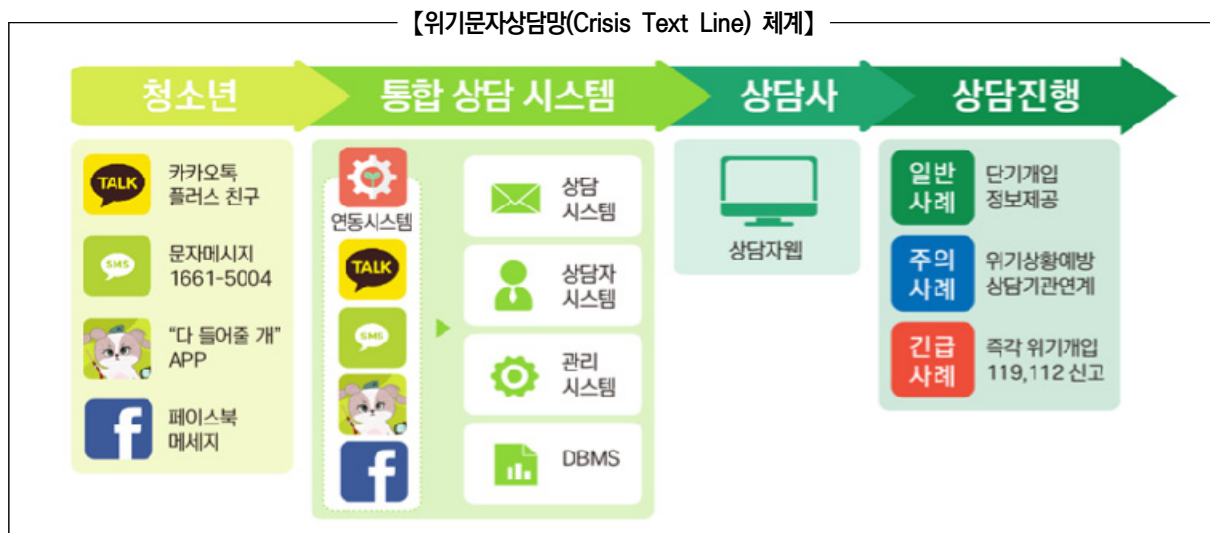
- 학생자살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사망을 증가추세 지속, 현행의 오프라인 방식의 접근만으로는 한계

※ 학생(10만 명당) 자살자(명): ('17)114(1.9)→('18)144(2.5)→('19.)140(2.5)→('20.)147(2.7)

-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과 발달특성에 맞는 상담망 구축·운영 필요

□ 추진 체계

- 학생들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24시간 고민 상담이 가능한 모바일 기반 문자 상담망 구축·운영
 - 상담결과, 즉각적 개입·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 병원 등 연계 조치
 - 24시간 365일 상담자 협업체계, 실시간 수퍼비전을 통한 질 높은 상담 제공



□ 운영 현황

- 운영기간: '18. 9. 1. ~ 계속
- 상담실적: 총 179,375건(일 평균: 211건)
- 시스템 방문자: 총 605,002건(일 평균: 710건 방문)
- 112·119 및 유관기관 연계조치 등 자살위험 즉각 개입: 총 232건
- 상담 경로 전용어플(32%), 카카오톡(49%), 문자(5.8%), 페이스북(4.8%) 등

참고자료

자살 관련 언론 보도 기준(자살보도 권고기준)

□ ‘자살보도 권고 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 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자살 언론 보도 시 상담전화 안내 문구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학생자살 원인 분석 및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한 보완 보고

- (추가 보고) 사안 발생 시 객관적 원인 파악을 위해 현행 보고체계를 기반으로 교육청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한 사후보완 방안* 마련
 - 초기 사망사안보고 이후 경찰청 조사 결과 등 추가 원인분석이 파악된 경우 해당 사안 관련 분석 보완 차원에서 추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협조

❖ 학교보고 기반 자살사안보고 사후 보완 방안(21.11.19) ❖

- ▶ (현행 보고체계) 사고 인지 후 7일 이내 별도 보고서식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청 → 교육부로 제출하고, 연구소에서 자료 분석
- ▶ (개선 방안) 보고체계는 현행 유지하되, 자살사안과 관련된 추가 보완 내용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 보고 조치

당일	(학교) 즉시 유선보고 및 당일 전자문서로 사안 경위서 제출
↓	
5일 이내	(학교) 자살사망사안 보고서 제출(보고지연 시 사유 기재 제출)
↓	
교육지원청 → 교육청 보고	
↓	
7일 이내	교육부 보고
↓	
추가 보고	경찰청 조사 완료 등에 따라 해당 사안 재확인 및 원인 등 추가 확인 시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보고)

- 보완 보고서

학생자살사망 추가 보고서 (필요시 제출)							
교육청명		학교명		학년 반	-	이름(성별)	
경찰 수사·조사결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유무 등)		(예시: 자살로 최종 결론, 갈취·협박 등 학교폭력 밝혀짐)					
기 보고한 내용 외 학생의 자살에 영향을 미친 요인							
학생 자살 이후, 학생자살으로 인한 영향		1. 가족	(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가족 프로그램)				
		2. 교사	(예시: 휴직 정신과적 치료, 심리적 어려움)				
		3. 친구 등	(예시: 모방 자살 시도, 고위험군 관리중)				
기 보고한 내용 외 사망 학생과 관련된 추가내용							

※ 보완보고가 필요한 경우, 「학생 자살사망 사안 추가보고」로 제출 요망(관련 대호 등 기존 보고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시)

참고자료

학생 자살 심리부검 결과 및 학생 지도 시 유의 사항

□ 학생 자살 사례 분석

유가족 심리부검 결과	
사례1 (고3, 여) 학업부담 투신	- 특성: 내성적이고, 감정표현이 거의 없는 편, 강박적 성향, 학습 플래너를 꼼꼼히 작성해가며 공부 - 성적: 중상위 - 교우: 교우관계는 좋은 편으로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편이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 - 정서·행동특성검사: '15년(고1) 검사결과 정상군 - 평소 스트레스: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과 비교하며 좌절. 고3 진학하면서부터 사소한 일에 예민한 보임 - 촉발요인: 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 하락(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 새벽에 투신) - 자살위험신호: 불면, 식욕 감퇴, 집중력 저하, 외모관리 무관심, 무기력감, 절망감, 무기력함 등을 보였으며 여름방학 중 집에서 공부하던 시기에 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도 빠진다고 하며 힘들다고 이야기함
사례2 (중2, 남) 부친의 강압적인 양육태도, 학업 스트레스 투신	- 특성: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 - 성적: 중 - 교우: 학교에서는 밝은 편으로 많은 친구들과 깊게 교류하는 편 - 정서·행동특성검사: '16년(중1) 검사결과 정상군 / 경계선 수준의 우울 판정 - 평소 스트레스: 부친의 가부장적인 양육태도와 강압적인 학업 강요, 가정폭력, 부친의 알코올 문제 - 촉발요인: 기말고사 시험 성적을 거짓으로 부친에게 얘기한 것이 들통 나서 꾸지람을 받음 성적 발표를 앞두고, 방학식 날 투신 - 자살위험신호: 모친에게 자살생각 언급
사례3 (특성화고 졸업, 여) 만성 스트레스, 이성문제 투신	- 특성: 명랑, 과민함, 충동적, 공격적 - 성적: 하 - 교우: 사교적이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많은 친구들과 보냄 - 정신건강: 중학생 때부터 잦은 음주와 불면, 우울증상을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옴 - 평소 스트레스: 가정폭력, 부친의 알코올문제, 모친의 기분장애, 지적 장애 오빠, 지속적인 대인관계 문제 - 촉발요인: 사망 일주일 전 남자친구와 이별 - 자살위험신호: 사망 3주 전부터 힘들다고 호소, 술 먹고 주변 사람들과 잦은 다툼, 소주병으로 자해 등
사례4 (중3, 여) 우울증 투신	- 특성: 내성적으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음 - 성적: 상 - 학교생활: 제한된 교우관계, 친구들을 많이 배려해 또래 상담원으로 활동 - 가정요인: 모가 조선족인 다문화 가정, 고령의 부모와 가족 내 소통 단절 - 정서: 우울감 호소하며,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5회 받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함 - 정서·행동특성검사: 전학으로 인해 검사 결과 모름 - 평소 스트레스: 부모 간의 잦은 다툼, 어려운 가정 형편, 전학 후 학교 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 촉발요인: 모름 - 자살위험신호: 사망 일주일 전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음. 방학기간 내내 외출하지 않았고 사망 전날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

유가족 심리부검 결과	
사례5 (고1, 남) 우울증, 실연 투신	• 특성: 자기중심적, 독특함, 과도한 자아감, 비사회적,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인지적 특성, 집요한 성향 • 성적: 상 • 정서·행동특성검사: '18년(고1년) 검사결과 정상군,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통해 불면, 우울 호소로 사전에 정신건강위험 인지하여 학부모에게 치료 권유 • 가정 요인: 모친과 갈등은 없었지만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허용적, 부친의 해외근무 • 평소 스트레스: 구조화된 학교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세상에 대한 비관, 미래에 대한 불안, 여자친구와 이별 • 자살위험신호: 급격한 체중 변화, 불면증, 심한 감정 기복 등을 동반한 우울 증상 호소 사망 일주일 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다고 모친에게 이야기 함
사례6 (고2, 남) 학급내 관계갈등, 진로고민 가스에 의한 질식	• 특성: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 게임중독, 온라인 세상에 과몰입 • 평소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에서 가족과 대화가 부족, 조모가 형을 편애함 • 성적: 하 • 교우: 현실에서 교우관계를 맺기보다는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과 교류하였음 • 정서·행동특성검사: '17년(고1) 검사결과 정상군 •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으로 만화가에 대한 꿈 좌절, 세월호 추모 행사를 비판하는 포스트잇을 붙여 카카오톡 반톡에서 학급 학생들에게 비난 받음 • 자살위험신호: 핸드폰에 안락사 실패 예시와 성공 방법에 대해 찾아봤던 흔적들을 발견 인터넷 계정 ID가 '아 죽고 싶다', 친구 생일파티에 필요하다는 모친에게 부탁해서 헬륨가스통 구매

□ 학생 지도 시 유의사항

- (정신병리의 이해 및 적극적 개입) 정신건강 위험이 인지된 학생에 대한 빠른 평가와 개입, 연계 이후에도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 제공 <사례 2, 3, 5>
- (위기가정 학생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연계) 상담을 통해 파악된 위기가정 학생 지역사회 복지사업(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연계 <사례 2, 3, 4>
※ 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단위학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문기관 발굴·안내
- (SNS 상의 비방 가해 및 피해 학생 심리평가 및 상담) SNS 상의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교우들 간의 비방에 대한 철저 관리,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심리평가 및 상담 강화 <사례 6>
- (대학입시 수험생의 정신건강 관리) 대학입시 수험생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시기별 신체 및 정신건강 관리 안내, 스트레스 반응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평가 및 스트레스 대처 기술 교육 등 집중 관리 <사례 1>

서식V-1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예시)

00초 양성평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2023.00.00.)

대영역	중영역	세부지표	해당 여부	비고
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와 인프라	1-1. 학교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에서의 양성평등	1-1-1.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 또는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규칙 제정 여부	☐ 예 ☐ 아니오	1건 이상 시 '예'
		1-1-2. 학생회 등 학생 의견을 청취하여 성차별적 규정을 개선 하거나 양성평등 규정을 제정한 경우	☐ 예 ☐ 아니오	1건 이상 시 '예'
	1-2. 양성평등 학교 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 조치	1-2-1. 학교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1건 이상 시 '예'
		1-2-2.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여부	☐ 예 ☐ 아니오	1건 이상 시 '예'
	1-3. 양성평등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	1-3-1. 학생·교직원 화장실 변기 설치 (남녀 화장실 비율 1:1.5)	☐ 예 ☐ 아니오	설치 시 '예'
		1-3-2. 탈의실 설치 여부	☐ 예 ☐ 아니오	설치 시 '예'
② 체계적인 양성평등 교육 운영	2-1. 학교 교육목표에서 양성평등	2-1-1. 양성평등한 교육목표 수립 여부	☐ 예 ☐ 아니오	수립 시 '예'
		2-1-2.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교육활동 계획 수립여부	☐ 예 ☐ 아니오	수립 시 '예'
	2-2. 양성평등교육의 행 재정적 지원	2-2-1.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인력 배치 여부	☐ 예 ☐ 아니오	지정 시 '예'
		2-2-2.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규모	☐ 예 ☐ 아니오	수립 시 '예'
	2-3. 양성평등교육 활동 실적	2-3-1. 교과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1회 이상 시 '예'
		2-3-2. 비교과 과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1회 이상 시 '예'
③ 학교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2-4. 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2-4. 학생 대상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실시 시 '예'
	3-1. 교직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3-1. 교직원의 양성평등 교육 연수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1회 이상 시 '예'
	3-2.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3-2. 학부모의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연수 참여	☐ 예 ☐ 아니오	실시 시 '예'

※ 위 세부지표 각 항목에서 1회(건) 이상 실시(수립, 설치 등)하였을 경우 “예”로 체크

점검 의견

총 15개 지표 중 ___개 해당

✓

별첨: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동 계획서 등 증빙자료 00부

양성평등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시 참고 자료

중영역	세부지표	세부 내용
1-1. 학교 규칙과 학생생활 규정에서의 양성평등	1-1-1. 성차별적 규정 개선 여부 또는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규칙 제정 여부	○ (목적) 지난 1년간 학교 규정에서의 성차별적인 내용을 개선한 사례 또는 양성 평등과 관련한 규정을 새로 제정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 (기준) 성차별적인 규칙을 개정하거나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로 개선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만점 〈 성차별적인 표현 예시 〉 △ 남녀의 성고정적인 관념을 지향하는 것 〈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정(신설 등) 〉 △ 수업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차별적 언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사, 학부모 교육 강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 △ 양성평등한 수업환경 및 시설 개선에 관한 규정 신설
	1-1-2. 성차별적 규정을 개선하거나 양성평등 규정을 제정한 경우	○ (목적) 양성평등한 학칙(규정)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생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정과정에 참여하여 추진하였는지를 점검 ○ (기준) 당해 학년도에 학생 자치회 모임을 통해 학교규칙내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1회 이상 한 경우 만점 ※ 양성평등한 학교 규칙으로 개정시 학생의 의견을 1회 이상 청취한 경우도 만점
1-2. 양성평등 학교운영 현황 조사 및 개선조치	1-2-1. 학교구성원 대상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실시 여부	○ (목적)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양성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개선조치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하는지를 점검 ○ (기준) 운영 현황 조사지를 만들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 경우 만점 〈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내용 예시 〉 △ 교가, 학교장의 훈화 등의 교육내용이 성차별적인지 여부 △ 학생 생활지도가 성차별적인지 여부 △ 교사들 (간)의 언어나 행동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관한 경험 △ 교과서나 교육자료 등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발견되는지에 관한 경험 △ 그 외 학교규정이나 개별교사의 지침 상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
	1-2-2.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조치 여부	○ (목적)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현황 조사 결과(3번 지표)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발굴하여 조치를 하였는지 점검 ○ (기준)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캠페인,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조치 건수에 따라 차등 배점
1-3. 양성 평등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	1-3-1. 학생·교직원 화장실 변기 설치	○ (목적) 공공시설 화장실 변기 설치 권장 비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생 및 교직원 화장실의 변기 설치 비율이 “ 남자소변기+대변기 : 여자대변기 =1:1.5가 되었는지 점검 ○ (기준) 학생 화장실 및 교직원 화장실의 변기 설치 비율이 모두 "1:1.5"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만 만점(아닌 경우 0점) ※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는 교직원 화장실의 변기 설치 비율만 점검사항에 해당
	1-3-2. 탈의실 설치 여부	○ (목적) 교직원과 학생들이 체육활동,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이용 가능한지를 점검 ○ (기준) 남녀 각각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설치된 경우 만점 ※ 남녀공학이 아닌 경우 탈의실 설치 시 만점

중영역	세부지표	세부 내용
2-1. 학교교육 목표에서 양성평등	2-1-1. 양성평등한 교육목표 수립 여부	○ (목적) 당해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서에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조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구체적인 계획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는지 점검 ○ (기준) 학교교육계획서 내에 양성평등 관련 교육목표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 만점 〈 양성평등 교육목표 예시 〉 △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 △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실천 △ 생활 속 남녀 혐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하기 위해 노력.
	2-1-2. 양성평등 교육활동 계획수립여 부	○ (목적)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연수)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점검 ○ (기준) 교육대상별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활동, 연간 수업(연수), 관련 주간 운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경우 만점(교육대상별 각각 구체적인 계획 수립)
2-2 양성평등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2-2-1. 양성평등 교육 위한 인력배치여 부	○ (목적) 교직원 업무분장에서 양성평등 업무담당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 ○ (기준) 양성평등 담당자가 학교 업무분장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만점
	2-2-2. 양성평등교 육 예산 편성 및 규모	○ (목적) 당해 연도 학교회계 예산서상 양성평등(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포함) 교육이나 행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 ○ (기준) 양성평등 교육을 위한 예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교육(연수)비, 행사비, 교자재 구입비 등)을 편성한 경우 만점
2-3. 양성평등 교육활동 실적	2-3-1. 교과과정 양성평등 교육 실적	○ (목적)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포함)을 실시하였는지 점검
	2-3-2. 비교과과정 양성평등 교육실적	○ (목적) 비교과 수업시간(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교육 및 행사, 체험 활동 등(의무 시수인 성희롱·성폭력 교육은 제외)을 실시하였는지 점검
2-4. 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2-4. 학생대상 양성평등 교육만족도 실시 여부	○ (목적) 교과비교과과정에서 실시한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 하여 다음 학년도 양성평등 교육계획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는지 점검 ○ (기준) 학교 자체 주기(수업 차시별, 학기 별, 학년 별 등)로 수업 및 활동 (행사)에 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당해 학년도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만점 ※ 가급적 표본조사가 아닌 전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1. 교직원의 양성평등 의식제고	3-1. 교직원의 양성평등교 육연수참여	○ (목적) 외부기관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학교자체교육을 이수하는 등 해당 학교 교직원이 참여한 양성평등 관련 교육 점검(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은 제외)
3-2.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제고	3-2. 학부모의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연수 참여	○ (목적) 학부모 대상 당사자와 자녀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점검 ○ (기준) 상담주간 등을 통해 양성평등 교육(원격 연수 활용 가능)을 1회 이상 실시한 경우 만점 ※ 원격 연수의 경우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수강 안내 또는 별도 신청을 받아 연수를 개설하는 등의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실시 건수로 인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기관의 장과 소속 구성원(○○○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의 책무)

-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 ①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부서(○○노조, ○○성희롱·성폭력 전문기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기관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① ○○○기관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③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기관의 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 ① ○○○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1항1호)
-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및 신고의무)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조사)

-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⑤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와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① ○○○기관의 장은(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 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이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③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00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 ①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 한다.
-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③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V-3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보고 양식(예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보고(학교용)

※ 제출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생활인성교육과), 여성가족부(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보고일시	년 월 일		
수사기관신고일시 (학생피해일 경우)	117	SPO	112
	*해당 수사기관 동그라미		
	년 월 일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가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0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상급자에 의한 사건인가				0	
	피해자가 다수인가					
사건개요	누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 요청사항(요청사항 있을 시 기재)

예시) 사안처리지원단 조사단 파견 요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원 파견 요청, 연계 피해자 보호 상담 지원기관
안내 등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접수번호			
확인자	성명	소 속	직 급
	성별 남[], 여[]	연락처	E-mail
의사 확인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 , 수사기관 신고 ☐)에 동의합니다.()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 , 수사기관 신고 ☐)에 반대합니다.()
	반대 사유 :		

* 주 : 수사기관 신고의 동의여부 확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형법 제303조제1항에 근거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한함

위 확인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신고한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귀중

서식V-5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보고 양식(예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결과 보고(학교용)

(※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보고일시	년 월 일		
수사기관신고일시 (학생피해일 경우)	117	SPO	112
	*해당 수사기관 동그라미		
	년 월 일		

□ 결과 보고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기관명	000학교(00교육지원청)		기관유형	초·중·고·특·각(공·사립)						
피해자	직	학생	성명	000	성별 남					
가해자	직	교사	성명	000	성별 여					
특이 사항	상급자에 의한 사건 여부			O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여부			X						
사건 개요	누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조치 사항	상담/신고	○								
	조사	○								
	심의결과 ※ 해당하는 심의에 대해서만 작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							
	피·가해 분리조치									
	가해자 조치									
	피해자 조치									
	2차피해 방지조치									
	기타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보고

(※ 제출: 학교→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

담당자(직급)	000 (부장)		
연락처	000-000-0000		
보고일시	년	월	일
수사기관신고일시 (학생피해일 경우)	117	SPO	112
	*해당 수사기관 동그라미		
	년	월	일

□ 사건 개요 및 사안 처리 결과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기관명	000학교(00교육지원청)			기관유형		초·중·고·특·각(공·사립)		
피해자	직	학생		성명	000	성별	남	
가해자	직	교사		성명	000		여	
특이 사항	상급자에 의한 사안 여부				O			
	피해자가 다수인 사안 여부				X			
사건 개요	누가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조치 사항	상담/신고	◦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 사건처리 과정 및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여부, 상담 횟수·일시, 신고접수 일시 등	
	조사	◦ 피해자의 조사신청 여부·일시, 조사 소요시간,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외부위원 포함 여부,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 고지 여부, 조사 종료 후 기관장 보고 여부 등	
	심의결과 ※ 해당하는 심의에 대해서만 작성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고충심의위원회 생략 여부 및 생략 시 그 사유,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 위원 기피·회피 여부, 의사, 의결정족수, 고충심의위 심의 내용, 당자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등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미개최 시 예) 미개최 동의서 받고 종료
		교권보호위원회	◦
	피·가해 분리조치		
	가해자 조치	가해자에 대한 교육 여부, 징계 시 징계 수준, 부서 전환 또는 대기발령 등	
	피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기술, 추가피해 발생 시 내용 서술	
	2차피해 방지조치		
	기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 등에 대한 불이익 처우 여부 등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외부기관(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 피해자의 외부기관 조사 요청 여부, 외부기관의 조사 여부 및 조사 결과

□ 기관 내 주요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현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또는 관련 내부 규정 첨부 (예방지침 별첨, (연간추진계획)계획서 및 관련 결재문서 별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또는 개정된 사항이 있을 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명시,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 고려, 사건 은폐·묵살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응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피해 유발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
(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2000년)

- 교육일시, 교육방법 등
- 참석자 수, 참여율(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등
- 예방교육 방식
(교육 실시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결과보고서(문서) 별첨)
(시청각 교육, 외부강사·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방식 구분하여 서술)
(*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작성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제고 방안, 비정규직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 교육방법 개선 등 작성)

○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2000년)

- 고충상담원 지정(남 ○명, 여 ○명)

구 분	성별	직위·직급	비 고
고충상담원 A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O, X) '○○년 (행정직, 관련 분야 전문가, 직장협의회 대표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상담원 B			
고충상담원 C			

(연간추진계획에 당해 연도 고충상담원 지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지정사항 변동시 관련 결재 필요)

○ 고충상담창구 설치현황(사이버신고센터 운영 현황도 포함하여 기술)

- (○○○○과(부서명)에 설치, 고충상담창구 표지판·명패 등 게시 여부 서술 등)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구 분	성별	내·외	비 고
위원장	남	내부	(직위·직급, 기타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A	남	내부	(직위·직급, 부서, 행정직(일반직), 관련분야 전문성, 직장협의회 간부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B	여	외부	(○○인권센터 대표, 관련분야 전문성 등 기타 참고사항)
고충심의위원 C			
.....			

(연간추진계획에 당해연도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중에 구성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 관련 결재 필요)

○ 그 밖의 노력 사항

- (고충상담창구 개선, 고충상담원 지정 개선 및 전문교육 지원,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등)

□ 성희롱 방지조치(성폭력 예방조치) 강화 방안 총괄표

항목	실적(최근 1년 기준)	향후 개선계획 (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방지침 제정	(현재 기준 제정되어있을 시 제정일자 기술) '○○년 ○월	미제정 시 제정계획 및 일정 작성 개정시 개정내용 작성
연간기본계획수립	(수립여부 및 일자 기술)	개선계획 일정 등
교육 실시/횟수	○회	목표 및 개선방안
직원 참여율	○○% (○○명 / ○○명)	목표 및 개선방안
기관장 참여	교육 ○회 중 ○회 참여	목표 및 개선방안
고위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비정규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교육방법		시청각교육, 집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교육방식 개선 검토
고충상담원 지정	(남○, 여○)	미지정 시 지정계획 및 일정 작성 지정 개선 시 내용 작성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개인별 교육이수 실적	미이수 시 교육이수 계획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설치(구성) 현황 총 명(남○, 여○) * 외부 명, 내부 명	미설치(구성 개선) 시 내용, 일정 등

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

□ 경기도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순	지역	센터명(운영형태)	의료기관	주소	연락처
1	수원	경기남부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아주대 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별관 031-215-1117 응급 031-216-1117
2	고양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명지병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통합 031-816-1375 응급 031-816-1374
3	의정부	경기북동부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의정부 의료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본과 3층	031-874-3117
4	성남	경기해바라기센터 (아동)	분당 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71 한화빌딩 5층	031-708-1375
5	안산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형)	단원병원	15457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로 10 단원병원 신관 7층	031-364-8117
6	부천	경기중부 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순천향 대학병원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속부천병원 향설관 지하 2층	032-651-1375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지원
-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비동의 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등의 유포 차단하며, 수사, 상담 기관에 신속하게 연계
- 사안 발생 인지 즉시 센터 신고를 통해 사안 해결 공동 대응 지원

순	구분	기관명	연락처	비고
1	유선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031-1366	평일 9시~18시 18시 이후
2	온라인	홈페이지 피해상담 카카오톡,인스타그램,트위터 아이디 피해상담 메일주소	https://www.gwff.kr/031cut/main.html @031cut 031cut@gwff.kr	

□ 경기도 성폭력 상담소

- 성 사안 피해자 무료 지원 상담소
-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 활동

순	지역	기관명	연락처	지원영역		
				상담	법률	의료
1	부천	(사)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032-328-9711	0	0	0
2	부천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032-655-1366	0	0	0
3	용인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031-281-1366	0	0	0
4	광주	(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031-797-7031	0	0	0
5	김포	김포성폭력상담소	031-984-9367	0	0	0
6	고양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031-907-1368	0	0	0
7	성남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	031) 755-2526	0	0	0
8	파주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031-946-2096	0	0	0
9	연천	연천행복돌상담소	031-832-1315	0	0	0
10	군포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31-396-0236	0	0	0
11	성남	성남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31-751-1120	0	0	0
12	수원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031-224-6888	0	0	0
13	의정부	의정부 장애인 성폭력 피해상담소	031) 840-9203	0	0	0
14	안산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031-413-9414	0	×	×
15	안양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31-466-1366	0	0	0
16	평택	평택성폭력상담소	031-618-1366	0	0	0
17	하남	하남성폭력상담소	031-796-1213	0	0	0
18	의왕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031-452-1311	0	0	0
19	남양주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031-558-1366	0	×	0
20	동두천	동두천성폭력상담소	031-861-5555	0	0	0
21	포천	포천가족성상담센터	031-542-3171	0	0	0
22	시흥	(사)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031-496-9494	0	0	0

□ 경기도 성매매 예방 지원 기관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무료 지원센터
- 수원여성인권돌봄, 031-245-1219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발행일 2023년 3월

발행인 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생활인성교육과
업무매뉴얼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